사회적기업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12차
정기대의원총회
(통합 제24차 총회)

일시 : 2026년 3월 12일(목) 18시 30분

장소 : 원주밝음신협 5층 대강당 (중앙로 85)

사회적기업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목 차

1. 제12차(통합24차) 정기대의원총회 진행순서 4

2. 인사말 5

3. 조합원 건강약속 9

4. (25년 말 기준)조합원 현황 10

5. 조합 발전·공헌 유공자 포상 11

6. 제11차 정기총회 의사록 12

7. 제12차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의안 및 자료

제1호 의안 2025년 종합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24

제2호 의안 2025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잉여금 처리안 29
(사회적성과관리보고서 포함)

제3호 의안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101

제4호 의안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103

제5호 의안 차입금 최고한도액 승인의 건 142

제6호 의안 2025년 (탈퇴, 제명, 감좌) 조합원 출자금 환급 및 지분양도, 출자금 변동 승인의 건 143

제7호 의안 기타 안건 146

〈부록〉

-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혁 147
- 제5기 대의원 명단 149
- 2025년 SVI(사회적가치지표) 측정결과보고서 150
- 조합 정관 177

제12차 정기대의원 총회
(통합 제24차) 진행순서

제1부 기념식

1. 개회선언
2. 인 사 말
3. 내빈소개
4. 축 사
5. 조합 발전·공헌 유공자 포상
6. 폐 식

제2부 제12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

1. 성원 확인 및 보고
2. 개회선언
3. 서기 및 의사록 서명 날인인 선임
4. 전차회의록 낭독 및 승인
5. 2025년 종합감사보고
6. 상정의안 심의
7. 폐회선언

인 사 말



조합원 및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합 이사장 이광희입니다.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정기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상 속에서도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대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헌신이 우리 조합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도전과 전환의 시간이었습니다.
재가방문요양센터 폐원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고, 이는 조합의 지속가능성과 의료기반 통합돌봄 체계로의 재편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동시에 재택의료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내 의료·돌봄 공백을 촘촘히 메워왔습니다.

특히 우리 조합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 건강 공동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조합 운영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시는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재택의료를 중심으로한 방문진료, 방문간호, 가정간호 등 지역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우리 조합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건강 취약계층에게 직접 찾아가는 의료와 돌봄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따뜻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가속화, 만성질환의 증가, 돌봄의 공백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과 맞물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료와 돌봄은 더 이상 병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지키고 돌봄을 실천하는 지역 기반 조직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 조합은 예방, 의료, 돌봄, 공동체 활동을 연결하는 건강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건강 소모임 활동,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건강반장, 원주건강수다(건강강좌) 등 다양한 실천들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건강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어 왔습니다.

올해는 건강반장에서 G-care 매니저(마을건강활동가)로 원주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며 새롭게 발돋움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돌봄, 건강 활동, 지역 연대까지 아우르는 지역 통합돌봄의 중심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재정 안정성과 조직 역량 강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력 확보, 제도 개선, 정책 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참여입니다. 협동조합은 누군가가 대신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라 조합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조직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과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우리 조합의 가장 큰 동력입니다.
그 길을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애써 주신 사무국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대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총회가 우리 조합의 지난 시간을 잘 정리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의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이사장 이광희 올림

축 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임종한

존경하는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총회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의료복지사협연합회 회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의료협동운동을 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조합과 지역사회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총회는 우리 의료복지사협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 수년간 각 지역의 의료복지사협은 주민이 직접 의료기관을 설계하고 운영하며, 치료를 넘어 예방·돌봄·복지를 아우르는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소모임 활동, 방문 돌봄, 마을건강센터와 같은 다양한 실천들은 통합돌봄이 법과 제도로 논의되기 전부터 생활 속에서 먼저 구현해 온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성질환과 고령화, 돌봄 공백, 불평등 심화 속에서 지역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와 돌봄을 누리게 하는 일은 여전히 진행형 과제입니다.

건강 소모임과 돌봄 활동이 건강보험 수가와 제도권 지원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공익적 의료기관으로서 재정·인력 기반이 취약한 현실 또한 우리가 함께 바꾸어 가야 할 지점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 온 “희망의 기반”입니다. 강원의료복지사협은 주민이 출자하고, 의료인이 동행하며, 지역의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주체들과 손을 잡아, 시장과 공공이 미처 채우지 못한 틈을 메워 온 하이브리드형 공익 조직입니다.

조합원과 주민이 단순한 ‘이용자’가 아니라, 지역 건강과 돌봄의 주인, 기획자, 실행자가 되어 온 이 경험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통합돌봄과 돌봄사회로 전환하는 데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연합회는 각 조합이 이 소중한 경험을 지키고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인력 양성, 교육과 연대의 장을 더욱 넓혀 가겠습니다.

특히 통합돌봄과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본격화되는 흐름 속에서, 의료복지사협이 공공과 지역사회의 믿을 만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지역 조합의 다양한 시도가 서로 고립되지 않고 잘 연결되어, 전국적인 배움과 상생의 네트워크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조합원) 여러분, 오늘 총회에서 논의하실 한 안건, 한 예산, 한 계획은 단순한 내부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동네에서, 어떤 노후를, 어떤 관계망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모두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토론과 참여, 그리고 작은 결심 하나하나가 지역사회의 건강과 돌봄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연합회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걸으며, 의료복지사협 운동이 한국 사회에 더 큰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동행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강원의료복지사협의 발전과 대의원(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과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 정기총회가 더욱 단단한 협동과 연대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2일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건강’ 정의

건강이란 ‘아픔을 중심에 두고 자기를 극복하는 힘’이며,

몸, 마음, 세상의 안녕과 더불어 영적, 생태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발현해가는 과정이다.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건강’ 약속

우리는,
아플 때, 내 삶을 돌아 보고
몸과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아픈 것은 세상이 아픈 것임을 깨닫고
그 아픔의 근원을 바라봅니다.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여
나와 이웃과 지구의 건강이 하나임을 압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살피며
이웃과 사회가 아플 때 손 내밀어 봅니다.

생명, 그 본성처럼 늘 서로 돕고
더불어 하나 됨 속에서 기뻐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빛날 수 있도록
건강한 세상을 향해
마음 모아 함께 나아갑니다.

(25년 말 기준)조합원 현황

■ 조합원 가입 추이(신규가입자수)

2023년 1,600명**(107명)** → 2024년 1,695명**(95명)** → 2025년 1,884명**(205명)**

※탈퇴 조합원 수에 따라 (말 기준)조합원수와 신규가입자수가 맞지 아니함.

■ 연령대별 분포(1,884명) ※조합원 평균 연령 : (24년 말)63세 --> 62.9세

구 분	24년 말 기준	25년 말 기준	증감내역
30대 이하(~ 39세)	44명	59명	15명 ↑
40대(40~49)	200명	211명	11명 ↑
50대(50~59)	486명	495명	9명 ↑
60대(60~69)	511명	584명	73명 ↑
70대(70~79)	242명	293명	51명 ↑
80대(80~89)	176명	206명	30명 ↑
90대 이상	25명	34명	9명 ↑
법인 조합원	9개소	9개소	

■ 읍면동별 분포(1,884가구)

개운동	83 가구	학성동	31 가구
단계동	118 가구	행구동	65 가구
단구동	210 가구	문막읍	24 가구
명륜1동, 명륜2동	152 가구	귀래면	12 가구
무실동	84 가구	부론면	6 가구
반곡관설동	142 가구	소초면	40 가구
봉산동	101 가구	신림면	17 가구
우산동	46 가구	지정면	54 가구
원인동	51 가구	판부면	36 가구
일산동	55 가구	호저면	35 가구
중앙동	24 가구	흥업면	53 가구
태장1동, 태장2동	140 가구	원주 외 지역	125 가구
가현동	3 가구	주소 불명	177 가구

2025 조합 발전·공헌 유공자 명단

	시상명	소속	수상자	공적사항
1	**우수직원상**	밝음의원(외래)	김은영 간호조무사	조합 발전
2	**우수직원상**	밝음의원(가정간호센터)	김수진 가정전문간호사	조합 발전
3	**우수직원상**	밝음의원(가정간호센터)	박혜진 가정전문간호사	조합 발전
4	**우수직원상**	밝음의원(재택의료센터)	장원주 팀장	조합 발전
5	**우수직원상**	사무국	신현경 과장	조합 발전
6	**우수직원상**	사무국	조주희 팀장	조합 발전
7	**공로상**	공생추진위원회	천혜란 위원장	조합 공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산로
198(학성동,지하1층)
[별지 제33호서식]

공증인 박우순 사무소

(전화) 033-744-7600
(팩스) 033-746-8811

등부 2025년 제 300 호

인 증 서



210mm X 297mm
보존용지(1종) 70g/㎡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
(통합 제23차 총회)의사록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통합 제23차 대의원총회) 회의록

1. 회의명칭 :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통합 제23차 정기대의원총회)
2. 소집통지 : 2025년 3월 4일(화)
3. 일　　시 : 2025년 3월 13일(목) 18시 30분
4.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85, 5층 원주밝음신협 대강당
5. 정 족 수 : 대의원 정수 102명 中 과반(52명 이상)인 62명 참석(최종 65명)으로 개회
6. 의장성명 : 이사장 이광희
7. 식　　순 : 가. 제1부 기념식
 나. 제2부 대의원 총회 본회의
8. 부의안건

제1호 의안 2024년 종합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결손금 처리안
제3호 의안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아이쿱 연대협력 선출) 임원 해임의 건
제5호 의안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차입금 최고한도액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2024년 (탈퇴, 제명, 감좌) 조합원 출자금 환급 및 지분양도, 출자금 변동 승인의 건
제8호 의안 기타 안건

9. 총회경과 및 의안심의 내용

가. 제1부 기념식

1) 개회선언

- 신승훈 전무이사(이하 사회자)가 18시 35분에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통합 제23차) 기념식 개회를 알리다.
- 개회를 알리며 의료협동조합 30주년 기념영상을 상영하다.
- 이어서 생명의례를 진행하다.

2) 인 사 말

- 이광희 이사장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대의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안건 순서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하며 인사말을 전하다.

3) 내빈소개 및 축사

- 내빈소개로 원주밝음신협 이도식 이사장, 원주생협 이현주 이사장,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임지헌 센터장,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현귀 센터장 을 소개하고 인사말 및 축사는 생략하다.
-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 공증을 위하여 박우순 변호사가 참석하여 인사하다.

4) 우수직원 및 장기근속자 표창

- 우수직원으로 신옥경 부장, 염은경 과장이 장기근속자는 김현경 간호조무사, 김연화 요양보호사, 김경옥 요양보호사가 표창을 받다.

5) 단체사진 촬영

-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본회의로 넘어가다.

나. 제2부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통합 23차 대의원총회) 본회의

1) 성원확인 및 보고
- 이광희 이사장(이하 의장)이 의장석에 착석하고 성원 보고를 요청하여 신승훈 전무이사가 대의원 102명 중에서 62명(최종 65명)이 참석(과반수는 52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2) 개회선언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받고 의장이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통합 23차 대의원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3) 의사록 기명날인인 선임
- 의장이 의사록 서기 1명과 기명날인인 3인을 선임하고자 하며 참석 대의원 가운데 자발적으로 역할을 맡아주실 분이 있는지 물었으나 없음을 확인하고, 의장의 추천에 의해 서기는 신승훈 전무이사가 장성면, 염은경, 조주희 대의원이 의사록 기명날인인으로 추천되어 의에 의장이 동의를 묻자 참석 대의원 모두 박수로 찬성하여 의장이 서기로 신승훈 전무이사, 장성면, 염은경, 조주희 대의원이 기명날인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의장이 선언하다.

4) 전차회의록 낭독 및 승인
- 의장의 요청에 따라 신승훈 전무이사가 총회 자료집 12쪽 ~ 18쪽의 전차회의록을 안내하고, 의장이 이에 대한 참석대의원 의견을 묻자 백송희 대의원 동의, 김동떨 대의원이 재청하고 참석대의원 모두 이의가 없다고 하여 전차회의록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5) 상정 부의안건 심의
- 의장이 제1호 의안부터 제8호 의안 순서대로 심의할 것을 제안하고, 부의안건을 의장의 제안대로 심의할 것을 참석 대의원에게 물어보다. 장성면 대의원 동의, 백송희 대의원 재청하고 참석 대의원 모두 동의하여 심의에 들어가다.

○ 제1호 의안 - 2024년 종합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의장의 요청으로 2025년 2월 13일에 장동성, 김달현 감사에 의해 실시한 조합의 종합감사 의견을 장동성 감사가 착석하여 보고하다. 장동성 감사가 자료집 20~22쪽 참조할 것을 주문하다.
- 의장이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자,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여 의장이 종합감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해도 좋은지 묻자 백송희 대의원 동의, 서연남, 김동필, 김덕연 대의원 재청하고 이에 모두 동의하여 제1호 의안인 2024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다.

○ 제2호 의안 -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결손금 처리 안

- 의장이 신승훈 전무이사에게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다.
- 신승훈 전무가 자료집(23~87쪽)의 2024년 조합 활동 총평 및 결산 요약 등을 설명하다.
- 염은경 과장이 재택의료 및 통합돌봄사례를 발표하다.
- 조주희 팀장이 조합사업 및 활동 결과를 발표하다.
-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다.
-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여 다른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서 내용과 잉여금 처리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승인해도 좋은지 묻자 허유정 대의원 동의, 권효정, 김덕연, 김연화 대의원 재청하고 이에 모두 동의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3호 의안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의장이 신승훈 전무이사에게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다.
- 신승훈 전무이사가 의료기관 세부 주소지 명시, 조합의 지사무소 등 개정,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보완사항 반영, 사업의 종류 추가 에 대해(자료집 88쪽~90쪽)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하다.
-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참석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여 다른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창희 대의

원 동의, 장동성, 권효정, 백송희 대의원 재청하고 이에 모두 동의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4호 의안 - (아이큡 연대협력 선출) 임원 해임의 건

- 박준영 대의원(대표 발의자)이 임원 해임의 건(자료집 91쪽~93쪽)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하다.
- 의장이 대의원 정수 102명 중 5분의 1 이상인 24명이 총회 안건으로 해임안 상정을 동의했으며 해임안에 따른 이유를 10일 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도 주었으나, 김유미, 김은주, 차윤정 임원이 수취거부, 연락두절 하였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다.
- 의장이 대의원에게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참석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여 다른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백송희 대의원 동의, 김덕연 대의원 재청하고 참석 대의원 모두 동의하여 김유미, 김은주, 차윤정 임원의 해임안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5호 의안 -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이 신승훈 전무이사에게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다.
- 신승훈 전무이사가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자료집 95쪽~136쪽)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하다.
- 노인공동생활가정추진위원회 천혜란 위원장이 공생추진위의 25년 사업 계획 및 활동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다.
-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자 참석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여 다른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승인해도 좋은지 묻자, 김덕연 대의원 동의, 노혜정 대의원 재청하고 이에 모두 동의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6호 의안 - 차입금 최고한도액 승인의 건

- 의장이 2025년 신규 차입금 최고 한도액(안)을 20억 원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참석 대의원의 의견을 묻자 임지헌 대의원 동의, 조미화, 권효정 대의원 재청하고 이에 모두 동의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7호 의안 - 2024년 (탈퇴, 제명, 감좌) 조합원 출자금 환급 및 지분양도, 출자금 변동 승인의 건

- 의장이 신승훈 전무이사에게 2024년 (탈퇴, 제명, 감좌) 조합원 출자금 환급 및 지분양도, 출자금 변동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다.
- 신승훈 전무이사가 2024년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및 출자금 변동 (자료집 138~140쪽)에 따른 명단(탈퇴, 제명, 양도)과 출자좌수 및 출자총액을 설명하다.
-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참석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여 다른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승인해도 좋은지 묻자 김연화 대의원 동의, 김덕연 대의원 재청하고 이에 모두 동의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1. 출자좌수 : 27,195좌
2. 출자총액 : 271,956,874원

○ 제8호 의안 - 기타 의안

-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기타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안이 있으면 상정해줄 것을 요청하다.
- 도경숙 대의원이 가정간호센터와 관련한 연혁 및 내용들을 총회자료집 및 홈페이지에 수정 보완해줄 것을 요청하다.
- 임종호 대의원이 32쪽 출자액 관련 질의를 하고 신승훈 전무이사와 의장이 이에 대한 설명을 하다.
- 의장이 또 다른 안건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자, 참석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다.
- 의장이 더 이상 발언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상의 부의 안건을 모두 승인 후, 제11차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기대의원총회(통합 23차)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 시간은 20:14분임.
- 의장이 총회에 참석해 준 대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하다.

7) 폐회선언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서기, 총회에서 기명날인 인으로 선출된 4명(서기 포함)의 대의원이 기명날인 또는 기명하기로 하다.

2025년 3월 13일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　　장 : 이사장 이광희

기명날인인 : 대의원 장성면

기명날인인 : 대의원 염은경

기명날인인 : 대의원 조주희

서　　기 : 대의원 신승훈

신·구 조문 대비표

(2025. 3. 13. 개정)

현행	개정안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85(중앙동)번지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조합의 지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113(원동), 1층에 둔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85(중앙동)번지 4층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조합의 지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113(원동), 1층에 둔다.~~
제4조2(의료기관의 소재지) ①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발음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85(중앙동)번지에 둔다. ②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주치의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113(원동), 1층에 둔다.	제4조2(의료기관의 소재지) ①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발음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85(중앙동)번지 4층에 둔다. ~~②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주치의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113(원동), 1층에 둔다.~~
제18조(출자) ⑤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대비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출자) ⑤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27조(선거운동의 제한)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제27조(선거운동의 제한)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휴업 또는 계속 12. (신설) 차입금을 통한 기본 자산의 취득과 처분
제34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제34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신설)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45조(임원의 선임)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선임) ③ (신설)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신설)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5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 의무가 있다. ⑤ (신설) 제1항~제4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9조(임원의 해임) ③ (신설)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51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신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illegible]
제57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③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다음 각호중 하나로 한다. 1. 수지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2.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 목적에 해당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제57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지역사업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가. (신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나. (신설) 가~다의 사업 활성화 및 통합을 위한 지원사업 ③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지역사업형으로 수입지출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정한다.
제58조(사업의 이용) ③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	제58조(사업의 이용) ③ 제2항에 따른 총 공급량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 공급량을 산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산로
198(학성동,지하1층)
[별지 제37의2호서식]

공증인 박우순 사무소

(전화) 033-744-7600
(팩스) 033-746-8811

등부 2025 년 제 300호

인 증

위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

2025년 03월 13일자 제 11차 정기대의원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의장 이사장 이광희, 대의원 장성면, 동 염은경, 동 조주희[illegible]----

대리인겸대의원 신승훈은----------

본 공증인은 위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그 결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검사 내용과 아래 기재자료에 의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

함을 확인하였다. ----------

2025년 03월 18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인 박우순 사무소

춘천지방검찰청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산로 198(학성동,지하1층)

공 증 인 [illegible]

아 래

1. 참석자명부	6. 인감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확인서----------
3. 정관	8. 진술서----------
4. 운전면허증	9. 공고문----------
5. 위임장,----------	

210mm X 297mm
보존용지(1종) 70g/㎡

제 1 호 의안 :

2025년 종합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관련 근거**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 감사보고서의 승인

■ 의결 주문 사항

아래의 2025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근거 : 정관 **제5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025년 종합감사보고서

< 개 요 >

□ 감사일시 : 2026. 1. 29.(목) 15:00
□ 감사장소 : 조합원 활동공간 “마중”
□ 감 사 자 : 감사 장동성, 김달현
□ 대상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
□ 감사방법 : 각종 재무제표를 통한 경영상황 분석, 이사회 자료 등 을 활용한 협동조합 운영상황 파악

본 감사 2명은 2025년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사업 및 활동, 재무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회계 부문

1) 재무제표 확인

- 법인회계는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그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 특별히, 자본금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24년에 비해 4.24% 증가했고 하반기에 집중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반기 신규 조합원 증대를 위한 노력에 힘입었다고 판단됩니다. 사무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업 부문

1) 의료사업부의 모습

⑴ 매출의 증대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24년에 이어 매출액이 증가(10%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밝음의원, 재택의료센터, 가정간호센터 사업이 성장,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합원의 사업이용률은 답보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재택의료사업과 가정간호 사업의 확대와 조합원 증대가 연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2) 돌봄사업부의 모습

⑴ 재가방문요양센터의 폐원

재가방문요양센터가 사업 활성화 어려움으로 폐원하였습니다.

사업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과정과 폐원을 결정하는 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히 대의원간담회를 통한 보고와 결정이 있었고 폐원의 과정에서 타 업체에 업무 인수인계가 진행되었고 요양보호사분들과의 소통과정도 충실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폐원의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 여겨지지만 큰 무리없이 진행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실무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⑵ 노인공동생활가정추진위원회(이하 공생추진위원회)의 활동

2024년 구성된 노인공동생활가정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내가 꿈-꾸는 돌봄 에세이 공모전'이 진행되었고 결과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모임의 진행, 실무팀의 구성과 활동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3. 조합원 활동 및 조합 운영 관리 부문

1) 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합원 활동의 모습

'원주건강수다', '찾아가는 밝음건강강좌', '똑똑 건강반', '건강반장', '느림보 산악회', '오프라인 조합홍보'등의 활동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참여하신 조합원님들의 생각과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26년도의 활동 또한 궁금합니다.

2) 유관기관과의 협업 활동

1년 동안,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밝음신협,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천사장애인보호작업장, 원주지역자활센터, 원주한살림, 원주생협 등 과의 다양한 협업 활동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히 전무이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의 모습도 있습니다.

협업 활동의 의미를 정리하고 미래 모습을 상상하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3) 조합 운영, 관리의 모습

⑴ 강원의료복지사협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임직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

일본 사이타마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연수가 지난 6월에 진행되었습니다. 조합 발전을

위한 많은 시사점을 발견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사점의 공유와 조합 발전을 위한 제안 등을 나눌 수 있는 연수보고회 등의 미진행이 아쉽습니다. 시사점을 통해 발굴된 과제가 사장되지 않도록 시기별 중심과제를 확인하고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⑵ 건강보험공단의 정기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코로나 사업 실사 진행
코로나 19 당시, 조합이 지정 받아 운영되었던 “코로나 19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사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율시정 현장 실사 결과로 미확인 증빙 건수가 있었고 환수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진행 당시 ‘행정간호인력의 한계’가 원인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이 한계를 상쇄할 수 있는 구조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큰 수업료를 지불하였습니다.

⑶ 조합 활동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
조합 사업 안정화를 위해서는 직원분들의 복리후생 등의 확대와 안정화가 필수일 것입니다. 조합원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의 확대와 더불어 직원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구조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4. 총평

2026년은 통합돌봄지원법이 실행되는 첫 해입니다.
그 동안 강원의료복지사협은 통합돌봄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해 왔고 그 준비를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강원도 내 여러 의료기관보다 알찬 준비를 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비록, 통합돌봄의 한 축일 수 있는 재가장기요양센터가 폐원했지만, G-care 매니저 활동이 새롭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입니다.
조합원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강원의료복지사협의 사업은 2023년부터 진행된 의료사업이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바탕위에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공생추진위원회 활동이 주목됩니다.

협동조합 의료기관으로서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활동이 통합돌봄 사업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비전 설립 위원회와 같은 새롭게 꿈을 꾸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임원, 직원, 조합원님들의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2025년 강원의료복지사협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 새해는 더욱 멋지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2026 년 3 월 12 일

감사 김 달 현, 장 동 성

제2호 의안 : 2025년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의 건 - 잉여금 처리 안

■ 관련 근거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 의결 주문 사항

아래의 2025년 사업보고 및 결산을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업 보고

■ 25년 주요 이슈 및 평가

1.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폐업

-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이전의 (구)“재가장기요양기관 길동무”는 2004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성공회원주나눔의집과의 협업 및 의료연합회 7개 지역 광역 일자리사업으로 진행)의 성과로 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되면서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요양보호사로 교육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옴.
- 과거 재가장기요양기관 길동무는 조합의 의료사업소 “밝음의원”이 폐원(2011~12년)과 재개원(2013년 3월)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월 이용자가 70여명에 이르렀고 연매출액도 5~6억원을 이루는 등 조합의 운영과 유지에 기여해 옴.
-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간의 심화 되는 경쟁 속에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차별화도 없어지는 등 대상자수의 확대 및 유지는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대상자 자연 감소로 이어지며 근래에 들어서 7년여 동안 연 15명 ~ 20명 내외로 사업소 유지만 해오게 됨.
-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오다 24년 부터는 대상자수가 15명 아래로 떨어진 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재가방문요양센터 운영의 한계점과 경영적 압박이 지속되며 점점 어려워져 감.
 (*가산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원도 못받게 됨.(최소 대상자수 15명))
- 이에 분위기 전환을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 “길동무”(기관기호3번)를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기관기호2번)로 변경하고, 재가방문요양센터 활성화를 위한 조합 내부 활성화 계획(외래, 조합원 안부 확인 발굴, 재택의료대상자 발굴 등) 실시, 홍보물 제작 및 외부 적극 홍보, 대상자 확대 인센티브제도 실시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어려운 상황은 지속 됨.
(*기관기호 3번은 25년 12월 까지만 유지 가능, 기관기호 2번 변경 의무)

- 결국 임시 이사회를 열어 통합돌봄사업(재가방문요양센터) 재건을 위해 전문인력 채용 및 전출금 확대의 안건을 논의하였으나 조합 및 사업소의 여러 가지 대내외 환경 및 역량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체로서의 경쟁력 약화”, “의료사업소와의 협업 부족”, “의료기반 중심의 통합돌봄방향 계획 수립 필요” 의 사유와 대안 등 으로 더 이상의 지원을 중단하고 폐원하는 것으로 의결함.
 이후 대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경과 보고 및 의견 수렴 등 을 진행하였고 폐원 절차를 추진 함.
- 근무하고 있던 요양보호사분들과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던 대상자(어르신)분들은 타 재가센터 등 으로 대상자분과 같이 100% 서비스 제공과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서비스 중단 및 근로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폐원을 위한 행정적 서류와 절차에 따라 25년 7월 31일자로 폐업 수리 됨.

2. 조합원 참여 프로그램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활발

- 25년 조합의 중점방향으로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와 지역사회(유관기관)와 함께 만드는 건강·돌봄 프로그램을 활발히 하고자 하였음.
- 신규 조합원 환영회는 상·하반기 2회 진행하였으며, 18명의 신규 조합원이 참석함.
- 조합원이 참여하는 “원주건강수다” 강좌에서는 관절염 예방을 위한 건강타이치(5회차, 8명), 1인 가구의 건강한 식단을 위한 1인 가구 요리교실 “착하다 쿡” 강좌(8회차, 8명), 바르게 걷기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바르게 걷기 강좌(1회차, 19명), 하루 10분, 내 몸 살림(1회차, 19명),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강좌 응급처치교육(2회차, 29명)를 진행하였음.
- “찾아가는 밝음건강강좌” 에서는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장애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돌보는 사람들을 위한 자기 회복 프로그램인 PTC(Powerful Tools for Caregivers) 따뜻한 자기 돌봄 강좌(6회차, 13명)를,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는 센터이용자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깨끗 깨끗“ 구강교육 강좌(3회차, 40명)를 진행함.
- 원주밝음신협과의 협업으로 진행하는 치매예방교실 ”두뇌놀이터“는 원주밝음신협 조합원 50명을 대상으로 7~9월까지 주 1회, 10회차를 진행하였으며 12월에는 원주밝음신협 조합원 20명을 대상으로 노인건강돌봄지도사 양성과정을 진행함.

(20명 전원 출석 및 수료, 민간자격증 취득)

또한, 원주지역자활센터 근로참여주민 건강상담도 3년째 지속 진행 함.

-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건강관리와 증진을 위한 조합원 건강활동모임 ”똑똑 건강반“은 4팀 25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3월 ~ 11월까지 9개월 동안 활동함.
 오리엔테이션(4팀, 13명)과 간담회(4팀, 18명)도 각 2회씩 진행함.
- 매월 1회, 조합원과 함께하는 건강한 산행 ”느림보산악회“ 도 시작하였는데, 18명의 조합원이 산악회 회원으로 등록하고 산행을 추진 함.
- 원주한살림, 원주생협과는 협업활동으로 조합원 대상 응급처치교육과 두레생협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공동 진행 및 자원봉사를 하였고 이 외에도 각 협동조합 간 상호 홍보를 진행 함.
- 하반기에는 강좌 및 활동에 대한 조합원의 욕구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46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였음.
- 이 밖에도 조합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2025 UN이 지정한 ”두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기념하여 원주협동조합 걷기대회와 제31회 원주국제걷기대회 참가비를 지원(2회차, 37명)하였음.

3. 강원의료복지사협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임직원 역량강화연수 실시(일본 사이타마)

- 조합이 생긴 이래 23년 만에 처음으로 임직원 해외연수를 실시 함.
- 그 간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개별적으로 다녀온 적은 있었지만, 외래, 재택의료센터, 가정간호센터, 사무국, 경영진 등 각 부서별 임직원이 참여 하는 연수는 처음이었음.
 (의료진 7명(의사(3), 간호사(3), 간호조무사(1)), 경영진 3명(이사장, 부이사장, 전무), 사무국 1명, 연수진행 1명, 총 12명.)
- 연수 주제 또한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재택의료 기반 통합돌봄사업의 역량강화” 로 잡고 6월 5일(목) ~ 8일(일), 3박 4일 간 일정으로 일본 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 사이타마 지역을 다녀 옴.
- 이번 연수를 통해 조합에 필요하고 실천해 나갈 17개의 과제를 정리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이사회 안건 상정을 통해 17개의 과제 추진에 대한 과제 추진별 참여 임원을 정함.

4. 노인공동생활가정추진위원회(공생추진위원회) 안착 및 활동

- “노인공동생활가정 추진위원회” 는 장기간 부재했던 조합의 위원회를 다시금 시작하

며 만든 첫 번째 위원회로 2024년 7월 2일, 첫 회의(천혜란, 박준영, 최효심)로 시작.

- 공생추진위원회는 조합의 돌봄사업소(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의 방향 및 운영 모델에 대한 자문, 설립 활동 지원, 관련 정책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조합의 돌봄 시설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3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5월에는 조합원 및 지역 주민들의 돌봄에 대한 공감대 및 관심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내가 꿈-꾸는 돌봄 에세이 공모전”을 실시하였고 25개의 응모작 중 7개의 수상작을 선정, 시상식을 진행 함.
- 이후, 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모임을 진행하며 내실 있는 돌봄사업소 추진을 위해 공생추진위원회 실무 TF(공생위원장, 공생위 간사, 부이사장, 전무이사)를 구성 함. 12월에는 휴먼케어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29인 요양시설을 견학하고 조합 돌봄사업소의 청사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 함.

5. 조합원 활동공간 “마중” 개소(사무국 이전)

- 의료사업소인 밝음의원과 사무국이 같은 공간에 있어 장점들도 있었으나, 조합의 사업 확대 및 활동 영역 증가로 외부손님 및 조합원을 응대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 함.
- 이에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활동할 수 있는 조합원 활동공간 “마중”을 마련하고 사무국도 향후 인력 확충으로 인한 공간 고민을 해결하고자 같이 이전 함.
- 조합원 활동공간 “마중” 은 사무국(5인 근무 가능)과 조합원 활동, 모임, 회의 등이 가능한 큰방(12명), 작은방(6명) 으로 구성하여 조합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듬.
- 조합원 활동공간 “마중” 의 개소에 있어 조합원들이 방문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음.

6. 심평원 “정기 현지조사” 및 건강보험공단 “코로나 19 자율시정” 실시 (환수금 및 과징금 발생)

- 심평원은 매년 자체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합 밝음의원은 25년 7월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7월 17일~19일(3일 간) 심사보험평가원 직원이 방문하여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을 조사 함.
- 현지 조사 결과로 1)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등 거짓 청구(3건), 2) 가정간호 산정기준

위반청구(14건), 3) 만성질환관리료 산정기준 위반청구(1,000건) 이 확인 됨.

※사유 : 동명이인, 요양원 환자와 병원 입원환자 중복 청구, 만성질환 상담 내용 미작성 등

- 또한, 코로나 19 당시, 조합이 지정 받아 운영하였던 “코로나 19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22년 2월 9일 지정)과 관련, 코로나 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의 적정청구 여부를 확인하고자 8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자율시정 현장지원을 실시 함.
- 환자관리료 확인 기간은 21년 9월 ~ 22년 6월 로 당시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청구한 16,000건 중 미확인 증빙 건수 1,794건이 확인 됨.

 ※사유 : 환자 모니터링 2회 실시와 관련 소명 자료 부족으로 청구 부적정으로 통지

 *발생 사유 : 하루 500명, 2회 전화 모니터링(1,000건 실시), 행정 간호 인력의 한계로 발생.
- 이로 인해 미확인 증비 건수 1,794건(1건 : 83.260원)에 대한 환수금액이 발생함.

7. 2026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확정(노인역량활용사업)

- 조합에서는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건강반장” 이라는 주민 참여 돌봄 모델을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의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처(공익형 일자리)로 참여하여 10년 동안 진행해옴.
- 이러한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원주시에 노인일자리사업 “G-care 매니저(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 모델을 제안하였고 수행기관 심사를 통해 11월 27일 “2026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에 선정됨.
- 활동인원은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120명(일 3시간, 주 15시간, 월 60시간)과 전담인력 1명을 배정 받았으며, G-care 매니저의 활동 내용은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신체활동, 정서활동, 생활돌봄 등 을 지원 하게 됨.
- 앞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과 맞물려 조합의 의료 기반 통합돌봄과 G-care 매니저의 활동을 연결고리로 하여 마을 돌봄의 생활화와 지역의 마을건강활동가를 양성하고 확대해가고자 함.

8. 손익계산

매　　출　　액 : 2,055,678,090 원
판　　관　　비 : 2,147,738,054 원(당기 상품매출원가 159,280,043원 합산)
영　업　손　실 : -92,059,964 원
영 업 외 수 익 : 232,297,522 원(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131,033,991원 합산)
영 업 외 비 용 : 42,029,442 원
당 기 순 이 익 : 98,208,116 원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은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감소 처리하므로 산출 법인세액은 미발생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미합산시 당기순손실 32,825,875원 발생

■ 사회적 성과 보고

2025년 사회적 성과 관리 보고서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측정기준</td><td>
<table>
<tr><th rowspan="2">지표</th><th rowspan="2">세부항목</th><th rowspan="2">추진 활동내용</th><th colspan="5">등급(상반기 평가시 50% 적용)</th></tr>
<tr><th>S</th><th>A</th><th>B</th><th>C</th><th>D</th></tr>
<tr><td rowspan="2">지역
사업</td><td>의료사업</td><td>의료서비스 제공</td><td>90%
이상</td><td>89%
~80%</td><td>79%
~70%</td><td>69%
~60%</td><td>59%
이하</td></tr>
<tr><td>노인요양사업</td><td>돌봄서비스 제공</td><td>90%
이상</td><td>89%
~80%</td><td>79%
~70%</td><td>69%
~60%</td><td>59%
이하</td></tr>
<tr><td>일자리
창출</td><td>취약계층
고용 및 유지</td><td>취약계층 고용비율
(취약/전체/비율)</td><td>30%
이상</td><td>29%
~25%</td><td>24%
~20%</td><td>19%
~11%</td><td>10%
이하</td></tr>
<tr><td rowspan="3">기타
사업</td><td>교육훈련비</td><td>임직원 및 조합원
교육 훈련 비용 등</td><td>90%
이상</td><td>89%
~80%</td><td>79%
~70%</td><td>69%
~60%</td><td>59%
이하</td></tr>
<tr><td>협동조합간협동</td><td>네트워크
업무협력 등</td><td>90%
이상</td><td>89%
~80%</td><td>79%
~70%</td><td>69%
~60%</td><td>59%
이하</td></tr>
<tr><td>홍보 및
지역사회기여</td><td>가치 실현 등</td><td>90%
이상</td><td>89%
~80%</td><td>79%
~70%</td><td>69%
~60%</td><td>59%
이하</td></tr>
</table>
</td></tr>
<tr><td>성과보고</td><td>
<table>
<tr><th>지표</th><th>세부항목</th><th>추진 활동내용</th><th>목표
(예산액 등)</th><th>결과
(결산액 등)</th><th>달성
율</th><th>등급</th></tr>
<tr><td rowspan="2">지역
사업</td><td>의료사업</td><td>의료서비스 제공</td><td>1,967,857,000</td><td>1,936,642,120</td><td>98%</td><td>S</td></tr>
<tr><td>노인요양사업</td><td>돌봄서비스 제공</td><td>248,069,000</td><td>109,603,790</td><td>44%</td><td>D</td></tr>
<tr><td>일자
리
창출</td><td>취약계층 고용
및 유지</td><td>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
(취약/전체/비율)</td><td>23명/41명/56%
(24. 12. 기준)</td><td>7명/22명/31%
(25. 12. 기준)</td><td>30%</td><td>S</td></tr>
<tr><td rowspan="3">기타
사업</td><td>교육훈련비</td><td>임직원 및 조합원
교육 훈련 비용 등</td><td>38,200,000</td><td>12,798,780</td><td>33%</td><td>D</td></tr>
<tr><td>협동조합간협동</td><td>네트워크
업무협력 등</td><td>21,260,000</td><td>17,744,900</td><td>83%</td><td>A</td></tr>
<tr><td>홍보 및
지역사회기여</td><td>가치 실현 등</td><td>3,500,000</td><td>8,517,990</td><td>243%</td><td>S</td></tr>
</table>
</td></tr>
<tr><td>담당자</td><td>
<table>
<tr><td>소속</td><td>사무국</td><td>담당자명</td><td>신승훈, 신현경, 조주희</td></tr>
</table>
</td></tr>
<tr><td>내부운영
의
사회가치</td><td>
<table>
<tr><td>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td><td>1. 취약계층 고용
- 취약계층 근로자(7)명÷전체 유급근로자(22명)×100=31%
- 고용보험 가입 기준(고령자 6명, 장애인 1명)
2. 취약계층 임금 수준
- 취약계층 근로자(7명) 급여 총액 531,711천원
- 취약계층 근로자 월평균 급여 7,596천원</td></tr>
<tr><td>근로자
보건 및 안전</td><td>1. 임직원 진료비 지원(2025년 10월까지) : 508건, 3,456천원
※2024년 11~12월 진료비(85건, 516천원) 포함</td></tr>
</table>
</td></tr>
</table>

구분	내용	
		2. 예방접종(독감) 지원 : 18명, 직원가 15천원(정상가 30천원) 3. 의료배상공제 가입 : 1,334천원(의사 및 간호사 9명)
	고용의 질	1. 취업규칙 개정을 통한 근로 환경 개선 - (1차 개정)2019년 7월 12일 - (2차 개정)2020년 6월 19일 - (3차 개정)2021년 4월 1일 - (4차 개정)2023년 3월 16일 - (5차 개정)2025년 4월 17일 2. 직원상조회 운영 - 2019년 1월부터 시작 - (초기) 생일 케이크, 5만원 상품권(온누리, 강원상품권) 전달 - (현재) 생일24 가입, 맞춤형 생일 선물(10만원) 지원 - 2025년부터 상조회 운영 중단, 회사 경비(복리후생비) 처리 3. 상여금 지급 - 13,600천원의 상여금 지급 - 지급 대상 : 전직원 ※조합 상근직 : 명절(설, 추석) 및 여름휴가 각 20만원 4. 임직원 및 조합원 대상 교육, 정보 제공 실적 - 직원 대상(교육훈련비, 12,922천원) 2월 04일,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유진영) 56천원 2월 19일, 2025년 간호사 보수교육(도경숙) 40천원 2월 19일, 2025년 내과학교실 연수(공영훈) 80천원 2월 21일, 2025년 간호사 보수교육(김은화) 40천원 2월 28일, 2025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유진영) 56천원 4월 08일, 일본 사이타마연수단 비용 지원(12명, 항공권 등) 5,926천원 4월 08일, 2025년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교육(박준영) 10천원 5월 14일,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박준영) 56천원 5월 30일, 재택의료 FOCUS ON교육(장원주, 이선영) 400천원 6월 24일, 일본 사이타마연수단 비용 지원(12명, 통역비 등) 2,927천원 7월 21일, 2025년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교육과정(공영훈) 200천원 8월 06일, 2025년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교육과정(안의현) 200천원 9월 19일, 한국재택의료협회 포커스온(공영훈) 200천원 9월 19일, 제27회 서울아산병원 내과 개원의 연수(공영훈) 80천원 9월 29일, 2025년 일본 치바그룹연수단 비용 지원(3명) 1,950천원 10월 02일, 한국재택의료협회 포커스온(김준철) 200천원 10월 22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김준철) 35천원 10월 30일,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교육(공영훈) 40천원 10월 30일, 호산폐연구회 호흡기센터 심포지엄(공영훈) 20천원 10월 30일, 한국재택의료협회 연합 추계 학술제(공영훈) 30천원 11월 04일, 2025년 간호조무사 정기 보수교육(홍윤숙) 65천원 11월 27일, 2025년 간호사 보수교육(염은경 등 총 3명) 120천원 12월 08일, 2023년 간호조무사 정기 보수교육(김은영) 70천원 12월 30일, 2025년 간호사 보수교육(신옥경 등 총 3명) 120천원 - 조합원 대상(조직활동비, 3,206천원) ※건강반장(959천원) 1월 08일, 건강반장, 25-1차 집담회 및 신규교육 다과 44천원 2월 21일 건강반장, 25-2차 집담회 다과 45천원 3월 19일, 건강반장, 25-3차 집담회 다과 26천원 4월 15일, 건강반장, 활동물품 구입 377천원

구분	내용	
		4월 22일, 건강반장, 25-4차 집담회 및 역량강화교육 다과 39천원 5월 15일, 건강반장, 25-5차 집담회 다과 42천원 6월 23일, 건강반장, 25-6차 집담회 다과 37천원 7월 10일, 건강반장, 25-7차 집담회 다과 56천원 8월 21일, 건강반장, 25-8차 집담회 다과 75천원 9월 25일, 건강반장, 25-9차 집담회 다과 45천원 10월 22일, 건강반장, 25-10차 집담회 다과 42천원 11월 25일, 건강반장, 25-11차 집담회 다과 73천원 12월 12일, 건강반장, 25-12차 집담회 다과 54천원 ※건강수다(12,841천원) 4월 04일, 건강타이치, 홍보 배너 44천원 4월 09일, 착하다쿡, 사전 회의 식대 19천원 4월 14일, 건강타이치, 1~3차 다과 28천원 4월 30일, 건강타이치, 4차 다과 6천원 5월 07일, 건강타이치, 5차 다과 9천원 5월 09일, 건강타이치, 강좌 강사비(5회×150천원) 750천원 5월 19일, 착하다쿡, 1차 강사비 및 재료비 등 205천원 5월 30일, 바르게걷기, 강좌 강사비 및 다과 등 229천원 6월 11일, 착하다쿡, 2차 강사비 및 재료비 등 276천원 6월 24일, 응급처치교육, 다과 및 대관료 62천원 7월 01일, 치매예방교실 ‘두뇌놀이터’, 1차 강사비 200천원 7월 08일, 치매예방교실 ‘두뇌놀이터’, 2차 강사비 200천원 7월 15일, 치매예방교실 ‘두뇌놀이터’, 3차 강사비 200천원 7월 21일, 착하다쿡, 3차 강사비 및 재료비 등 234천원 7월 22일, 치매예방교실 ‘두뇌놀이터’, 4차 강사비 200천원 7월 29일, 치매예방교실 ‘두뇌놀이터’, 5차 강사비 200천원 8월 05일, 치매예방교실 ‘두뇌놀이터’, 6차 강사비 200천원 8월 12일, 치매예방교실 ‘두뇌놀이터’, 7차 강사비 200천원 8월 18일, 착하다쿡, 4차 강사비 및 재료비 등 234천원 8월 18일, 치매예방교실 ‘두뇌놀이터’, 8차 강사비 200천원 8월 26일, 치매예방교실 ‘두뇌놀이터’, 9차 강사비 200천원 9월 02일, 치매예방교실 ‘두뇌놀이터’, 10차 강사비 200천원 9월 04일, 하루 10분 내몸 살림 강좌 다과 등 67천원 9월 15일, 착하다쿡, 5차 강사비 및 재료비 등 235천원 10월 20일, 착하다쿡, 6차 강사비 및 재료비 등 195천원 11월 10일, 착하다쿡, 7차 강사비 및 재료비 등 205천원 11월 11일, 통합돌봄 포럼 강사비 등 각종 경비 2,667천원 12월 08일, 착하다쿡, 8차 강사비 및 재료비 등 173천원 12월 24일, 노인건강돌봄지도사양성과정교육 관련 각종 경비 5,199천원 ※건강소모임(4,958천원) 2월 12일, 똑똑건강반, 1기 시상 선물 250천원 2월 19일, 똑똑건강반, 2기 사전모임 다과 20천원 3월 19일, 똑똑건강반, 2기 사전모임(추가) 다과 18천원 3월 31일, 똑똑건강반, 활동비 지원(4팀, 24명) 231천원 4월 25일, 똑똑건강반, 검진비 지원(4팀, 24명) 720천원 4월 30일, 똑똑건강반, 활동비(4팀, 24명) 514천원 5월 31일, 똑똑건강반, 활동비 지원(4팀, 24명) 279천원 6월 23일, 똑똑건강반, 간담회 다과 29천원 6월 30일, 똑똑건강반, 활동비 지원(4팀, 24명) 327천원 7월 13일, 느림보산악회, 사전 모임 205천원

구분	내용	
		7월 25일, 느림보산악회, 정기 산행 264천원 7월 31일, 똑똑건강반, 활동비 지원(4팀, 24명) 208천원 8월 23일, 느림보산악회, 정기 산행 118천원 8월 31일, 똑똑건강반, 활동비 지원(4팀, 24명) 87천원 9월 24일, 똑똑건강반, 간담회 다과 등 174천원 9월 30일, 똑똑건강반, 활동비 지원(4팀, 24명) 442천원 10월 30일, 똑똑건강반, 활동비 지원(4팀, 24명) 135천원 11월 15일, 느림보산악회, 정기 산행 106천원 11월 30일, 똑똑건강반, 활동비 지원(4팀, 24명) 195천원 12월 08일, 똑똑건강반, 검진비 지원(3팀, 21명) 630천원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 가치	이용자	- 아프고 난 이후의 “치료 중심 의료” 보다 아프기 전 “예방의료 및 건강관리” 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감소 유도 -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삶 도모 - 분절되어 있는 의료와 노인요양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서 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 - (준)고령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와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건강한 일자리를 양성
	기타	

■ 2025년 사업결산

1. 조합 경영 보고(12월말 기준)

구분	항목	조합-사무국	밝음의원	재택의료	가정간호	재가방문 요양센터	계
매출 (a)	주수입 (매출액및외부사업비)	7,530,000	411,347,410	447,796,270	1,079,400,620	109,603,790	2,055,678,090
	기타수입 (영업외수익)	49,191,005	7,944,343	43,967,908	63,965	96,310	101,263,531
	매출계	**56,721,005**	**419,291,753**	**491,764,178**	**1,079,464,585**	**109,700,100**	**2,156,941,621**
비용 (b)	인건비 (업체부담4대보험료포함)	168,720,180	299,966,690	332,746,650	718,891,110	138,210,340	1,658,534,970
	(인건비차감)	0	0	-16,624,800	0	0	-16,624,800
	재료비 └의약품·의료소모품	0	85,887,027	12,284,748	155,430,128	0	253,601,903
	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79,340,643	71,865,973	47,685,668	44,015,154	9,318,543	252,225,981
	기타비용 └영업외비용	12,390,241	0	29,639,201	0	0	42,029,442
	비용계	**260,451,064**	**457,719,690**	**405,731,467**	**918,336,392**	**147,528,883**	**2,189,767,496**
매출(a)-비용(b)		**-203,730,059**	**-38,427,937**	**86,032,711**	**161,128,193**	**-37,828,783**	**-32,825,875**
전년도 외상매입금 잔액					24,744,992		24,744,992
금년도 매입액					201,481,256		201,481,256
금년도 결제액					211,597,258		211,597,258
금년도 외상매입금 잔액					14,628,990		14,628,990
전년도 차입금 잔액		40,178,136					40,178,136
금년도 차입액		76,457,734					76,457,734
금년도 상환액		15,227,767					15,227,767
금년도 차입금 잔액		101,408,103					101,408,103
출자금 신규 및 증좌		13,190,000					13,190,000
출자금 반환		1,100,000					1,100,000
출자액		12,090,000					12,090,000

1) 감가상각비 반영
(2025년 당초 예산 27,229,970원에서 29,186,436원으로 1,956,466원 증가, 조합원 활동 공간 마련으로 인한 리모델링 및 무선 휴대용 초음파기 구입 등 자산 증가와 연동)
2) 조합원 활동 공간 마련 비용(일시적)
총 35,874,600원(자산 33,794,800원 + 비용 2,079,800원)
3) 2025년 차입금 상환액 15,227,767원(원금 14,102,545원 + 이자 1,125,222원)

2. 사업소별 세부 내용

1) 밝음의원

구분	밝음의원 매출							
	밝음의원 (급여)	밝음의원 (비급여)	검진수입 (건강+암)	촉탁의	장애인 의료비	금연 지원금	예방접종	합계
1월	18,358,570	8,457,750	385,990	3,958,200	0	60,900	980,500	**32,201,910**
2월	16,211,530	7,489,300	265,280	6,095,430	860,150	75,490	58,830	**31,056,010**
3월	19,784,340	6,075,700	204,270	4,750,690	522,350	18,330	117,660	**31,473,340**
4월	19,350,840	6,124,370	171,450	5,020,940	251,500	146,820	78,440	**31,144,360**
5월	17,955,090	7,558,300	290,820	4,734,870	73,300	48,710	0	**30,661,090**
6월	18,968,860	8,150,600	89,070	5,018,280	52,800	62,700	0	**32,342,310**
7월	18,748,990	8,277,100	422,120	5,060,420	293,850	55,450	0	**32,857,930**
8월	15,644,240	6,871,100	296,460	4,947,300	0	48,710	58,830	**27,866,640**
9월	17,060,470	9,587,600	440,040	4,719,120	0	63,990	137,270	**32,008,490**
10월	14,517,870	15,724,700	1,875,730	4,907,820	0	118,450	9,216,700	**46,361,270**
11월	15,412,180	19,022,800	415,280	3,393,700	0	42,870	6,628,180	**44,915,010**
12월	17,696,120	14,786,050	1,113,580	3,393,700	0	77,290	1,392,310	**38,459,050**
월평균	**17,475,758**	**9,843,781**	**497,508**	**4,666,706**	**171,163**	**68,309**	**1,555,727**	**34,278,951**
총계	**209,709,100**	**118,125,370**	**5,970,090**	**56,000,470**	**2,053,950**	**819,710**	**18,668,720**	**411,347,410**

(1) 비급여진료 : 일반진료

(2) 건강검진수입 = 건강검진+암검진

(3) 촉탁기관현황 : 보훈(48), 로얄(67), 천사(45), 산고대(25)

2) 재택의료센터 및 가정간호센터

구분	재택의료센터 매출						가정간호 매출
	재택의료 시범사업	왕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의사소견서	방문간호 지시서	합계	
1월	20,934,120	4,368,080	7,144,580	470,190	0	**32,916,970**	**93,696,290**
2월	20,810,310	5,585,930	10,334,580	457,860	92,710	**37,281,390**	**85,038,850**
3월	20,063,100	5,407,170	8,357,950	1,129,380	0	**34,957,600**	**89,029,090**
4월	23,079,020	6,549,300	8,550,570	921,820	0	**39,100,710**	**94,697,080**
5월	23,097,100	3,296,290	6,669,140	1,324,700	0	**34,387,230**	**91,727,870**
6월	21,770,360	4,273,510	9,810,670	0	0	**35,854,540**	**86,945,910**
7월	22,418,930	6,047,000	7,954,320	732,560	0	**37,152,810**	**92,121,690**
8월	20,409,240	5,955,000	8,214,350	757,000	92,710	**35,428,300**	**88,835,390**
9월	21,503,090	6,933,960	10,146,140	0	0	**38,583,190**	**91,051,610**
10월	23,377,610	5,614,350	11,915,980	811,940	0	**41,719,880**	**84,989,310**
11월	24,280,080	5,546,110	8,056,900	587,940	0	**38,471,030**	**89,825,480**
12월	26,750,470	5,242,280	9,376,030	573,840	0	**41,942,620**	**91,442,050**
월평균	22,374,453	5,401,582	8,877,601	647,269	15,452	**37,316,356**	**89,950,052**
총계	**268,493,430**	**64,818,980**	**106,531,210**	**7,767,230**	**185,420**	**447,796,270**	**1,079,400,620**

3) (일반)방문진료 현황 : 총 403건 / 월 평균 33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8	36	29	40	17	26	36	29	37	32	64	29	**403**

4) 장애인주치의 현황(대상자 : 719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포괄평가	4	5	2	2	2	2	3	1	1	2	7	3	**34**
중간점검표	-	-	-	-	1	1		4	4	2	1	1	**14**
방문진료	12	36	18	18	13	19	15	15	23	29	18	23	**239**
방문간호	19	40	31	39	31	36	40	39	43	44	33	37	**432**
환자관리료	12	2	3	1	1	-	3	4	-	2	-	-	**28**

5)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등록대상자 98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방문진료	55	52	61	66	64	53	61	57	65	70	69	79	**752**
방문간호	121	123	134	138	136	112	129	122	139	145	145	169	**1,613**

6) 가정간호센터 운영 현황

* 인력현황
- 매니저 : 1명 / 가정전문간호사 : 5명(원주 2명, 강릉 2명, 횡성 1명)

* 원주 협약기관 (23개소)
은혜요양센터, 소망요양원, 흥업요양원, 행복요양원, 평심원노인요양원, 믿음요양원, 소담 요양원, 가온요양원, 노블레스 요양원, 산고대노인요양센터, 천사요양원, 로얄요양원, 원주실버요양센터, 상애노인전문요양센터, 행복둥지요양원, 행복의집 요양원, 상지노인복지센터, 바른요양원, 보노마더스요양원, 가족요양원, 영월군노인요양원, 보금자리요양원, 여름요양원

* 강릉 협약기관 (30개소)
참좋은마을요양원, 다금요양원, 강릉부모사랑, 회산부모사랑, 다솜요양원, 우리요양원, 마루요양원, 가정강릉요양원, 가애노인요양시설, 은영노인요양시설, 임영요양원, 효담요양원, 강릉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갈바리 노인 요양원, 강동요양원, 행복마을요양원, 우리시니어스요양시설, 강릉천사요양원, 치유재활요양원, 강릉노인요양원, 드림요양원, 정한요양원, 솔향의집요양원, 장수마을요양원, 실버하우스, 한빛마을, 율곡요양원, 강릉성심요양원, 착한사랑요양원, 옥계농협요양원

* 횡성 협약기관 (15개소)

횡성매화실버요양원, 횡성군소규모, 한결공동생활, 스마일카운티요양원, 아름다운, 횡성재가노인, 골든포레스트, 횡성행복마을, 목천요양원, 시에노전문요양센터, 원주축복의집, 효요양원, 초원의 집, 청일요양원, 별자리요양원

7) 치료-검사-검진 세부 현황

⑴ 환자 수(명)

① 외래(촉탁 포함), 재택의료(방문진료), 가정간호 총 환자수

	환자수									
	초진	재진	계	보험		빈의자	보호	일반	계	노숙인 쉼터
				55세 미만	55세 이상					
1월	198(74)	2,868	3,066	268	2,798	62	752	749	3,066	54
2월	138(61)	2,628	2,766	203	2,563	53	686	636	2,766	39
3월	146(69)	2,596	2,742	232	2,510	67	705	513	2,742	37
4월	140(61)	2,783	2,923	194	2,729	68	719	696	2,923	35
5월	159(70)	2,657	2,816	212	2,604	62	716	582	2,816	29
6월	173(77)	2,531	2,704	167	2,537	51	634	656	2,704	28
7월	143(121)	2,627	2,770	166	2,604	64	659	624	2,770	22
8월	130(63)	2,565	2,695	175	2,520	53	684	573	2,695	25
9월	257(153)	2,708	2,965	600	2,365	54	784	734	2,965	16
10월	260(164)	2,955	3,215	790	2,425	54	687	1,110	3,215	24
11월	285(156)	2,729	3,014	361	2,653	52	732	898	3,014	23
12월	162(99)	2,729	2,891	266	2,625	56	797	640	2,891	21
합계	2,191(1,168)	32,376	34,567	3,634	30,933	696	8,555	8,411	34,567	353

※취약계층 : 55세 이상, 장애인/한부모가정, 빈의자(빈곤층), 보호, 노숙인 쉼터(최양업토마스 집)

※초진()의 수는 외래 초진임.

② 요양원 촉탁(명)

	요양원				
	천 사	산 고 대	보 훈	로 얄	계
1월	90	15	122	211	438
2월	68	19	172	225	484
3월	109	19	167	198	493
4월	107	20	143	195	465
5월	70	26	148	211	455
6월	128	28	114	132	402
7월	150	32	103	140	425
8월	67	28	75	152	322
9월	123	34	73	138	368
10월	81	26	81	종료	188
11월	63	33	81		177
12월	84	31	85		200
합계	1,140	311	1,364	1,602	4,417

③ 조합원 이용 현황(명) : 조합원(조합원), 비조합원(비조), 준조합원(준조)

	조합원수				검진건수			골밀도			x-ray
	조합원	비조	준조	계	검진	일반	계	조합원	비조	계	계
1월	432	2,548	86	3,066	4	51	55	7	2	9	33
2월	380	2,360	26	2,766	4	8	12	4	3	7	54
3월	376	2,341	25	2,742	4	12	16	8	6	14	64
4월	399	2,497	27	2,923	8	12	20	12	7	19	61
5월	415	2,381	20	2,816	7	6	13	3	4	7	47
6월	396	2,219	89	2,704	10	41	51	17	8	25	121
7월	400	2,354	16	2,770	6	9	15	12	4	16	41
8월	372	2,302	21	2,695	13	3	16	13	2	15	43
9월	441	2,493	31	2,965	48	10	58	10	12	22	94
10월	635	2,393	14	3,215	12	7	19	10	3	13	38
11월	571	2,295	142	3,014	15	6	21	12	3	15	42
12월	523	2,315	53	2,891	21	9	30	11	1	12	56
합계	5,340	28,498	550	34,567	152	174	326	119	55	174	694

④ 치료 현황(명)

구분	기타					골다공증		호르몬		합계
	치료	영양제	타나민	하이알	레시노원	본비바	프롤리아	푸라몬	예나스테론	
1월	55	23	25	2	0	1	11	13	2	132
2월	58	19	21	3	1	2	12	9	3	128
3월	103	22	61	12	1	8	13	14	1	235
4월	104	22	77	11	3	2	14	8	14	255
5월	75	30	74	5	1	0	16	18	5	224
6월	83	34	91	11	1	6	13	15	0	254
7월	88	29	101	16	0	3	13	7	2	259
8월	60	28	68	6	0	3	12	7	5	189
9월	53	28	59	4	0	5	10	8	3	170
10월	39	17	26	1	1	4	14	7	12	121
11월	48	16	34	0	2	3	9	9	6	127
12월	66	21	42	2	1	13	14	4	10	173
월평균	69	24	56	6	1	4	12	9	5	188

8)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매출 (2025년 6월까지 운영)

구분	방문요양서비스					
	방문요양	장기근속수당	보수교육급여	소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등	총계
1월	14,745,560	260,000	0	15,005,560	3,353,400	18,358,960
2월	16,383,890	260,000	0	16,643,890	540,900	17,184,790
3월	16,103,730	260,000	0	16,363,730	972,000	17,335,730
4월	21,666,790	260,000	0	21,926,790	0	21,926,790
5월	17,015,140	260,000	0	17,275,140	0	17,275,140
6월	16,787,380	260,000	475,000	17,522,380	0	17,522,380
총계	102,702,490	1,560,000	475,000	104,737,490	4,866,300	109,603,790

(1) 방문요양서비스 이용현황

월별 서비스 대상자 인원(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	13	13	16	14	13

(2) 방문요양서비스 신규계약 및 종결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신규	-	김○대	신○용	김○애 노○자 이○자	-	-
해지	-	-	문○석	-	이○만	-
사망	-	-	-	-	-	-
기타	-	-	-	-	신○순 (입원)	김○대 (입소)

3. 조합원 이용현황

구분	밝음의원			
	조합원+준조	비조합원	소계	조합원이용률(%)
1월	518	2,548	3,066	16.8
2월	406	2,360	2,766	14.6
3월	401	2,341	2,742	14.6
4월	426	2,497	2,923	14.5
5월	435	2,381	2,816	15.4
6월	485	2,219	2,704	17.9
7월	416	2,354	2,770	15
8월	393	2,302	2,695	14.5
9월	472	2,493	2,965	15.9
10월	822	2,393	3,215	25.5
11월	719	2,295	3,014	23.8
12월	576	2,315	2,891	19.9
총계	6,069	28,498	34,567	17.37%

4. 출자금 현황(2024년 말 출자금 총액 271,956,874원)

(단위:원)

구분	출자액		반환액	잔액	출자금총액
	신규	증좌			
2024년	4,470,000	2,520,000	30,040,000	-23,050,000	271,956,874
1월	460,000	920,000	0	1,380,000	273,336,874
2월	1,210,000	70,000	0	1,280,000	274,616,874
3월	200,000	170,000	0	370,000	274,986,874
4월	250,000	110,000	100,000	260,000	275,246,874
5월	300,000	120,000	230,000	190,000	275,436,874
6월	1,050,000	110,000	100,000	1,060,000	276,496,874
7월	300,000	120,000	0	420,000	276,916,874
8월	220,000	120,000	50,000	290,000	277,206,874
9월	1,170,000	200,000	0	1,370,000	278,576,874
10월	660,000	130,000	100,000	690,000	279,266,874
11월	2,800,000	70,000	370,000	2,500,000	281,766,874
12월	2,280,000	150,000	150,000	2,280,000	284,046,874
누계	10,900,000	2,290,000	1,100,000	12,090,000	

※ 24년 대비 25년 출자금 총액 : 4.1% 증가

5. 조합원 현황

1) 월별 변동 현황

(단위:명)

구분		신규	탈퇴	증좌	감좌	조합원수	비고
2024년		95	18	20	3	1,694	
2025년	1월	10	0	13	0	1,704	매월 정기증좌 조합원 10명
	2월	6	0	12	0	1,711	정기증좌 조합원 2명 추가
	3월	4	0	12	0	1,715	
	4월	5	2	12	0	1,718	
	5월	6	2	12	0	1,722	
	6월	17	2	12	0	1,737	
	7월	6	0	12	0	1,743	
	8월	6	1	13	0	1,748	
	9월	26	0	13	0	1,774	제명후재가입(1명) 증좌에 포함
	10월	13	2	13	0	1,785	정기증좌 조합원 1명 감소
	11월	60	2	12	0	1,843	
	12월	47	3	12	0	1,887	
합계		206	14	12			

※ 정기 증좌 조합원(11명)

이광희, 정영주, 정금낭, 최훈침, 신옥경, 박영호, 최희선, 권혁주, 이하범, 이인재, 방성균

6. 이사회 주요 안건

NO.	개최일	참석자	주요 심의안건
제202차	25.02.12	15명 中 9명	제1호 의안 2024년 11월 ~ 2025년 1월 신규 가입 조합원의 가구원 이용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의 건 제3호 의안 2025년 상임 임원 보수 결정의 건 제4호 의안 통합돌봄본부장 선임의 건(재가방문요양센터장 겸직) 제5호 의안 우리동네주치의 폐업의 건 제6호 의안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2025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제203차	25.04.22	12명 中 9명	제1호 의안 2025년 2월 ~ 2025년 3월 신규 가입 조합원의 가구원 이용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조합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추진의 건
제204차	25.05.27	12명 中 7명	제1호 의안 의료기반 통합돌봄을 위한 조직 재정비 건

제205차	25.07.17	12명 中 9명	제1호 의안 2025년 4월 ~ 2025년 6월 신규 가입 조합원의 가구원 이용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조합원 활동 공간(가칭: 마중) 및 사무공간 임대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조합활성화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안) 승인 및 추진의 건 제4호 의안 조합원 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조합원 2,000명 달성을 위한 조합원 가입 이벤트 추진의 건 제6호 의안 미즈급 연차수당(2007년 ~ 2024년) 정산 및 지급의 건 제7호 의안 이사회 불참사유서(이창호 이사) 동의의 건 제8호 의안 노인공동생활추진위원회 규정(안) 승인의 건
제206차	25.09.25	12명 中 8명	제1호 의안 2025년 7월 ~ 2025년 8월 신규 가입 조합원의 가구원 이용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25 사이타마 연수 후 향후 추진 과제 진행의 건 제3호 의안 2025년 상반기 사회적성과관리보고서 평가의 건(SVI 관련)
제207차	25.11.26	12명 中 7명	제1호 의안 2025년 9월 ~ 2025년 10월 신규 가입 조합원의 가구원 이용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노인일자리 수행기관(G-care 매니저) 선정에 따른 (전담)인력 채용 진행의 건 제3호 의안 2025년 강원상승(SE)자금 융자 사업 신청의 건 제4호 의안 공생추진위원회 실무TF 구성 및 추진의 건 제5호 의안 예산 항목 간 조정(수정)의 건

7. 2025년 예산 대비 집행 실적(12월 말 기준)

장	관	항	목	2025년 예산액	2025년 집행액	집행률	집행 내역
1. 매출액				2,215,926,000	2,055,678,090	92.8%	
	의료사업부			1,967,857,000	1,938,544,300	98.5%	
		밝음의원		474,521,000	411,347,410	86.7%	
			진료수입	279,040,000	209,709,100	75.2%	
			진료수입(비급여)	91,460,000	118,125,370	129.2%	
			건강검진수입	5,429,000	5,970,090	110.0%	
			촉탁의(계약의)	68,320,000	56,000,470	82.0%	
			기타수입	30,272,000	21,542,380	71.2%	
			장애인의료비	2,156,000	2,053,950	95.3%	
			금연지원금	1,102,000	819,710	74.4%	
			예방접종	27,014,000	18,668,720	69.1%	
		재택의료센터		490,346,000	447,796,270	91.3%	
			재택의료시범사업	309,417,000	268,493,430	86.8%	
			방문진료(왕진)	50,534,000	64,818,980	128.3%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121,763,000	106,531,210	87.5%	
			기타수입	8,632,000	7,952,650	92.1%	
			의사소견서	8,405,000	7,767,230	92.4%	
			간호지시서	227,000	185,420	81.7%	
		가정간호		1,002,990,000	1,079,400,620	107.6%	
			원주센터	456,077,000	452,878,310	99.3%	
			강릉센터	333,280,000	399,220,510	119.8%	
			횡성센터	213,633,000	227,301,800	106.4%	
	통합돌봄사업본부			248,069,000	109,603,790	44.2%	
		재가장기요양수입		243,806,000	104,737,490	43.0%	
			방문요양	240,000,000	102,702,490	42.8%	재가장기요양기관 폐원 (~06/30)
			방문목욕	0	0		
			기타수입	3,806,000	2,035,000	53.5%	
		기타돌봄사업수입		4,263,000	4,866,300	114.2%	
	조합 교육비 수입			0	7,530,000		
2. 매출원가						#DIV/0!	
3. 수입(매출총이익)				2,215,926,000	2,055,678,090	92.8%	
4. 지출				2,243,829,000	2,147,738,054	95.7%	
	관리비			2,182,429,000	2,093,450,914	95.9%	
		인건비		1,614,769,000	1,533,869,090	95.0%	
			임원보수	600,000	4,850,000	808.3%	임원(부이사장) 활동비 4,050,000 임원상여금 800,000
			직원급여(의원및조합)	1,243,183,000	1,261,340,550	101.5%	
			의원(6명)	245,975,000	252,710,370	102.7%	
			재택의료(8명)	306,675,000	280,187,590	91.4%	
			(인건비지원)	-16,282,000	-16,624,800	102.1%	농촌사업 11,700,000 네카사업 4,924,800

장	관	항	목	2025년 예산액	2025년 집행액	집행률	집행 내역
			가정간호(6명)	566,655,000	609,048,200	107.5%	
			조합(3명+@)	140,160,000	136,019,190	97.0%	노인일자리담당급여포함 2,027,200
			통합춘천사업단	0	0		
			(인건비지원)	0	0		
			직원급여(재가방문)	249,813,000	120,193,930	48.1%	
			시설장	30,000,000	17,500,000	58.3%	1명
			사회복지사	28,800,000	15,280,000	53.1%	1명
			요양보호사)	191,013,000	87,413,930	45.8%	12명
			직원상여금	14,400,000	13,600,000	94.4%	
			퇴직급여(DC연금)	106,773,000	133,884,610	125.4%	
		일반경비		321,677,875	305,979,921	95.1%	
			복리후생비	147,591,000	139,251,675	94.3%	
			4대보험료	120,591,000	108,041,080	89.6%	
			(4대보험료지원)	0	0		
			임직원 식음료 및 회식	10,500,000	13,502,980	128.6%	
			임직원 선물 (명절, 직원포상 등)	8,500,000	10,075,320	118.5%	명절선물 3,462,220 생일상품권등 2,100,000 직원포상 2,000,000 기타퇴직기념선물등 2,513,100
			임직원 진료비	3,000,000	4,087,000	136.2%	
			임직원 경조사비	1,000,000	1,393,700	139.4%	
			임직원 피복비	1,000,000	922,910	92.3%	
			기타복리후생비	3,000,000	1,228,685	41.0%	
			여비교통비	7,000,000	3,620,881	51.7%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9,600,000	6,196,100	64.5%	이사장활동비 2,239,600 거래처경조사 2,050,000 거래처미팅식음료 1,906,500
			통신비	4,592,000	4,517,510	98.4%	
			전화및인터넷	2,160,000	2,437,100	112.8%	
			업무용휴대폰	1,008,000	969,360	96.2%	7개
			기타 통신비	1,424,000	1,111,050	78.0%	무선결제단말기(3대) 396,000 각종우편 364,400 휴대용와이파이(2대) 350,650
			수도광열비	8,110,000	7,275,853	89.7%	
			전기요금	7,800,000	6,997,930	89.7%	
			상하수도요금	240,000	277,923	115.8%	
			기타수도광열비	70,000	0	0.0%	
			세금과공과	448,000	278,750	62.2%	법인차량 자동차세 188,250 등록면허세 35,500 주민세(사업소분) 55,000
			감가상각비	27,229,970	29,186,436	107.2%	조합 사무국 이전
			지급임차료	5,600,000	6,126,500	109.4%	
			사무실 임차료	3,536,000	3,520,000	99.5%	조합 사무국 이전
			복합기 임차료	1,716,000	2,112,000	123.1%	

장	관	항	목	2025년 예산액	2025년 집행액	집행률	집행 내역	
			기타임차료	348,000	494,500	142.1%	정수기 공기청정기 대관료	216,280 203,220 75,000
			수선비	300,000	0	0.0%		
			보험료	4,880,000	4,004,320	82.1%		
			법인차량보험	2,500,000	2,299,390	92.0%	법인차량(3대)	2,299,390
			전문인배상 책임보험	2,330,000	1,607,830	69.0%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654,330 680,000 273,500
			기타 보험료 (화재보험 등)	50,000	97,100	194.2%	화재보험 이용계약지급보증보험	82,100 15,000
			차량유지비	42,180,000	35,647,983	84.5%		
			법인차량정기주차	4,320,000	4,380,000	101.4%	(3대)	
			법인차량유류비	31,140,000	28,903,342	92.8%	재택(법인)/가정(자가)	
			기타차량유지비 (타이어 교체 등)	6,720,000	2,364,641	35.2%	재택(법인)/가정(자가)	
			운반비	2,400,000	2,506,600	104.4%	각종 배송비	
			교육훈련비	14,000,000	12,922,230	92.3%	해외연수비지원 각종교육(직원)	10,804,230 2,118,000
			도서인쇄비	753,000	977,500	129.8%		
			신문구독료	528,000	528,000	100.0%		
			기타도서인쇄비 (명함제작 등)	225,000	449,500	199.8%	명함 도서 도장및명판	218,700 118,800 112,000
			회의비	500,000	0	0.0%		
			소모품비	12,000,000	13,510,242	112.6%	각종소모품 복합기소모품 각종사무용품 자판기커피관련 컴퓨터&주변기기	7,175,400 3,311,000 2,170,792 830,000 123,000
			지급수수료	23,333,905	24,948,306	106.9%		
			프로그램 사용료	2,907,000	3,257,159	112.0%	더존 MRM 뷰텍 이지케어 OpenAi	1,001,000 892,100 396,000 116,050 852,009
			법인결산수수료	2,500,000	2,513,500	100.5%		
			카드가맹점수수료	2,500,000	3,051,273	122.1%		
			재가방문요양 센터 관련	2,000,000	2,200,480	110.0%		
			고객용 주차 관련 수수료	1,800,000	1,596,500	88.7%	B도로주차장 KM파크(농협)	994,900 601,600
			문자전송 포인트 충전	1,500,000	2,860,000	190.7%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1,200,000	1,338,194	111.5%		
			홈페이지 관리	370,000	363,000	98.1%		

장	관	항	목	2025년 예산액	2025년 집행액	집행률	집행 내역	
			기타지급수수료(송금수수료등)	8,556,905	7,768,200	90.8%	직원채용공고 '마중'입주청소외 공증수수료 보안서비스 법무사이용수수료 의료폐기물처리비 각종이체수수료 원주시의사회 공익법인결산공시관련 치료실침구류세탁 밝음의원소독 피폭선량측정 출입문매트임차 카드체크기사용료 각종발급수수료	1,650,000 1,028,000 1,006,500 924,000 843,960 600,000 502,380 300,000 220,000 169,400 150,000 149,600 144,000 120,000 36,000
			광고선전비	6,000,000	9,872,500	164.5%	아파트승강기거울광고 지면광고(원주투데이) 각종홍보용품제작	4,587,000 1,720,000 3,565,500
			대손상각비	20,000	-57,444	-287.2%		
			건물관리비	5,040,000	4,970,966	98.6%		
			사무실 관리비	5,040,000	4,970,966	98.6%		
			무형고정자산상각	0	0			
			잡비	100,000	223,013	223.0%	각종과태료	168,000
		의료경비		245,982,125	253,601,903	103.1%		
			양방의약품비	167,267,845	162,627,320	97.2%		
			양방의료소모품비	39,357,140	57,937,307	147.2%		
			외주용역비	39,357,140	33,037,276	83.9%		
	조합사업비			61,400,000	54,287,140	88.4%		
		조직활동비		51,740,000	45,238,340	87.4%		
			이사회 및 원장단 회의	3,600,000	2,786,900	77.4%	이사회 이사회참석수당 원장단회의	1,402,400 420,000 964,500
			유관기관 간담회	600,000	0	0.0%		
			대의원 소통의날	1,500,000	3,024,000	201.6%	대의원소통의날 대의원간담회 대의원단합대회	1,191,600 947,600 884,800
			대의원 역량강화교육	1,500,000	0	0.0%		
			임직원 역량강화교육	2,000,000	287,000	14.4%		
			임직원 워크샵	4,000,000	2,620,230	65.5%		
			대의원 총회	3,040,000	3,478,750	114.4%	식대및다과 자료집 기념품등	1,511,000 1,150,000 817,750
			임직원 회의	2,400,000	3,431,550	143.0%	사업소별월례회의	
			원주건강수다	15,000,000	12,841,820	85.6%	각종의료및돌봄강좌	
			조합원 스킨십 강화	1,400,000	3,007,080	214.8%	신규조합원가입이벤트	2,183,680

장	관	항	목	2025년 예산액	2025년 집행액	집행률	집행 내역	
							신규조합원환영회	388,900
							각종조합원참여행사지원	434,500
			찾아가는 밝음건강강좌	3,500,000	3,107,470	88.8%	PTC자기돌봄강좌	1,841,470
							구강교육	1,266,000
			건강소모임	8,000,000	4,958,370	62.0%	똑똑건강반	4,264,010
							느림보산악회	694,360
			건강반장활동	1,200,000	959,470	80.0%	집담회및역량강화교육	581,960
							활동물품지원	377,510
			자원봉사단 활동	1,000,000	66,600	6.7%		
			공생추진위원회	3,000,000	4,669,100	155.6%	수기공모전	3,944,800
							정기회의	724,300
		연대활동비		9,660,000	9,048,800	93.7%		
			한국의료복지사협연합	6,000,000	5,098,800	85.0%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	0	0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840,000	1,140,000	135.7%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240,000	330,000	137.5%		
			강원사회적경제연대회의	1,200,000	1,200,000	100.0%		
			한국재택의료협회	840,000	840,000	100.0%		
			기타 협회비	540,000	440,000	81.5%	빈의자의사회	200,000
							문화의거리상인회	240,000
	예비비			0	0			
5.영업이익				-27,903,000	-92,059,964	329.9%		
6.영업외수익				70,773,000	101,263,531	143.1%		
	외부사업수입(조직활동비)			36,400,000	29,639,201	81.4%		
		통합돌봄사업지원금		0	0			
		농촌건강지원사업비		36,400,000	29,639,201	81.4%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		0	0			
	기타수입			34,373,000	71,624,330	208.4%		
		이자 및 배당금수익		5,373,000	5,070,190	94.4%	정기예탁금이자	4,326,630
							사회적예탁금이자	0
							정기적금이자	533,000
							보통예금이자	169,026
							배당금	41,534
		유형자산처분이익		0	0			
		전기오류수정이익		0	0			
		후원금		8,000,000	21,326,324	266.6%	모두웰후원	15,699,324
							보탬비후원	355,000
							일반후원	5,272,000
		각종 지원금		19,000,000	21,624,180	113.8%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	5,400,000	4,050,000	75.0%		

장	관	항	목	2025년 예산액	2025년 집행액	집행률	집행 내역
			고용안정장려금	13,600,000	14,574,180	107.2%	육아휴직사업주지원 10,974,18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600,000
			기타 지원금		3,000,000		Co-Up홍보·마케팅사업 2,000,000 신협상호협력사업지원 1,000,000
		잡이익		2,000,000	23,603,636	1180.2%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 20,000,000 고혈압적정성평가등 1,600,000 자활근로참여자건강상담 1,200,000 기타각종할인등 803,696
7.영업외비용				42,870,000	42,029,442	98.0%	
	외부사업지출(조직활동비)			36,400,000	29,639,201	81.4%	
		통합돌봄사업지원금		0	0		
		농촌건강지원사업비		36,400,000	29,639,201	81.4%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		0	0		
	기타지출			6,470,000	12,390,241	191.5%	
		이자비용		970,000	1,125,222	116.0%	2023 강원상승(SE)융자 964,127 2025강원상승(SE)융자 161,095
		기부금		2,000,000	2,599,950	130.0%	
		지역복지사업비		3,500,000	8,615,090	246.1%	빈의자의사회 2,359,470 개인후원(김정대) 952,700 모두웰후원 2,192,400 각종진료비지원등 3,013,420
		유형자산처분손실		0	49,979		
		잡손실		0	0		
8.법인세차감전이익				0	-32,825,875	#DIV/0!	
9.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0	131,033,991		
10.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0	0		
11.법인세등				0	0		
12.당기순이익				0	98,208,116	#DIV/0!	

재 무 상 태 표

제 24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23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24(당)기		제23(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Ⅰ. 유 동 자 산		**602,625,166**		**613,485,453**
(1) 당 좌 자 산		**566,361,243**		**584,603,276**
보 통 예 금		205,687,317		255,163,690
정 기 예 . 적 금		172,500,000		134,000,000
외 상 매 출 금	182,380,911		188,125,349	
대 손 충 당 금	1,823,809	180,557,102	1,881,253	186,244,096
미 수 금		1,977,212		8,166,490
선 급 금		5,639,612		1,029,000
(2) 재 고 자 산		**36,263,923**		**28,882,177**
상 품		36,263,923		28,882,177
Ⅱ. 비 유 동 자 산		**107,143,872**		**91,022,653**
(1) 투 자 자 산		**12,839,102**		**12,597,568**
장 기 성 예 금		4,200,000		3,000,000
특 정 현 금 과 예 금		8,639,102		9,597,568
(2) 유 형 자 산		**63,304,770**		**67,425,085**
구 축 물	31,856,000		21,021,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8,658,283	23,197,717	3,731,750	17,289,250
차 량 운 반 구	24,473,000		24,473,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1,154,495	3,318,505	18,428,368	6,044,632
비 품	34,132,450		29,572,31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1,825,562	12,306,888	15,806,554	13,765,756
의 료 기 기	97,872,880		82,406,88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67,712,820		52,081,433	
국 고 보조금-의료기기	5,678,400	24,481,660	0	30,325,447
(3) 무 형 자 산		**0**		**0**
전 기 공 급 시 설 이 용 권		0		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31,000,000**		**11,000,000**
임 차 보 증 금		30,000,000		10,000,000
기 타 보 증 금		900,000		900,000
전 신 전 화 가 입 권		100,000		100,000
자 산 총 계		**709,769,038**		**704,508,106**
부 채				
Ⅰ. 유 동 부 채		**229,104,286**		**109,643,994**
외 상 매 입 금		14,289,990		24,744,992
미 지 급 금		186,066,614		61,168,379
예 수 금		16,784,640		9,678,501

재 무 상 태 표

제 24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23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24(당)기 금 액		제23(전)기 금 액	
선 수 금		11,963,042		14,052,122
미 지 급 세 금		0		0
Ⅱ. 비 유 동 부 채		**291,558,652**		**366,695,188**
장 기 차 입 금		94,463,852		38,566,397
고 유 목 적 사 업준비금		197,094,800		328,128,791
부 채 총 계		**520,662,938**		**476,339,182**
자 본				
Ⅰ. 자 본 금		**284,046,874**		**271,956,874**
출 자 금		284,046,874		271,956,874
Ⅱ. 자 본 잉 여 금		**0**		**0**
Ⅲ. 자 본 조 정		**0**		**0**
Ⅳ. 기 타 포 괄 손 익누계액		**0**		**0**
Ⅴ. 결 손 금		**94,940,774**		**43,787,950**
미 처 리 결 손 금		94,940,774		43,787,950
(당 기 순 이 익)				
당기 : 98,208,116 원				
전기 : 61,040,494 원				
자 본 총 계		**189,106,100**		**228,168,92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709,769,038**		**704,508,106**

손 익 계 산 서

제 24(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23(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24 (당)기		제23 (전)기	
	금 액		금 액	
Ⅰ.매 출 액		2,055,678,090		1,865,351,980
밝 음 의 원 매 출	411,347,410		762,395,220	
가 정 간 호 매 출	1,079,400,620		911,810,830	
재 택 의 료 매 출	447,796,270		0	
재 가 방 문 요양매출	109,603,790		191,145,930	
교 육 비 수 입 금	7,530,000		0	
Ⅱ.매 출 원 가		159,280,043		145,736,639
상 품 매 출 원 가		159,280,043		145,736,639
기 초 상 품 재 고 액	28,882,177		20,369,078	
당 기 상 품 매 입 액	166,661,789		154,249,738	
기 말 상 품 재 고 액	36,263,923		28,882,177	
Ⅲ.매 출 총 이 익		1,896,398,047		1,719,615,341
Ⅳ.판 매 비 와 관 리 비		1,988,458,011		1,875,218,720
임 원 급 여	4,850,000		30,000,000	
직 원 급 여	1,381,534,480		1,271,920,080	
상 여 금	13,600,000		19,000,000	
퇴 직 급 여	133,884,610		125,052,070	
복 리 후 생 비	139,251,675		128,119,017	
여 비 교 통 비	3,620,881		7,877,370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6,196,100		5,970,230	
통 신 비	4,517,510		6,165,680	
수 도 광 열 비	7,275,853		8,668,324	
세 금 과 공 과 금	278,750		447,310	
감 가 상 각 비	29,186,436		33,929,834	
지 급 임 차 료	6,126,500		9,085,780	
수 선 비	0		386,000	
보 험 료	4,004,320		5,346,250	
차 량 유 지 비	35,647,983		33,818,188	
운 반 비	2,506,600		2,361,060	
교 육 훈 련 비	12,922,230		1,201,000	
도 서 인 쇄 비	977,500		1,803,000	
회 의 비	0		4,185,110	
소 모 품 비	13,510,242		21,113,950	
지 급 수 수 료	24,948,306		34,015,439	

손 익 계 산 서

제 24(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23(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24 (당)기		제23 (전)기	
	금 액		금 액	
광 고 선 전 비	9,872,500		5,766,250	
대 손 상 각 비	-57,444		18,967	
건 물 관 리 비	4,970,966		4,659,952	
무형고정자산상각	0		0	
잡 비	223,013		88,224	
조 합 사 업 비	54,287,140		26,065,220	
양 방 의 약 품 비	0		0	
양방의료소모품비	61,284,584		53,174,987	
외 주 용 역 비	33,037,276		34,979,428	
Ⅴ.영 업 손 실		**92,059,964**		**155,603,379**
Ⅵ.영 업 외 수 익		**232,297,522**		**554,304,660**
이 자 수 익	5,028,656		2,651,512	
배 당 금 수 익	41,534		45,557	
전기오류수정이익	0		0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131,033,991		199,271,650	
각 종 보 조 금	29,639,201		316,296,215	
후 원 금	21,326,324		12,179,000	
각 종 지 원 금	21,624,180		19,450,000	
잡 이 익	23,603,636		4,410,726	
Ⅶ.영 업 외 비 용		**42,029,442**		**337,660,787**
이 자 비 용	1,125,222		1,371,957	
기 부 금	2,599,950		4,350,000	
지역복지사업비	8,615,090		14,232,5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0		0	
유형자산처분손실	49,979		593,005	
각종보조금비용	29,639,201		317,113,315	
Ⅷ.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98,208,116**		**61,040,494**
Ⅸ.법 인 세 등		**0**		**0**
법 인 세 등	0		0	
Ⅹ.당 기 순 이 익		**98,208,116**		**61,040,494**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24(당)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부터 제 23(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부터

처분예정일 2026년 03월 12일부터 처분확정일 2025년 03월 13일부터

회사명 :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단위 : 원)

과목	제24 (당)기		제23 (전)기	
	금 액		금 액	
Ⅰ. 미처리결손금		94,940,774		43,787,950
1.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43,787,950		104,828,444	
2.회계변경의누적효과	0		0	
3.전기오류수정이익	0		0	
4.전기오류수정손실	149,360,940		0	
5.중간배당금	0		0	
6.당기순이익	98,208,116		61,040,494	
Ⅱ.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0		0
1.	0		0	
2.	0		0	
합계		-94,940,774		-43,787,950
Ⅱ. 결손금처리액		0		0
1.임의적립금이입액	0		0	
2.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0		0	
3.이익준비금이입액	0		0	
4.재평가적립금이입액	0		0	
5.자본준비금이입액	0		0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0		0
1.이익준비금	0		0	
2.기업합리화적립금	0		0	
3.배당금	0		0	
가.현금배당	0		0	
나.주식배당	0		0	
4.사업확장적립금	0		0	
5.감채적립금	0		0	
6.배당평균적립금	0		0	
Ⅳ.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94,940,774		43,787,950

■ 25년 주요 활동

1. 조합(사무국)

- 1월 2일 조합 시무식(착한삼계탕)
- 1월 6일 ~ 10일 조합 부서별 미팅(신승훈 전무)
- 1월 8일 원주밝음신협 미팅(조합원 활동 사업 관련) : 신승훈, 조주희
- 1월 17일 2024년 강원의료사협 평가 회의
- 1월 23일 원주지역자활센터 업무협약 체결(자활근로참여주민의 건강관리 및 증진)
- 2월 3일 2025년 사무국 사업 계획 회의
- 2월 5일 원장단 회의
- 2월 12일 제202차 이사회
- 2월 13일 조합 종합감사 실시 : 장동성, 김달현 감사
- 2월 20일 직원 역량강화교육(13명) - 뭘 해도 행복한 사람과 불만인 사람의 말버릇
- 2월 28일 홍윤숙 간호조무사 송별회(착한삼계탕)
- 3월 4일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 공고
- 3월 13일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
- 3월 21일 건물 내·외부 게시판 문구 수정
 (재가장기요양기관->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 3월 26일 원주밝음신협 미팅(조합원 활동 사업 관련) : 신승훈, 조주희
- 3월 28일 최효심 이사 미팅(치매예방교실, 따뜻한 자기돌봄 강좌 관련) :
 신승훈, 조주희
- 4월 1일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미팅(PTC 따뜻한 자기돌봄 강좌 관련) :
 신승훈, 조주희
- 4월 2일 3차 노사협의회 회의
- 4월 14일 원주한살림, 원주생협 협업 실무자 회의 : 신승훈, 조주희
- 4월 16일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미팅(원주시청 경로복지과)
- 4월 16일 원장단 회의
- 4월 17일 직원 역량강화교육(12명) - 돌봄
- 4월 21일 KBS 라디오 인터뷰(1인가구 요리교실 '착하다쿡' 관련)
- 4월 22일 강원SE상승자금 모니터링(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 4월 22일 제202차 이사회
- 4월 26일 온기동행 대표협의체 간담회 : 이광희, 신승훈
- 4월 30일 KBS 라디오 인터뷰(돌봄에세이 공모전 관련)
- 4월 30일 원주시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수요처 간담회 참석 : 조주희
- 5월 7일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사회적처방 프로젝트 업무협약식 참석 :
 이사장, 신승훈

- 5월 13일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 약정 체결(휴대용 초음파) 원주시청 경제진흥과
- 5월 15일 일과사랑 황용기 센터장님 미팅(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 신승훈, 염은경)
- 5월 17일 무위당 장일순 묘소 참배(이광희, 박준영, 신승훈)
- 5월 26일 생성형 AI 마케팅 활용 및 스마트 돌봄 사례 교육 : 신승훈, 조주희
- 6월 4일 원주밝음신협 미팅(어부바 사업 관련) : 신승훈, 조주희
- 6월 5일 ~ 8일 사이타마의료생협 연수
 (원장단+재택의료센터+가정간호센터+사무국+경영진 11명)
 이광희, 박준영, 곽병은, 임동란, 공영훈, 김은영, 박혜진, 염은경, 안의현, 신승훈, 조주희, 천혜란
- 6월 9일 한겨레 신문 취재 동행 : 조주희
- 6월 19일 직원 역량강화교육(13명) - 협동조합 경영에 대한 이해, 결핵예방교육
- 6월 25일~26일 대의원 간담회(38명) : 박준영, 신승훈
- 7월 1일 의사록 공증면제 추천 신청서 제출(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실)
- 7월 9일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관련 미팅 : 조주희, 천혜란
- 7월 15일 원장단 회의
- 7월 17일~18일 건강보험공단 코로나 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자율시정
- 7월 27일 제204차 이사회
- 8월 8일 사이타마 자체 연수보고회 : 연수 참여자 12명
- 8월 14일 찾아가는 밝음건강강좌 운영
 (구강교육,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용자 대상 30명)
- 8월 15일~16일 임직원 야유회(영월 동강 일원, 임직원 17명)
- 8월 19일 건강문자 발송 및 SNS 게시(독감 관련)
- 8월 26일 상반기 감사 실시(장동성 감사, 김달현 감사)
- 8월 27일 건강식사회(15명 참석)
- 9월 10일 원장단 회의
- 9월 11일 직원 역량강화교육(9명) - 의료사업부의 변화요소와 향후 운영방향
- 9월 13일 박준영 부이사장(사회적경제활성화 유공 포상, 원주시장상)
- 9월 16일 조합 사무국 이전 및 조합원 활동공간 “마중” 임시 운영(중앙로 80, 3층)
- 9월 17일 강창희 원장님 송별회
- 9월 25일 제206차 이사회
- 10월 2일 풍물 5일장, 조합 재택의료 홍보 활동 진행
- 10월 21일 ~ 24일 치바 바람의 마을 연수 참여
 (박준영 부이사장, 신승훈 전무, 이윤승 이사)
- 10월 24일 재택의료서비스 승강기 광고 진행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Co-Up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 10월 24일~25일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연계 직원 힐링 - 뮤지엄산 12명
 : 염은경, 장원주, 이선영, 신현경, 조주희, 신옥경, 김현경, 김은영, 박혜진, 김은화, 홍윤숙, 안의현
- 10월 27일 원주한살림, 원주생협 협업 실무자 회의 : 조주희
- 10월 30일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조합 방문(15명)
- 10월 30일 외래재택실무회의(외래, 재택, 사무국)
- 11월 11일 창립23주년 기획 포럼 진행 -초고령사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47명)
- 11월 14일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Co-Up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홍보 컨설팅 교육 참석(줌) : 조주희
- 11월 24일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원주로컬트립 with AI' 참석 : 조주희
- 11월 26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발표(PT, 원주시청) : 신승훈, 조주희
- 11월 27일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Co-Up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주희
- 11월 10일(월) ~ 12월 5일(금) : 대의원 소통의 날 추진(51명 참석)
- 12월 11일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사업(G케어매니저)' 관련 미팅(원주시청 경로복지과) : 조주희, 안선희
- 12월 12일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사업(G케어매니저)' 대상자 관련 미팅
 : 공영훈, 염은경, 안의현, 장원주, 이선영, 조주희, 안선희
- 12월 16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및 평가 설명회 참석 : 조주희, 안선희
- 12월 17일 사랑나눔 휠체어 기증식(3대, 3가정) : 박준영, 천혜란, 조주희
- 12월 23일 시흥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방문(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 천혜란, 조주희, 안선희

2. 밝음의원(가정간호센터)

- 2월 13일 2월 가정간호 월례회의

참석자 : 공영훈, 신승훈, 신옥경, 김수진, 박찬임, 박혜진, 김은화, 도경숙, 변선희(9명)

- 2월 28일 홍윤숙 간호조무사(대체인력) 업무 종료
- 3월 4일 김진숙 간호조무사(육아휴직) 복직
- 4월 10일 4월 가정간호 월례회의

참석자 : 공영훈, 신옥경, 김수진, 박찬임, 박혜진, 김은화, 도경숙, 변선희(8명)

- 6월 12일 6월 가정간호 월례회의

참석자 : 공영훈, 신옥경, 박혜진, 김은화, 도경숙, 변선희(6명)

- 7월 14일 홍윤숙 가정간호매니저 입사
- 7월 31일 변선희 가정간호 매니저 퇴사
- 8월 6일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건강관리 교육(공영훈 원장)
- 9월 11일 가정간호월례회의

참석자 : 공영훈, 박준영, 신승훈, 신옥경, 염은경, 김수진, 박찬임, 박혜진, 김은화, 도경숙, 홍윤숙(11명)

- 9월 15일 김준철 원장님(가정의학과, 외래 3일, 재택 2일) 입사
- 9월 22일 김진숙 간호조무사 육아휴직
- 9월 23일 건강검진 5주기 현장점검 실시
- 10월 1일 이혜지 간호조무사(대체인력) 입사
- 10월 15일 노인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무료 접종 시작
- 11월 13일 가정간호월례회의

참석자 : 공영훈, 김준철, 신옥경, 김수진, 박찬임, 박혜진, 김은화, 도경숙, 홍윤숙(9명)

- 11월 27일 외래재택실무회의 : 공영훈, 김준철, 신승훈, 신옥경, 염은경

3. 밝음재택의료센터

- 재택의료팀 실무회의 :1월 9일, 2월 26일, 3월31일, 4월 30일, 6월 19일, 7월 30일
- 2월 11일 앙평의료사협 조합 견학(재택의료센터 사업 관련)
- 2월 12일 평창의료원 조합 견학(재택의료센터 사업 관련)
- 3월 11일 읍면동 복지 담당자 대상(재택의료센터 설명회) : 신승훈, 염은경
- 3월 12일 공단 의료이용개발부 3팀 미팅(장주사 사업 관련 자문) : 염은경
- 3월 26일 돌봄통합지원 연계관리자 교육 강의(재택의료 센터 관련) : 염은경
- 3월 28일 건강지킴이 건강교육 강의(횡성 건강반장) : 염은경
- 4월 21일, 24일, 25일 원주지역자활센터 건강관리사업 : 염은경, 안의현
- 5월 15일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안내(일과 사랑 보호작업장): 신승훈, 염은경
- 6월 10일 기독병원 진료협력팀 미팅(원내 홍보물 부착):신승훈, 염은경
- 6월 11일 우리동네 30분 의원 방문(정혜진, 김갑오 미팅): 신승훈, 염은경
- 6월 17일 <2025 전문화 교육-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시행 배경 및 향후 과제>
 : 신승훈, 염은경, 천혜란, 김선기, 장동성
- 6월 23일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간담회:
 천사작업장,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7월 11일: 강원 돌봄통합지원 정책포럼 발표:염은경
- 7월 15일, 16일 :강원대 의대생 실습(김희정, 이한비)
- 8월 25일, 26일 :재택의료시범사업 관련 실습 ,강릉의료원 (2명) 영월 의료원 (5명)
- 9월 17일 :공단 건강지원사업실,의료이용지원부 2팀-다제약물관련 미팅(염)
- 9월 22일 :자원연계 역량강화 포럼 참석(염은경, 안의현)
- 9월 24일: 원주노인종합복지관 생활지원선생님 재택 관련 홍보 (염은경)
- 9월 26일 :공단 인재개발 교육(염은경)
- 10월 2일 :보건소 의뢰대상자 사례회의(염은경)
- 10월 24일 :장애인 인권 영화제 장애인주치의 홍보 부스 운영(염은경)

- 10월 24일 : 직원 힐링 프로그램 참석 (염은경, 안의현,장원주, 이선영)
- 11월 17일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건강 교육 및 조합 홍보 (염은경)
- 11월 20일:건보공단건강지원사업실 다제약물시범사업 관련 미팅 (염은경)
- 11월 26일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조합 설명회 (염은경)
- 11월 28일 케어봄 미팅
- 원주의료원 공공보건 협의체 (염은경)
- 12월 10일 갈거리 협동조합 어르신 건강교육(염은경)
- 12월12일 원주포용사회경제포럼 (염은경)
- 12월 15일 재가의료시범사업 협의체(염은경)
- 12월 30일 사회적처방 관련 밥상공동체 미팅 (염은경)

4.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 1월 14일 요양보호사 직무만족도 조사결과보고
- 1월 14일 이용대상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
- 1월 23일 정기 월례회의
- 1월 23일 직원교육 (급여제공지침 종사자 윤리지침)
- 2월 20일 1분기 사례회의 실시
- 2월 27일 2025년 진행 업무사항 안내(직원 건강검진, 법정의무교육, 보수교육)
- 2월 27일 정기 월례회의
- 2월 27일 직원교육 (급여제공지침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 3월 12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석(유진영)
- 3월 27일 정기 월례회의
- 4월 17일 일상돌봄서비스 회의 참석(유진영)
- 4월 24일 정기 월례회의
- 5월 21일 ~ 26일 연차 휴가(유진영 사회복지사)
- 5월 29일 정기 월례회의
- 6월 18일 운영실태 지도점검(원주시청 경로복지과)
- 6월 19일 정기 월례회의
- 6월 26일 포괄 양도양수 관련 미팅(패밀리재가방문요양센터)
- 7월 14일 폐원 서류 접수(원주시청 경로복지과)
- 7월 31일 폐원 확정

5. 의료복지 사각지대 돌봄

① 농촌 및 시내 경계지역 건강지원사업(NH투자증권)

- 건강반장집담회 진행 : 4월 22일, 5월 22일, 6월 26일, 7월 24일, 8월 21일, 9월 25일, 10월 22일

- 1월 22일 방문재활 초기 사정지 및 대상자 회의 : 양승완, 염은경
- 사업 배분신청서 제출 : 4월 25일
- 사업비 입금 : 5월 9일
- 방문재활 및 방문간호 대상자 초기상담 : 5월 12일
-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사례회의 : 6월 19일, 7월 1일, 7월 22일, 9월 16일, 10월 31일, 11월 10일

② 빈곤층 건강 지원 협력(원주시의사회 빈의자)
- 빈의자 연계 지원 대상자 : 39명
- 의뢰기관 현황 : 원주의료원(3명), 최영권치과(4명), 연세안과(3명), 이규남 신경정신과(15명), 연세플러스비뇨기과(1명), 김남구피부비뇨기과(3명), 미래산부인과(1명), 박규래 정형외과(7명), 최경훈내과(1명), 연세민내과(1명)

③ 모두웰 후원회
- 음식 섭취가 어려운 이웃에게 균형영양식품(유동식)을 통한 먹거리 돌봄 실현으로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운영.
- 후원현황 : 11명
- 후원지역 : 소초면(1명), 태장동(1명), 우산동(1명), 명륜동(4명), 봉산동(3명), 호저면(1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후원(명)	2	2	2	3	6	13	4	5	7	7	9	11

6. 조합사업(조합원 활동 등)
- 1월 6일 신규 건강반장교육(1명)
- 1월 22일 1월 건강반장집담회 2회(26명)
- 2월 11일 신규 건강반장교육(1명)
- 2월 19일 조합원 건강활동모임 “똑똑건강반” 오리엔테이션(3팀, 10명)
- 2월 21일 2월 건강반장집담회(24명)
- 2월 26일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노노케어(돌봄) 대상자 연계(1명)
- 3월 1일 조합원 건강활동모임 “똑똑건강반” 활동 시작(3팀, 18명)
- 3월 19일 조합원 건강활동모임 “똑똑건강반” 오리엔테이션(1팀, 3명)
- 3월 20일 3월 건강반장집담회(27명)
- 4월 7일 신규조합원 환영회 2회(8명)
- 4월 9일 건강타이치 강좌 1회기(6명)
- 4월 16일 건강타이치 강좌 2회기(7명)

- 4월 22일 4월 건강반장 역량강화교육 및 활동물품지원(25명)
- 4월 23일 건강타이치 강좌 3회기(8명)
- 4월 30일 건강타이치 강좌 4회기(7명)
- 5월 7일 건강타이치 강좌 5회기(7명)
- 5월 14일 PTC 따뜻한 자기돌봄 강좌 1회기(13명)
- 5월 19일 1인가구 요리교실 착하다쿡 1회기(5명)
- 5월 21일 PTC 따뜻한 자기돌봄 강좌 2회기(8명)
- 5월 22일 5월 건강반장집담회(25명)
- 5월 28일 PTC 따뜻한 자기돌봄 강좌 3회기(9명)
- 6월 4일 PTC 따뜻한 자기돌봄 강좌 4회기(11명)
- 6월 9일 1인가구 요리교실 착하다쿡 2회기(6명)
- 6월 9일 바르게 걷기(19명)
- 6월 11일 PTC 따뜻한 자기돌봄 강좌 5회기(8명)
- 6월 18일 PTC 따뜻한 자기돌봄 강좌 6회기 및 수료증 전달식(10명, 수료 10명)
- 6월 20일 (가칭)강원의료복지사협 산악회 첫모임
- 6월 24일 응급처치교육(협동조합 조합원 대상, 17명)
- 6월 25일 조합원 건강활동모임 “똑똑건강반” 1차 간담회(4팀, 10명)
- 6월 27일 6월 건강반장집담회(26명)
- 7월 1일「원주밝음신협×강원의료복지사협」치매예방교실 두뇌놀이터 1회기(49명)
- 7월 8일「원주밝음신협×강원의료복지사협」치매예방교실 두뇌놀이터 2회기(37명)
- 7월 15일「원주밝음신협×강원의료복지사협」치매예방교실 두뇌놀이터 3회기(33명)
- 7월 16일 하반기 강좌 관련 설문조사(조합원, 46명)
- 7월 21일 1인가구 요리교실 착하다쿡 3회기(7명)
- 7월 22일「원주밝음신협×강원의료복지사협」치매예방교실 두뇌놀이터 4회기(32명)
- 7월 24일 7월 건강반장집담회(26명)
- 7월 29일「원주밝음신협×강원의료복지사협」치매예방교실 두뇌놀이터 5회기(30명)
- 7월 31일 찾아가는 구강교육 1회차(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명)
- 8월 5일「원주밝음신협×강원의료복지사협」치매예방교실 두뇌놀이터 6회기(26명)
- 8월 12일「원주밝음신협×강원의료복지사협」치매예방교실 두뇌놀이터 7회기(32명)
- 8월 14일 찾아가는 구강교육 2회차(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명)
- 8월 18일 1인가구 요리교실 착하다쿡 4회기(5명)
- 8월 19일「원주밝음신협×강원의료복지사협」치매예방교실 두뇌놀이터 8회기(24명)
- 8월 21일 8월 건강반장집담회(24명)
- 8월 23일 강원의료복지사협 느림보산악회 모임(7명)
- 8월 26일「원주밝음신협×강원의료복지사협」치매예방교실 두뇌놀이터 9회기(24명)
- 8월 28일 찾아가는 구강교육 3회차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명)

- 9월 2일「원주밝음신협×강원의료복지사협」치매예방교실 두뇌놀이터 10회기(29명)
- 9월 4일 하루 10분, 내몸 살림(19명)
- 9월 13일 유엔지정 두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 기념 원주협동조합 걷기대회 참가(28명)
- 9월 15일 1인가구 요리교실 착하다쿡 5회기(3명)
- 9월 24일 조합원 건강활동모임 “똑똑건강반” 2차 간담회(3팀, 8명)
- 9월 25일 9월 건강반장 역량강화교육(26명)
- 9월 27일 제5기 대의원 단합대회(백운산 및 용수골, 24명 참석)
- 9월 30일 신규조합원 환영회 2회(10명)
- 10월 20일 1인가구 요리교실 착하다쿡 6회기(3명)
- 10월 22일 10월 건강반장집담회(26명)-기후위기대응스쿨
- 10월 25일 제31회 원주국제걷기대회 참가(9명)
- 11월 10일 1인가구 요리교실 착하다쿡 7회기(4명)
- 11월 18일 응급처치교육(협동조합 조합원 대상, 12명)
- 11월 18일 두레생협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자원봉사(2명)
- 11월 15일 느림보 산악회 11월 정기 산행(바람길숲, 8명)
- 11월 21일 김장김치배송 유료자원봉사(유료자원봉사자 1명, 총 대상자 23명)
- 11월 25일 11월 건강반장집담회(26명)
- 11월 30일 조합원 건강활동모임 “똑똑건강반” 활동 마감
- 12월 8일 1인가구 요리교실 착하다쿡 8회기(6명)
- 12월 12일 12월 건강반장집담회(26명)
- 12월 16일「원주밝음신협×강원의료복지사협」2025 노인건강돌봄지도사 양성과정 1회기(20명)
- 12월 17일「원주밝음신협×강원의료복지사협」2025 노인건강돌봄지도사 양성과정 2회기(20명)
- 12월 18일「원주밝음신협×강원의료복지사협」2025 노인건강돌봄지도사 양성과정 3회기(20명)
- 12월 19일「원주밝음신협×강원의료복지사협」2025 노인건강돌봄지도사 양성과정 4회기(20명)
- 12월 22일「원주밝음신협×강원의료복지사협」2025 노인건강돌봄지도사 양성과정 5회기(20명)
- 12월 23일「원주밝음신협×강원의료복지사협」2025 노인건강돌봄지도사 양성과정 6회기(20명)
- 12월 24일「원주밝음신협×강원의료복지사협」2025 노인건강돌봄지도사 자격증 시험(20명)

7. 공생추진위원회(노인공동생활가정)

- 위원현황 : 천혜란(위원장), 최효심(부위원장), 김은진, 정금낭, 김동필, 박준영, 서연남, 공영훈, 조일구, 신승훈
- 2월 5일(화) 5차 공생추진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
 (참석: 천혜란, 박준영, 최효심, 신승훈)
- 2월 25일(화) 6차 노인공동생활가정 장소 물색-노유자 시설관련
 (참석: 천혜란, 박준영, 신승훈, 조일구)
- 4월 8일(화) 7차 신규 위원 가입 논의: 김동필, 서연남

-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학습 기획
 (참석: 천혜란, 박준영, 신승훈, 최효심,조일구)
- 4월 10일 돌봄에세이 공모전 추진 회의 : 천혜란, 신승훈, 조주희
- 4월 21일 돌봄에세이 공모전 추진 회의 : 천혜란, 신승훈, 조주희
- 4월 29일(화) 8차 [학습] 노인공동생활가정 - 정금낭 대표
 (참석: 천혜란, 박준영, 최효심, 신승훈, 조일구, 서연남, 김동필, 정금낭)
- 5월 27일(화) 9차 노인공동생활가정 추진 개요 등 설명
 (참석: 천혜란, 박준영, 최효심, 신승훈, 조일구, 서연남, 김동필, 정금낭, 김은진)
- 6월 12일 돌봄에세이 공모전 시상식 추진 회의 : 천혜란, 신승훈, 조주희
- 6월 16일 돌봄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선정 발표
- 6월 19일 돌봄에세이 공모전 시상식(수상 7명, 참석 18명)
- 7월 18일(화) 10차 노인공동생활추진위원회
 ①역할 재정립, ②규정(안) 승인, ③부위원장 및 간사 선임
 (참석: 천혜란, 박준영, 최효심, 신승훈, 공영훈, 조일구, 서연남, 김동필, 김은진, 염은경)
- 7월 25일 돌봄 수기 모음집 편집 완료
- 7월 30일 돌봄 수기 모음집 '돌고 돌아 다시 봄'책 발간
- 8월 29일(화) 11차 [학습_천혜란] 지역밀착형 소규모다기능형거택개호시설
 (참석: 천혜란, 박준영, 최효심, 신승훈, 공영훈, 조일구, 서연남, 김은진)
- 9월 26일(화) 12차 [학습_최효심] 돌봄이란 무엇인가 - 여성이 멈추면 사회가 멈춘다
 (참석: 천혜란, 박준영, 최효심, 신승훈, 공영훈, 서연남, 김동필, 정금낭)
- 10월 31일(금) 13차 [학습_서연남] 커뮤니티케어란 무엇인가
 (참석: 천혜란, 최효심, 신승훈, 조일구, 서연남, 김동필, 김은진, 공영훈)
- 11월 21일(금) 14차 (1)대전민들레요양원 견학 보고, (2)공생추진위원회의 방향 모색
 (참석 : 박준영, 조일구, 신승훈, 서연남, 김은진, 공영훈, 김동필)
- 12월 19일(금) 15차 (1)[학습⑤] 사회적 처방의 국내외 사례 : 공영훈
 (2)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요양원 견학 보고
 (3)후보지 서칭

8.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2월 15일 연합회 총회 참석 : 신승훈
- 3월 21일 이사회 참석 : 이사장
- 6월 20일 연합회 사무행정위원회 회의 참석 : 조주희
- 6월 27일 경영위원회 참석(부산의료복지사협) : 신승훈
- 7월 12일 연합회 의사연수회 참석 : 공영훈
- 10월 28일 연합회 서울강원지부 회의 참석 : 신승훈
- 12월 15일 연합회 서울강원지부 송년회 참석 : 신승훈

9. (지역)연대 활동 및 기타

- 1월 8일 무위당사람들 신년 하례회 참석 : 박준영, 신승훈
- 1월 14일 지정면 유관단체 간담회 참석 : 신승훈
- 1월 22일 지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 : 신승훈
- 1월 31일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총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 참석 : 신승훈
- 2월 4일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참석 : 신승훈
- 2월 6일 지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 : 신승훈
- 2월 7일 한국재택의료협회 이사회 참석 : 박준영
- 2월 10일 원주시청 경제진흥과 방문(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 신승훈
- 2월 10일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2월 월례회의 참석
- 2월 11일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총회준비위원회 3차 회의 참석 : 신승훈
- 2월 17일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 참석 : 신승훈
- 3월 10일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총회 참석 : 신승훈
- 3월 20일 원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확분과 회의 참석 : 신승훈
- 3월 25일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총회 참석 : 박준영, 신승훈
- 4월 14일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4월 월례회의 참석 : 신승훈
- 6월 4일 원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획분과 회의 참석 : 신승훈
- 6월 13일 지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돼지주물럭 봉사 참석 : 신승훈
- 6월 13일 ~ 14일 원주시사회적기업워크샵 참석(피노키오숲, 신승훈)
- 6월 19일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통합돌봄회의 참석 : 신승훈
- 6월 24일 한 살림 40주년 기념식 참석 : 이광희, 박준영, 신승훈
- 6월 24일 온기동행 실무자 간담회 참석 : 조주희
- 7월 10일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의 참석 : 신승훈
- 8월 26일 지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 : 신승훈
- 8월 27일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원강수 시장님 면담 참석 : 신승훈
- 9월 19일 온기동행 '모두 온 영화제' 참석 : 조주희
- 9월 23일 원주시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봉산동) 회의 참석 : 신승훈
- 9월 29일 지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맞이 꾸러미 봉사 참여 : 신승훈
- 11월 7일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비전선포식 참석 : 신승훈
- 11월 10일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의 참석 : 신승훈
- 11월 12일 지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장김치 봉사 참석 : 신승훈
- 11월 19일 2025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참석 및 김장김치 전달 (LH원주권주거행복지원센터 25kg, 길터사회적협동조합 가정형 위(Wee)센터 25kg) : 조주희
- 12월 15일 2025 강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성과공유회 참석(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 조주희

- 12월 16일 원주시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 신승훈
- 12월 29일 지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떡만둣국 봉사 참석 : 신승훈

■ 2025년 원주시의사회 “빈의자”(빈곤층 의료지원 자원봉사 의사회) 지원 현황

※ 밝음의원 2025년 후원금 : 3,171,360원

※ 조합 밝음의원은 “빈의자” 초기 상담 창구로 “총무” 역할.

월	월인원(명)	지원금액(원)	비고
1	66명	713,460	
2	54명	731,500	
3	63명	1,378,530	
4	68명	2,589,430	
5	62명	621,590	
6	53명	570,550	*2025년 의뢰인원 : 39 명
7	61명	498,490	- 시청 및 읍면동 21 명
8	54명	353,600	- 유관기관 18 명
9	55명	644,000	
10	59명	1,512,000	
11	53명	2,454,850	
12	62명	415,000	
약제비		265,800	
총계	710명	12,748,800	

■ 원주시의사회 “빈의자” 연간 지원규모 및 현황

년도	실인원	지원금액
2014. 4월 ~	51명	11,652,620원
2015	75명	16,287,080원
2016	59명	9,673,130원
2017	32명	10,361,163원
2018	40명	12,739,050원
2019	39명	8,872,510원
2020	52명	10,629,830원
2021	47명	11,066,370원
2022	24명	6,586,990원
2023	39명	6,490,990원
2024	51명	17,019,450원
2025	39명	12,748,800원
총계	548명	134,127,983원

■ 의뢰기관 및 인원

- 의뢰기관 현황 : 원주의료원(3명), 최영권치과(4명), 연세안과(3명), 이규남 신경정신과(15명), 연세플러스비뇨기과(1명), 김남구피부비뇨기과(3명), 미래산부인과(1명), 박규래 정형외과(7명), 최경훈내과(1명), 연세민내과(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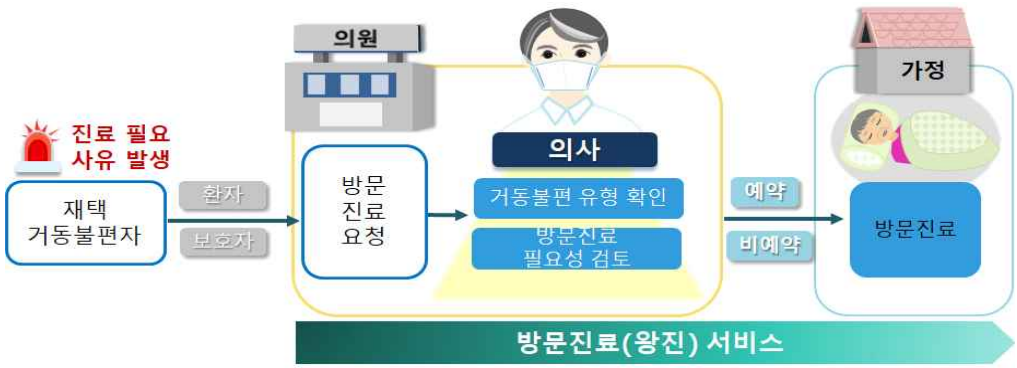
■ 원주시의사회 “빈의자” 회원 단체 현황(25년 말 기준)

구 분	내 용
종합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주의료원
병 원	원주우리병원
의 원	원주영상의학과의원, 이규남신경과의원, 홍성국신경과의원, 김남두피부비뇨기과의원, 미래산부인과의원, 연세플러스비뇨기과의원, 홍앤권이비인후과, 박규래정형외과의원, 백피부과의원, 미래산부인과의원, 우리들소아과의원, 도홍림이비인후과, 민내과, 최경훈내과, 창문외과, 좋은마음 신경정신과, 횡성중앙의원,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밝음의원**
치 과	부부치과, 최영권치과
안 과	연세안과
한 의 원	경희한의원, 모아한의원

2025 재택의료센터 활동 사업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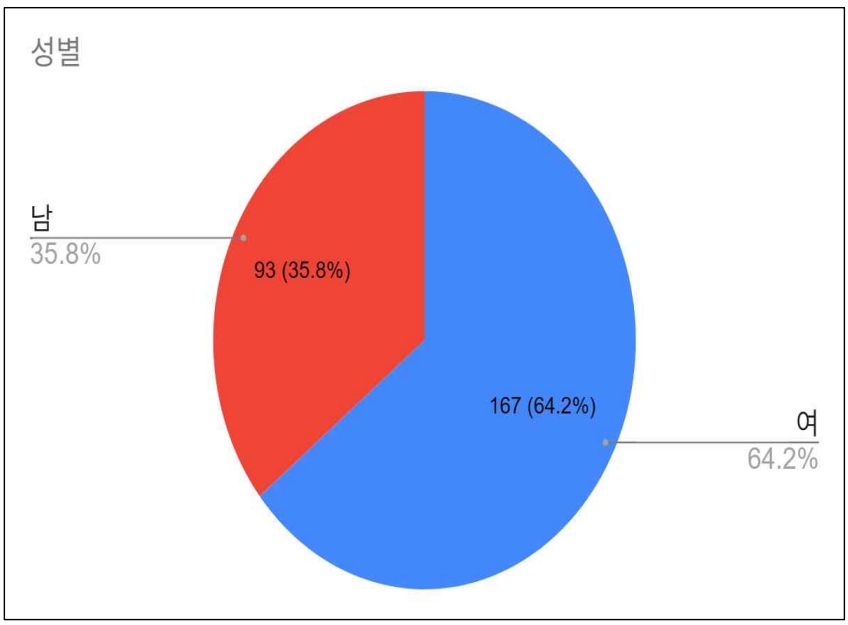
1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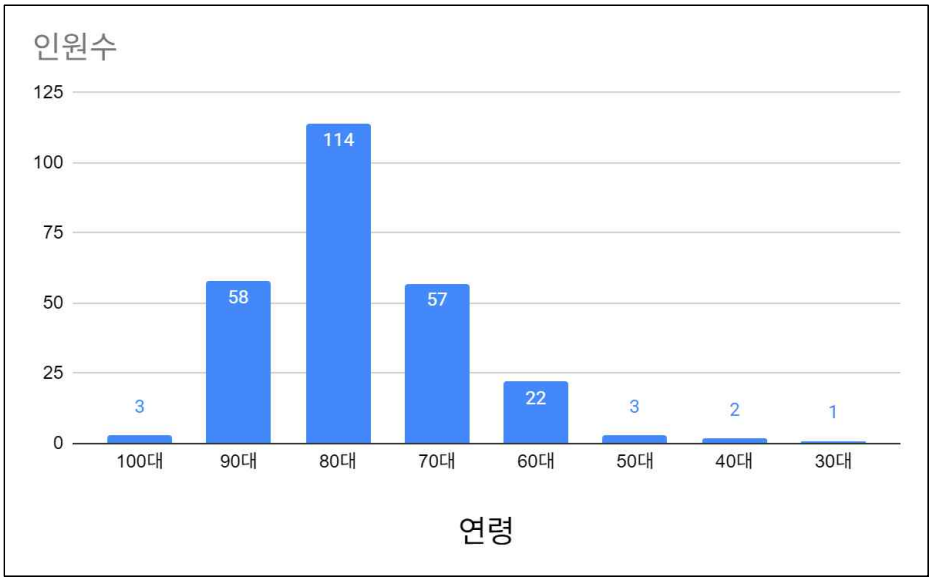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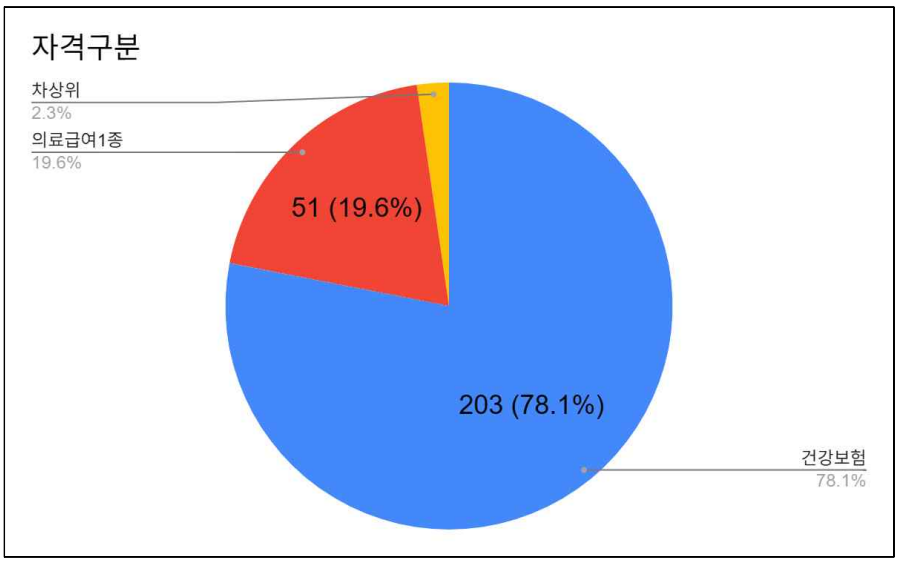
1)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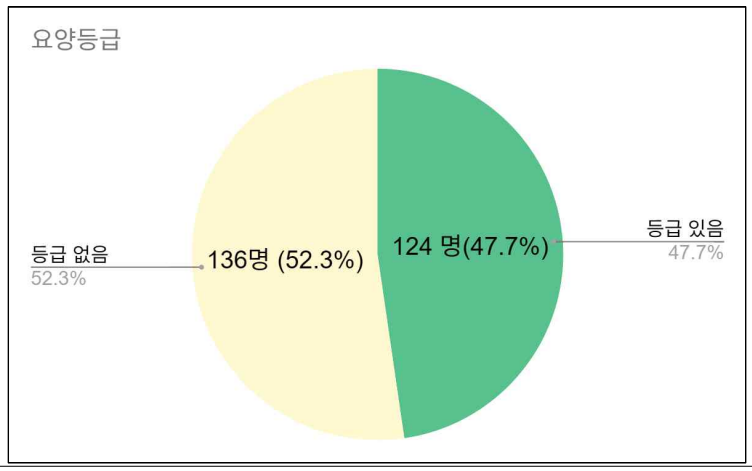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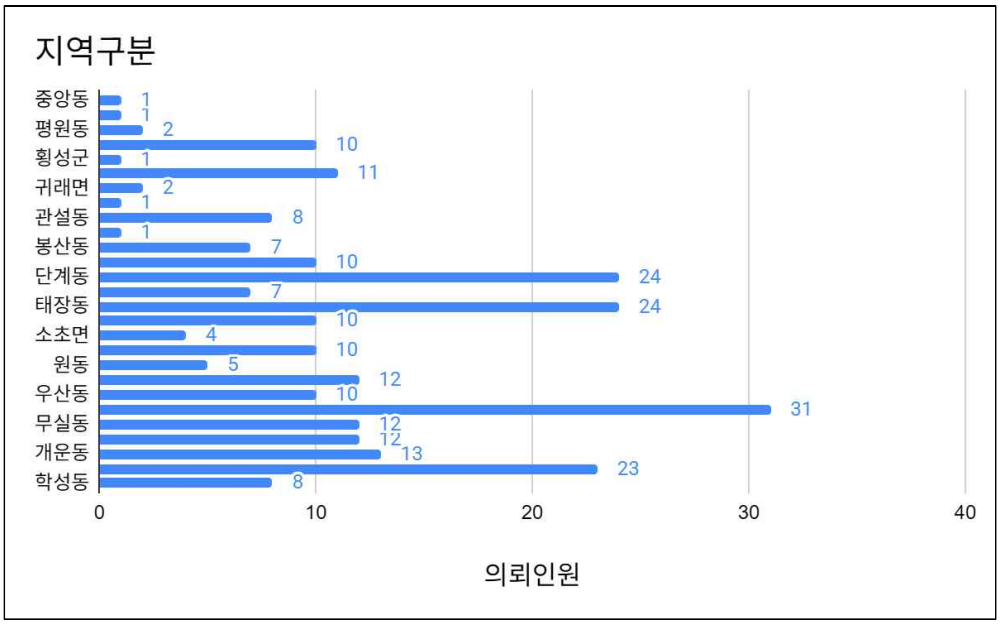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내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기관 소속 의사가 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운영시기	25년 1월 ~ 12월 (2019년 12월부터 참여 중)
사업대상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하여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 다만, 진료사고 방지 및 환자 안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시범기관에 1회 이상 내원 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초진 환자도 예외적으로 가능 **【대상자 유형(예시)】** ①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 수술직후 ③ 말기 질환 ④ 의료기기 등 부착(산소치료,인공호흡기 등) ⑤ 신경계 퇴행성 질환 ⑥ 욕창 및 궤양 ⑦ 정신과적 질환 ⑧ 인지장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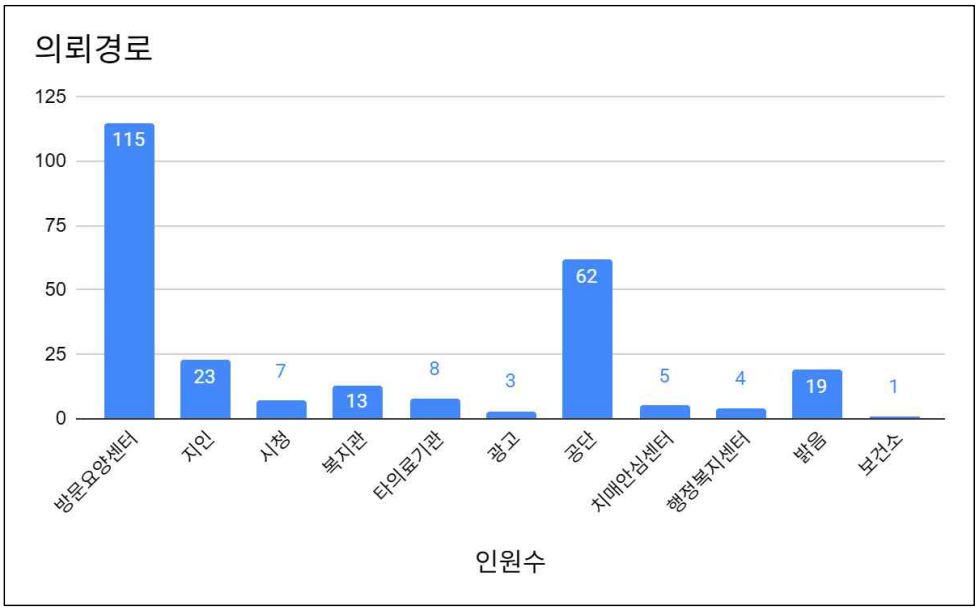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방문진료 세부 서비스	진찰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을 실시
	처방	구강섭취약, 연고, 좌약 등에 대한 처방
	질환관리	만성질환, 단순한 급성·아급성 질환 등에 대한 관리
	검사	혈압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이경 등을 활용한 기본검사 등
	의뢰	필요 시 적절한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의뢰
	교육상담	질병 상태 및 관리계획에 대한 환자·보호자 교육 실시
	기타	검체 채취,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등 ※ 환자의 필요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2) 사업수행 결과

구 분	내 용
참 여 자	260명(재택의료시범사업으로 정규 방문하는 대상자 제외)
방문건수	총 536건(재택의료시범사업으로 방문한 건수 제외)
성별비율	남성 93명 (35.8%) < 여성 167명 (64.2%) * 24년 272명: 남성 95명 (34.9%)< 여성 177명 (65.1%) 

연 령 별 인 원	80대(114명, 43.8%) > 90대(58명, 22.3%) > 70대(57명, 21.9%) > 60대(22명, 8.5%)>50대(3명, 1.2%) *24년 80대(127명) > 90대(53명) > 70대(48명) > 60대(29명) 
자격구분	건강보험(203명)>의료급여 1종(51명)>차상위(6명) * 24년 건강보험(198명)>의료급여 1종(64명)>차상위(6명) 

요양등급 유 무	없음: 136명 (52.3%) > 있음: 124명(47.7%) *24년 있음: 156명 (57.4%) > 없음: 116명(42.6%) 
지 역 별 인 원	단구동 >태장동,단계동> 개운동 *24년 태장동 >단구동 >단계동 >명륜동 

지역사회 및 조합연계	방문요양센터 (115명,44.2%)> 공단(62명,23.8%)> 지인(23명, 8.8%) *24년 방문요양센터: 91명(33.5%) > 건보공단: 85명 (31.3.%) 

□ 총평

[표1] 원주시 인구 및 노인인구 추이(2019~2025년) ('25. 12. 기준, 단위: 명)

총인구수	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363,194	40,595	17,454	16,696	21,567	24,806	22,222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26,286	27,407	30,679	31,6556	30,044	73,482

연도	인구 현황					노인인구 현황			사회판단 기준*
	총인구수	0~14세	15~64세	65~74세	75세~	전체노인	노인인구 /전체인구	75세이상 /노인인구	
2019	349,215	45,995	253,237	26,384	23,599	49,983	14.3%	47.2%	고령사회
2020	354,376	45,939	255,047	28,971	24,419	53,390	15.1%	45.7%	고령사회
2021	357,757	45,350	255,636	31,477	25,294	56,771	15.9%	44.6%	고령사회
2022	360,807	44,076	255,976	34,492	26,263	60,755	16.6%	43.2%	고령사회
2023	361,503	43,039	253,977	37,593	26,894	64,487	17.8%	41.7%	고령사회
2024	362,164	41,815	251,437	41,393	27,519	68,912	19.1%	39.9%	고령사회
2025	**363,194**	**40,595**	**249,117**	**45,469**	**28,013**	**73,482**	**20.2%**	**38.1%**	**초고령사회**

연령별 인구구성



초고령 사회 진입

40,595명 (11.18%) — 0~14세

249,117명 (68.59%) — 15~64세

73,482명 (20.23%) — 65세 이후

구분	인구현황			65세 이상	
	계	남	여	인구	비율(%)
전국	51,117,378	25,436,665	25,680,713	10,840,822	21.2
광역	1,508,500	758,575	749,925	404,489	26.8
원주시	363,194	179,880	183,314	73,482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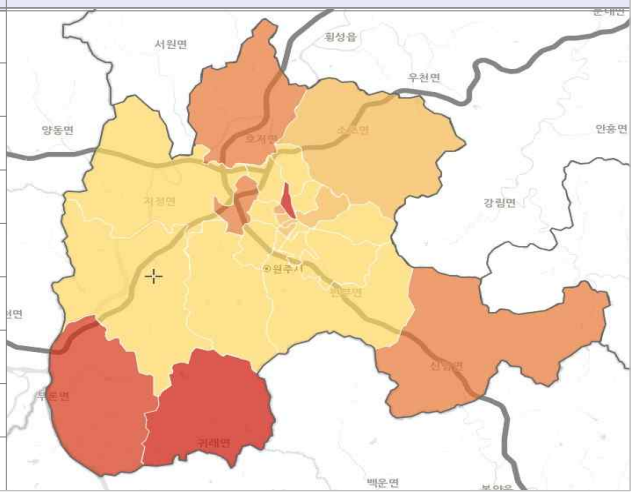
('25.12. 기준, 단위 : 명)

[표2] 원주시 장래인구 추계 (단위: 천명, %)

연도		2020	2023	2026	2030	2033	2035	2040
총인구		351.1	360.9	367.0	373.1	377.0	379.2	381.7
비율	유소년인구(0~14세)	45.5	42.7	38.8	35.1	33.9	34.3	36.6
	생산연령인구(15~64세)	254.0	255.2	250.8	244.4	237.6	230.9	212.4
	고령인구(65세 이상)	51.6	63.0	77.4	93.6	105.4	114.1	132.8



[표3] 원주시 노령화 지수

읍면동별 노령화 지수*						노령화 지수 분포도
원주시	181	신림면	1,765.3	학성동	824.5	
문막읍	338.9	시중심부		단계동	201.2	
소초면	839	중앙동	**2,236.4**	우산동	235.4	
호저면	1,307	원인동	562.9	태장1동	193.2	
지정면	46.2	개운동	398.2	태장2동	250.3	
부론면	**2,346.9**	명륜1동	502.6	봉산동	787.5	
귀래면	**1,898.2**	명륜2동	221.3	행구동	222.3	
흥업면	393	단구동	173.3	무실동	92.3	
판부면	274.8	일산동	476.8	반곡관설동	62	

* 유소년 인구 100명당 노령인구 수 / 출처: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https://sgis.kostat.go) ('25. 12. 기준)

[표4] 25년 12월 기준 수급권자 지역 비교표

구분	전체인구(명)	수급권자수(명)	수급권자 비율
읍·면(문막읍~신림면)	87,668	3,549	4.05%
동(중앙동~반곡관설동_	275,828	15,817	5.73%

[표5] 돌봄 수요 현황 기준 (기준: '25. 6. 단위: 명, 출처: 건강보험공단 지역진단 자료)

항목	값
원주시 총인구(건보공단 기준)	368,270
65세 이상 인구 / 비율	74,701 / 20.2%
장애등록(심한/심하지 않은)	7,598 / 11,943
치매환자수(65세 이상)	6,343
장기요양 인정자(65세 이상)	8,029
ㄴ 1~5등급	612 / 1,063 / 2,706 / 2,954 / 539
ㄴ 인지지원등급	155
장기요양 등급외(A/B)	414 / 350 (합 764)
노인맞춤돌봄 대상자(일반/중점)	3,310 (3,190 / 120)

[표6] 원주시 돌봄 관리대상자수 (가준:'25. 6. 단위: 명, 출처: 건강보험공단 지역진단 자료)

구분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장애인		
	합계	재가 급여자	퇴원 환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맞돌 중점군	고령 장애인	합계	심한 지체 장애인	심한 뇌병변 장애인
계	20,889	4,982	4,485	764	120	10,538	1,354	885	469

원주시는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약 20% 수준으로, 고령사회 구조가 뚜렷하게 고착화된 상태임.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4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13만 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역 내 의료·돌봄 수요는 장기적으로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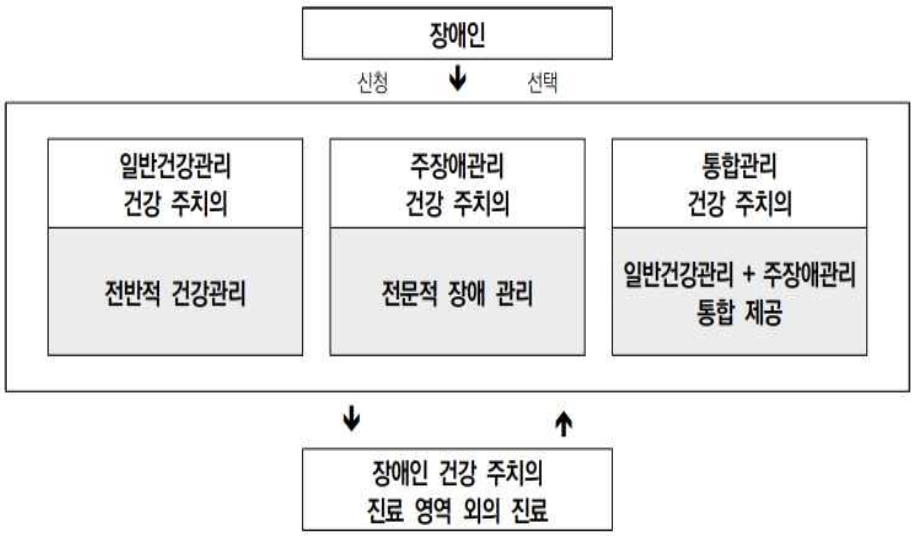
본원 방문진료 실적 분석 결과, 이용자의 대부분이 70~90대 고령층이었으며 특히 80대 이상이 핵심 대상군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방문진료가 초고령층 중심의 필수 의료서비스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음. 또한 건강보험 대상자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도 일정 비율을 보였고, 장기요양 등급 보유 여부 역시 '있음'과 '없음'이 유사하게 분포하여, 방문진료가 제도권 대상자뿐 아니라 제도 외·사각지대 고령층까지 포괄하는 특성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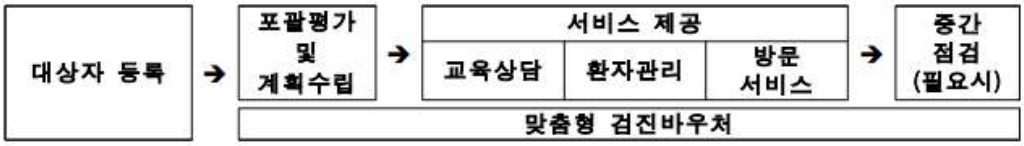
지역적 분석에서는 읍·면 지역(신림면, 부론면 등)의 고령화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방문진료 의뢰는 단구동·태장동 등 동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이 확인되었음. 이는 동 지역이 고령인구 절대 규모가 크고 의료·복지 자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의뢰가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연결되기 용이한 구조였기 때문으로 판단되었음. 반면 읍·면 지역은 고령화율이 높음에도 이동·거리·정보 접근성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잠재 수요가 충분히 표출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였음.

이에 따라 향후 방문진료 운영은 ① 고령화 수준이 매우 높은 읍·면 지역(잠재수요 권역)과 ② 고령·취약계층 절대 규모 및 연계 접근성이 높은 동 지역(실제 수요 집중 권역)을 구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의뢰-연계 장벽 완화를 위한 이동지원 체계 구축 및 권역 거점 중심의 연계망 강화가 필요하고, 동 지역은 수요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경로 표준화 및 방문요양센터·건강보험공단·치매안심센터 등과의 협업체계 고도화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를 통해 지역 간 형평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균형 있게 제고할 필요가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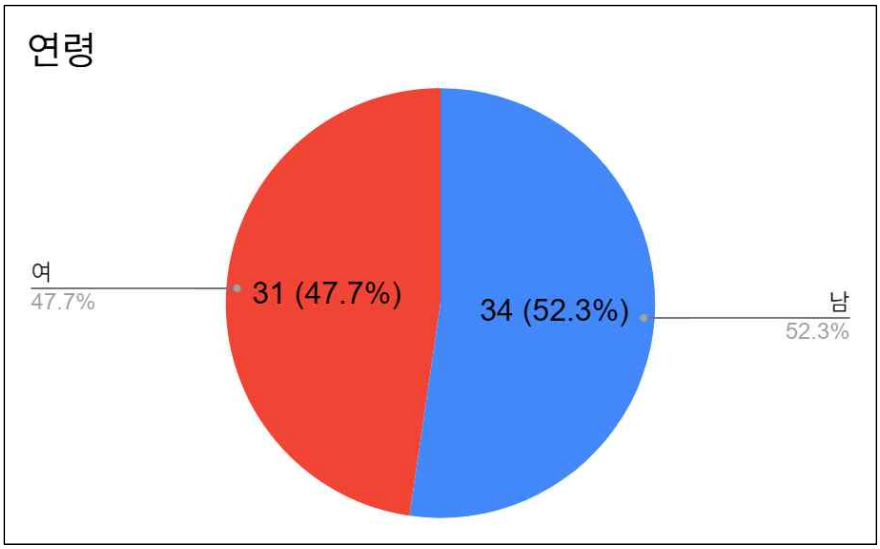
2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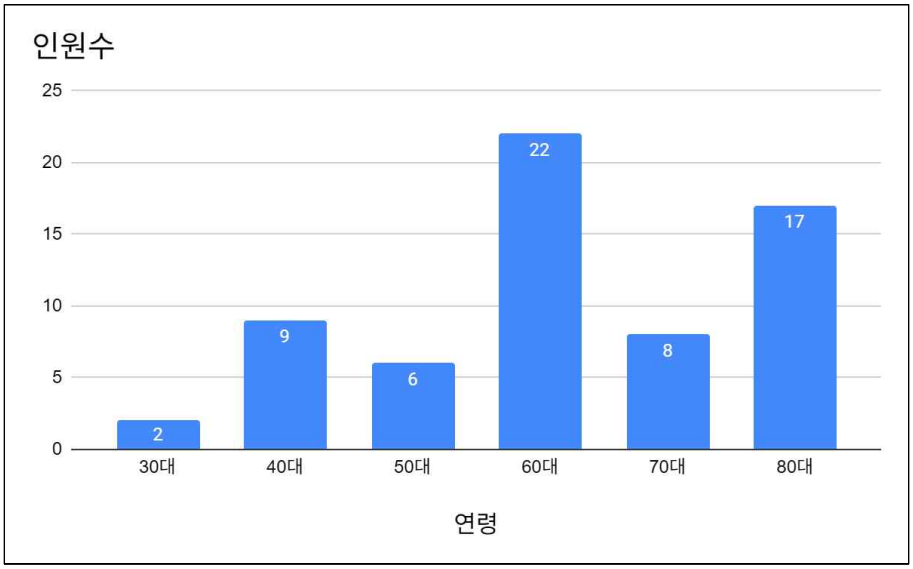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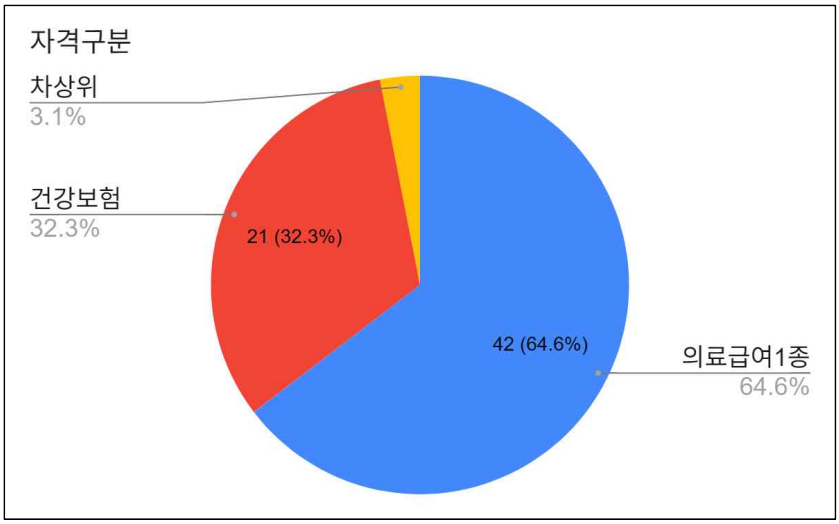
1)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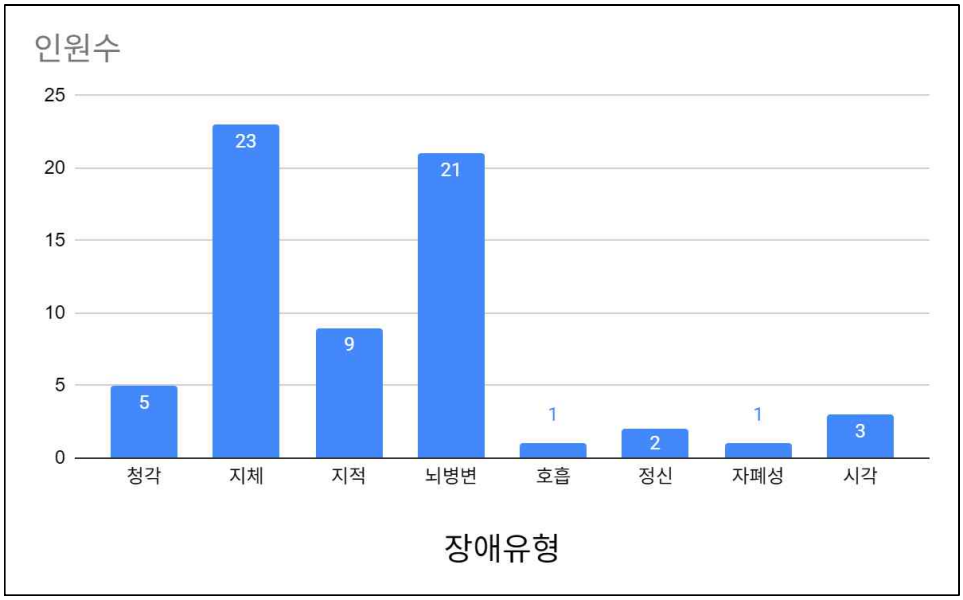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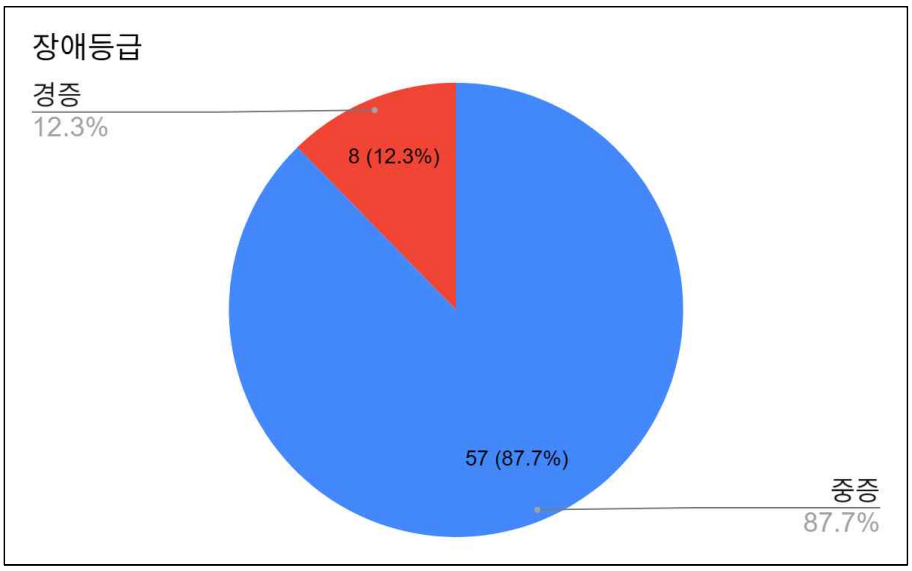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장 애 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td><td>장애인이 건강 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건강 주치의로 선택하여 전반적 건강관리(일반건강관리)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
※ 경증장애인은 일반건강관리만 참여 가능</td></tr>
<tr><td>운영시기</td><td>25년 1월~12월 (2018년 5월부터 참여, 4단계 진행중)</td></tr>
<tr><td>장 애 인
건강주치의
제도모형</td><td>
</td></tr>
<tr><td>4단계
시범사업
추가내용</td><td>
<table>
<tr><th>구분</th><th>변경 전 3단계)</th><th>변경 후 (4단계, '24.2.28~)</th></tr>
<tr><td>대상자 확대</td><td>주로 중증 장애인</td><td>중증장애인 + 경증장애인까지 확대</td></tr>
<tr><td>일반건강관리</td><td>중증 장애인 위주</td><td>경증 장애인도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가능</td></tr>
<tr><td>방문 서비스</td><td>제한적 제공</td><td>경증 장애인 대상 방문 진료/간호 서비스 신설
(연 4회)</td></tr>
<tr><td>방문 횟수</td><td>중증 연18회~24회</td><td>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방문진료+방문간호 포함)</td></tr>
</table>
</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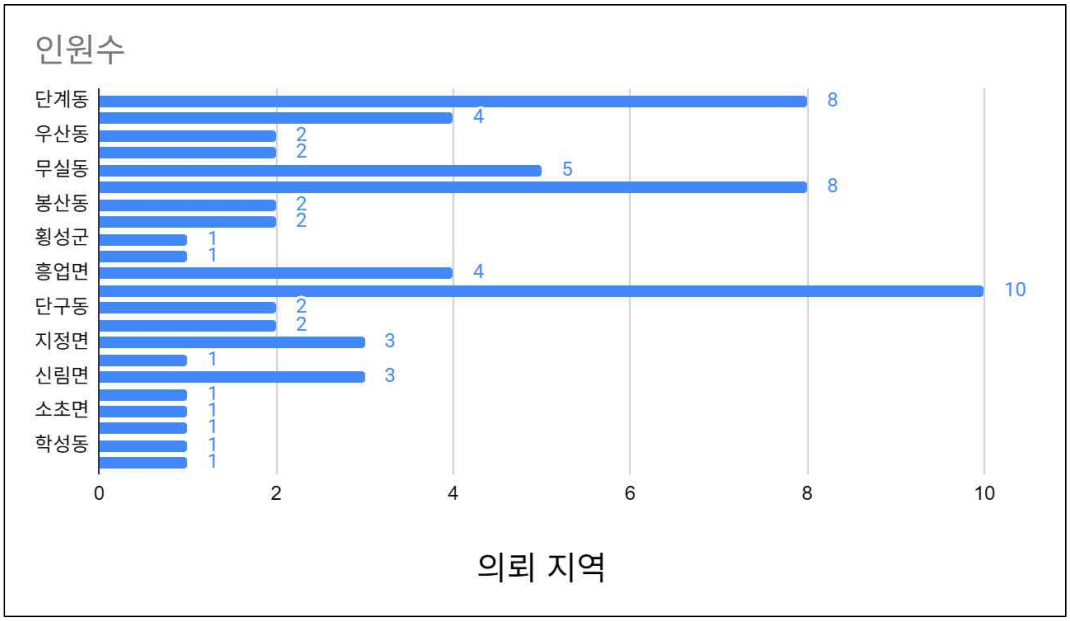
2025년 등록장애인	총 71명
서 비 스 유 형	일반건강관리(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또는 모든 장애의 일반적관리)
서 비 스 제공절차	

2) 사업수행 결과

구 분	내 용
참 여 자	65명 (등록 장애인 71명 중 실제 65명만 방문) *원주시 전체 등록장애인(19,541명) 대비 비율→ 0.36%
방문건수	총 223건
성별비율	남성 34명 (52.3%)>여성 31명 (47.7%) 

연 령 별 인 원	60대(22명, 34.4%) > 80대(17명, 26.6%) > 40대(9명,14.1%) 
자격구분	의료급여1종(42명, 64.4%)>건강보험(21명, 32.3%)>차상위(2명, 3.1%) 

장애유형 유 무	지체장애 (23명,35.4%)> 뇌병변(21명, 32.3%)>지적장애(9명, 13.8%) 
장애등급	중증(57명,87.7%)> 경증(8명, 12.3%) 

지역별 인 원	명륜동 >태장동,단계동> 무실동> 

□ **총평**

구분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계	7,598	11,943
65세 미만	4,619	4,384
65세 이상	2,979	7,559

[표6] 원주시 장애인 등록 현황 * 원주시 전체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368,270명 기준) → 약 5.3%

원주시의 2025년 6월 기준 등록장애인 수는 총 19,541명으로, 이 중 심한 장애인은 7,598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1,943명으로 확인되었음. 전체 인구 368,270명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은 약 5.3% 수준이었음. 연령별로 보면 65세 미만 장애인은 9,003명, 65세 이상 장애인은 10,538명으로, 고령 장애인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음.

본원에 등록되어 장애인 방문진료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총 71명으로, 이는 원주시 전체 등록장애인 19,541명 대비 약 0.36% 수준이었음. 다만 본원 이용자 중 중증(심한) 장애인의 비율이 87.7%(약 62명)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원주시 심한 장애인 7,598명과 비교하면 약 0.8% 수준으로, 전체 대비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접근성을 보이고 있었음.

이는 본 사업이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라기보다,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하였음.

이용자 특성을 보면 성별 구성에서는 남성이 52.3%로 여성(47.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령층 방문진료 이용 구조와 차이를 보였음. 연령 분포에서는 60대가 3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80대 이상이 중심이었던 노인 방문진료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장애 중·고령층에서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음.

자격 구분에서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가 6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건강보험은 32.3%, 차상위는 3.1%로 나타났음. 이는 장애인 방문진료 서비스가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결과였음. 장애 특성상 이동 제한과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대상자들이 방문진료를 주요 의료 이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음.

장애유형 분포에서는 지체장애(35.4%)와 뇌병변장애(32.3%)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적장애(13.8%)가 그 뒤를 이었음. 이는 이동 및 일상생활 수행에 제한이 큰 장애유형에서 방문진료 수요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조였음. 또한 장애 정도에서는 중증 비율이 87.7%로 매우 높게 나타나, 본 사업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 공백을 보완하는 핵심 서비스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종합하면, 원주시 전체 등록장애인 대비 본원 방문진료 이용 비율은 0.36%로 아직 확대 여지가 큰 상황이었으나, 중증장애인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며 고위험군 중심의 표적화된 의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음. 특히 60대 중심의 남성 비율이 높고, 의료급여 1종 대상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점에서 장애인 방문진료는 노인 방문진료의 단순 연장이 아니라, 중증·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 의료서비스의 성격이 강하였음.

향후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집중 관리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등급 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한 잠재수요 발굴을 병행할 필요가 있었으며,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방문요양·재활·복지서비스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지속관리 기반의 통합지원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음.

3 재가의료급여사업 사업보고

1) 사업 개요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재가의료 급 여 시범사업</td><td>퇴원 가능한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td></tr>
<tr><td>운영시기</td><td>25년 1월 ~ 12월(22년 2월부터 참여 중)</td></tr>
<tr><td>주무부서</td><td>원주시청 생활보장과</td></tr>
<tr><td>사업인원</td><td>총 9명 (25년 12월 기준)</td></tr>
<tr><td>사업대상</td><td>31일 이상 장기입원하였다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td></tr>
<tr><td>지원내용</td><td>욕구에 따른 돌봄 서비스 (5가지 서비스 중 의료지원 서비스 담당)
<table>
<tr><td>의료지원</td><td>요구도 평가, 맞춤형 케어플랜수립, 영양상담, 서비스 이용 모니터링</td></tr>
<tr><td>돌봄지원</td><td>일상 생활유지에 필수적인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 제공</td></tr>
<tr><td>식사지원</td><td>복지관, 민간 식사제공기관을 활용하여 대상자 필요에 따라 1-3식 제공</td></tr>
<tr><td>이동지원</td><td>병원외래진료 및 이동을 위한 교통비 지원</td></tr>
<tr><td>주거지원</td><td>주거지 수리등 기능 보강 및 비품구입등</td></tr>
</table></td></tr>
<tr><td>지원기간</td><td>대상자 종결시에서 대상자 선정 후, 2년까지만 서비스 제공</td></tr>
</table>

2) 사업수행 결과

- 신규 의뢰+케어플랜 작성:9건
- 기존 대상자 7명에서 방문진료 및 외래 진료 제공함. 모니터링 작성 :101건

□ **총평**

원주시 재가의료급여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및 방문의료 확대 정책에 부응하여,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밝음의원은 핵심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잘 유지하며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음이 확인됨.

올해 기준으로는 신규 의뢰 9건, 기존 방문 대상자 7명이 지속적으로 방문진료·재가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는 재가의료 급여체계가 단발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지속적·연속적 건강관리 체계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줌. 재가의료급여사업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가정환경과 생활 여건을 직접 파악함으로써, 외래 진료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의료 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됨.

4 “농촌 및 시내경계 지역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사업” 사업보고
(NH투자증권 임직원 지정기탁사업)

1)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농촌 및 시내경계지역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으로 2차 장애 예방 및 건강 격차 해소 -농촌 및 시내경계지역 건강반장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대상별 특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증진 효과 극대화 -예방적 돌봄으로 사회적 입원 예방 및 지역 내 안전한 건강환경 조성
사 업 의 필 요 성	-강원도 원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은 도시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2019년 고령사회(14%↑) 진입 2023년 노인인구 17.8% 2026년 초고령사회(20.8%) 진입 예상 75세 이상 초고령자는 지속 증가 추세 - 농촌 고령층은 의료 접근성 저하, 사회적 고립, 주거 노후 및 안전 문제, 영양 불균형, 정보 접근 제한, 경제적 어려움, 계절별 건강위험(폭염·한파 등) 등 복합적 취약 요인에 노출되어 단편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주거·정서·경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지원체계가 필요함. - 본 기관은 지난 9년간 원주시 농촌 및 시내경계지역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의료 복지 취약계층 대상 의료서비스 및 건강증진 활동을 수행해왔음. - 9차년도에는 신체허약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였고, 거동 불편으로 진료·검사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 증가에 따라 검사 및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했음.

2) 사업수행 결과(9차년도사업)[1)]

구 분	내 용	
사회적 돌봄서비스	건강반장 인원	28명
	건강반장 집담회 및 교육	월 1회 (총12회)
	농촌 및 시내경계지역 대상자 사례회의	14회
맞춤형 서비스	참여자	48명
	방문간호서비스	70회
	방문재활서비스	10명, 총 100회
	환경수정 및 운동보조기 지원	7회
	기초생계지원	16회
	의약품지원 및 검사치료비	21명(24회 지원)

□ **총평**

본 사업은 농촌 및 시내경계지역의 의료사각지대 주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기반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 아래 추진함. 특히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의료·복지 접근성이 불균형하게 나타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이 제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강반장 활동가를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음. 이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 내부의 관계망을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배제와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또한 건강반장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위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돌봄 안전망 기능을 일정 부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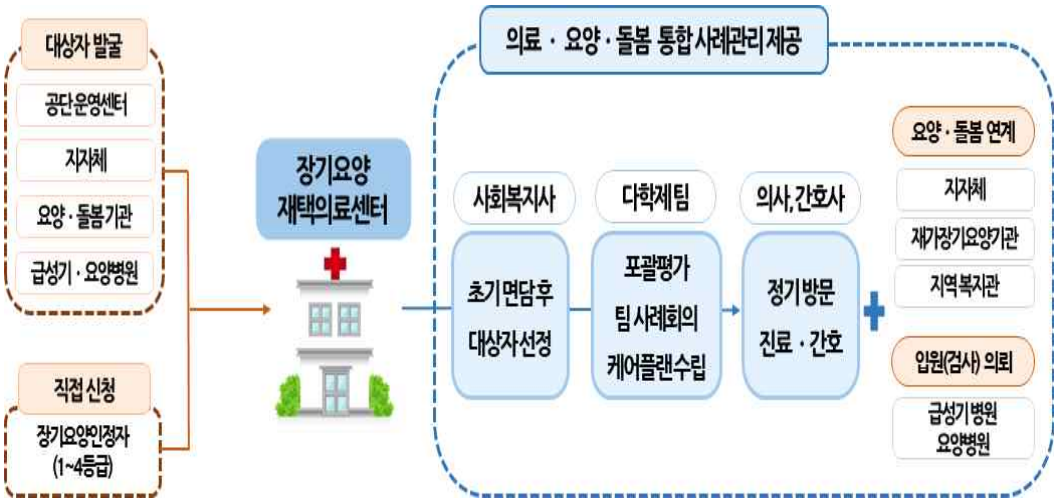
아울러 병원 방문이 어려워 대리처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대상자들에게 실제 진료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의료취약계층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업 효과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했으며,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음.

다만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문제는 만성질환 관리뿐 아니라 정서·주거·경제·정보 접근 등 복합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만큼, 향후에는 보건·복지·주거 자원 간 연계가 더욱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 또한 발굴-연계-사후관리 과정이 단발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례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접근성 차이를 고려한 운영 전략을 보완한다면 사업의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2024.02.01.~2025.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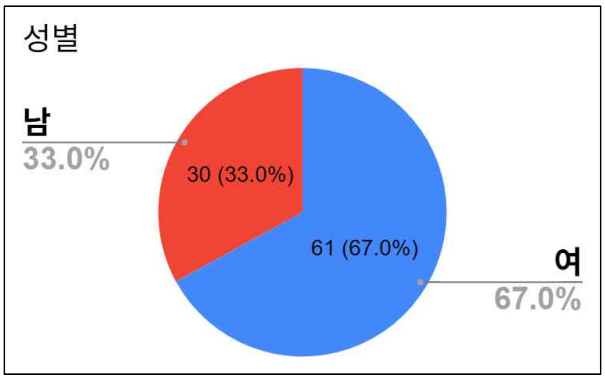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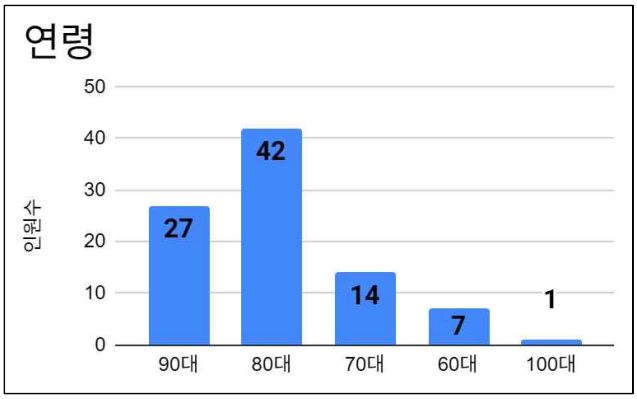
5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사업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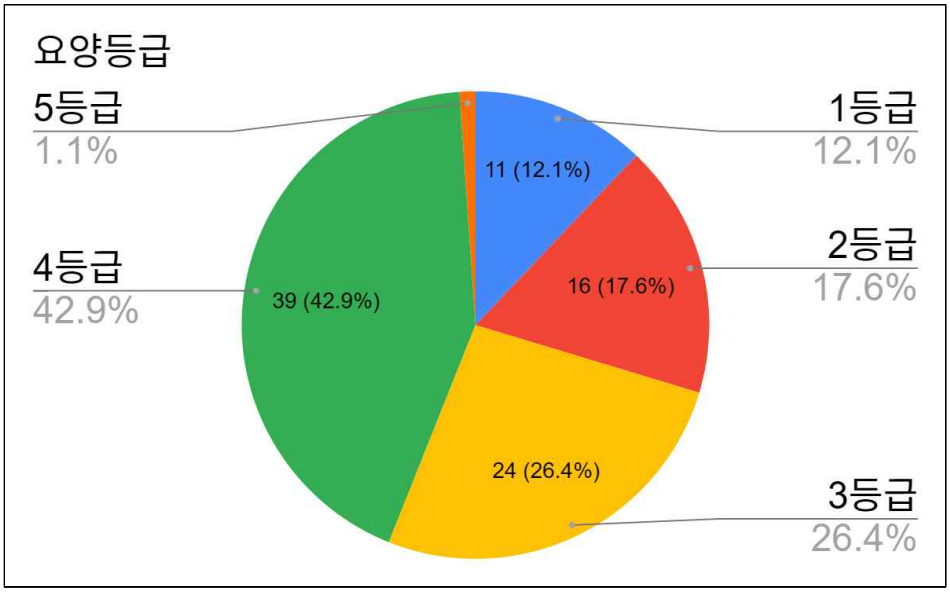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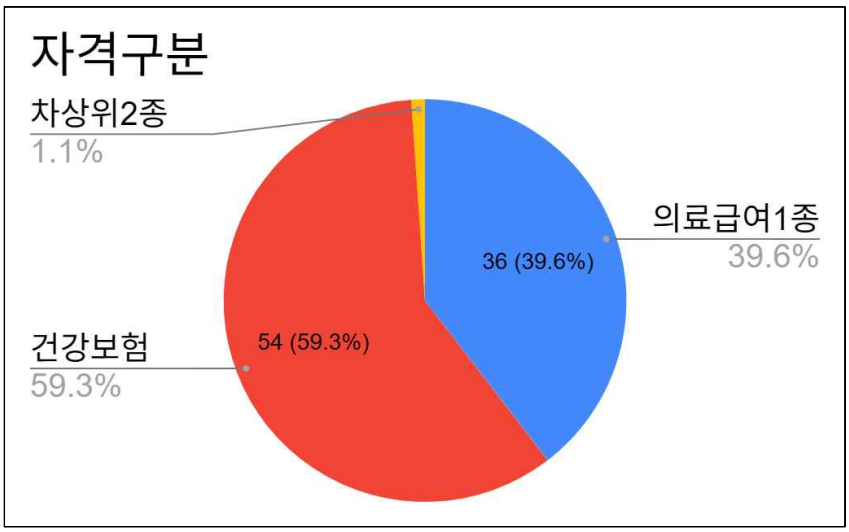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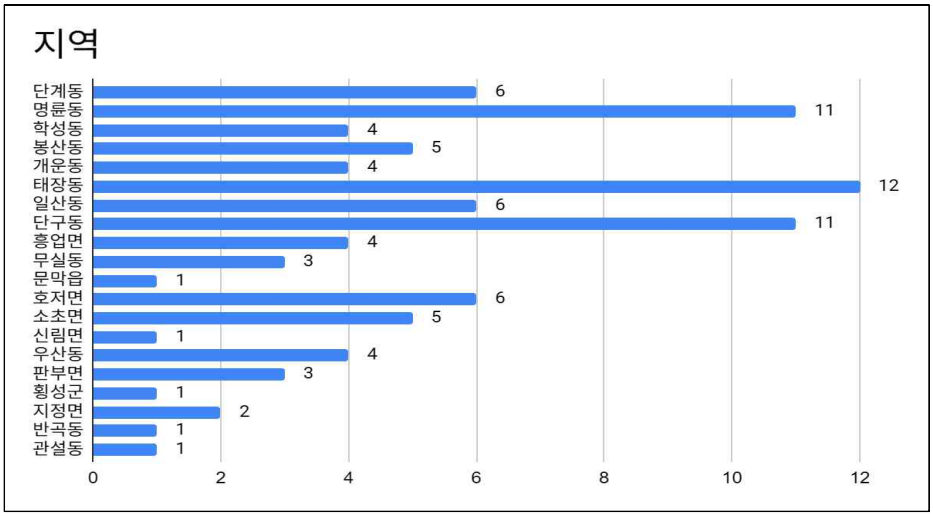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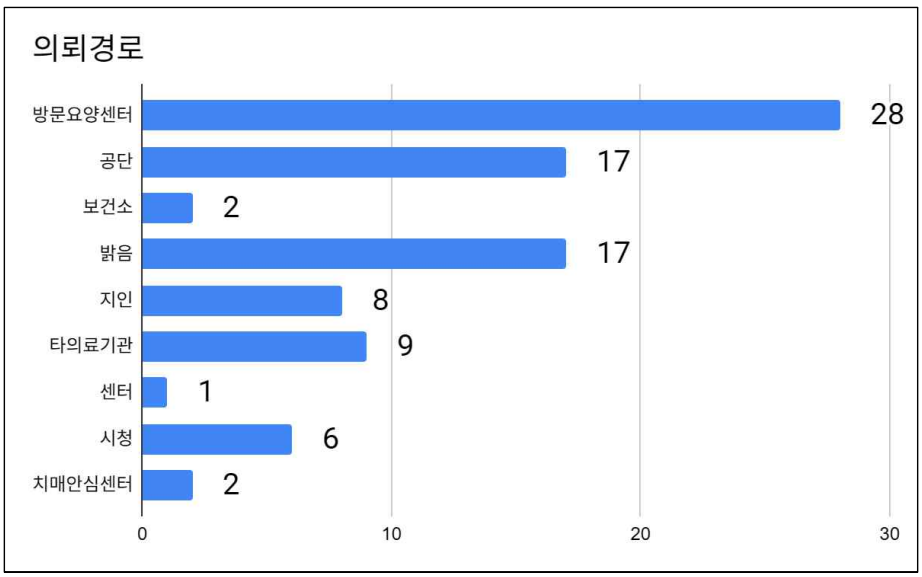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사업배경	- 노인들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도 거동불편과 복합질환으로 돌봄과 의료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요양시설이나 의료 기관에 입소 또는 입원하는 경우가 많음. - 원하지 않는 시설입소나 예기치 못한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 및 입원은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노년기 보건복지 비용의 증가와 비효율을 유발하게 됨. - '지역사회 계속 거주'의 지원을 위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대상 노인에게 '의료' 와 '요양' 을 아우르는 통합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재가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하여 방문형 재택의료·돌봄서비스의 확충이 필수적임.
운영시기	25년 1월~12월 (23년1월부터 참여중)
사업목적	만성복합질환과 거동불편 등의 이유로 의료접근성이 제한된 상태의 재가 장기요양노인 대상으로 다학제 통합서비스가 가능한 재택의료센터를 마련하여,수행할 업무의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 해당 노인의 건강관리와 돌봄 연계를 적절하게 제공.
사업세부서비스내용	

<table>
<tr><td></td><td>
<table>
<tr><td colspan="6">다학제 팀 공통 역할</td><td rowspan="2">의사</td><td rowspan="2">간호사</td><td rowspan="2">사회
복지사</td><td rowspan="2">다학제팀
점검 및
평가</td></tr>
<tr><td>포괄평가</td><td>›</td><td>사례회의
(주1회)</td><td>›</td><td>케어플랜
수립</td></tr>
<tr><td>•일반사항
•건강 및 질병
•기능상태
•의료·간호 욕구
•사회·환경 상태</td><td></td><td>•문제목록 검토
•우선순위 선정
•해결방안 모색
•역할분담 논의</td><td></td><td>•방문 횟수
•건강·질병관리
•의료·간호계획
•자원연계계획
•가족과 공유</td><td>›</td><td>•방문진료
(월 1회)
•약물조정
•투약처방
•간호지시</td><td>•방문간호
(월 2회)
•건강관리
•영양관리
•간호처치</td><td>•자원연계
(수시)
•협력체계
구축
•일정관리</td><td>›
1년 단위
포괄평가
↓
케어플랜
재수립</td></tr>
</table>
</td></tr>
</table>

2) 사업수행 결과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내 용</th></tr>
<tr><td>참 여 자</td><td colspan="2">91명(25년 12월 기준) *24년 65명</td></tr>
<tr><td rowspan="2">방문건수</td><td>방문진료</td><td>총 752건 *24년 602건</td></tr>
<tr><td>방문간호</td><td>총 1613건 *24년 1384건</td></tr>
<tr><td>성별비율</td><td colspan="2">여성 (61명) > 남성(30명)

</td></tr>
<tr><td>연 령 별
인 원</td><td colspan="2">80대(46.2%)>90대(29.7%) >70대(15.4%) >60대(7.7%)>100대 (1.1%)

</td></tr>
</table>

요양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5등급 
자격구분	건강보험 54명(59.3%)> 의료급여 36명 (39.6%)> 차상위 1명 (1.1%) 

지역별 인 원	태장동 >단구동, 명륜동 
서 비 스 신 청 의뢰기관	방문요양센터> 공단, 밝음의원> 타의료기관 

□ **총평**

본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2025년 12월 기준 총 91명의 대상자가 참여하였으며, 방문진료 752건과 방문간호 1,613건이 수행되어 의료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특히 방문간호 건수가 방문진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택의료 서비스가 단발성 진료 제공을 넘어 대상자의 일상 건강관리와 지속적 모니터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줌.

대상자 특성 측면에서는 여성 비율이 67%로 높았으며, 연령 분포는 80대(46.2%)와 90대(29.7%)가 중심을 이루어 전체적으로 초고령층 대상자가 주된 서비스 이용층임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장기요양 대상자의 특성상 거동 불편 및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이 큰 고령층에서 재택의료 수요가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함.

요양등급 분포에서는 4등급(42.9%)과 3등급(26.4%) 비중이 높아, 중등도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자격구분에서는 건강보험이 59.3%로 가장 많았으나, 의료급여 1종이 39.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의 참여 또한 상당한 수준임을 확인함. 의뢰경로 분석 결과 방문요양센터와 공단을 통한 연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 장기요양 체계 내 돌봄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사업 운영의 핵심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서비스 의뢰지역은 태장동·단구동·명륜동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이 확인되어, 향후에는 지역별 대상자 발굴 및 연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홍보·협력 네트워크 확장과 균형 있는 자원 배분 전략이 필요함.

2025 사무국 주요 활동 사업 보고

1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건강반장

1) 건강반장이란?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주민참여형 돌봄 모델로 지역, 마을 주민들의 건강 돌봄 및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연계하는 마을의 건강활동가

2) 돌봄대상 : 독거, 조손가정, 거동불편, 경증치매, 취약가정 노인 등

3) 활동내용

: 말벗, 안부확인, 건강관리, 보건예방활동(정서지원, 놀이활동 등), 의료복지취약 대상자 발굴 및 연계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내 용</th></tr>
<tr><td>목 적</td><td colspan="3">-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건강반장 운영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확산 도모
- 건강반장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체계 마련 및 건강반장 발굴·육성·확대</td></tr>
<tr><td rowspan="3">활 동</td><td colspan="2">운영시기</td><td>25년 1월 ~ 12월</td></tr>
<tr><td colspan="2">건강반장 인원</td><td>총 28명</td></tr>
<tr><td>활동 지역 및 명단</td><td colspan="2">
<table>
<tr><td>신림2리 (9명)</td><td>최태인, 조규봉, 이정옥, 조영식, 이영희, 이순준, 김한기, 김충열, 김중옥</td></tr>
<tr><td>황둔(3명)</td><td>백낙진, 안봉녀, 최종은</td></tr>
<tr><td>봉산동(6명)</td><td>권순덕, 김기월, 정순옥, 이동자, 차순분, 조재호</td></tr>
<tr><td>단구동(5명)</td><td>김영신, 김기로, 한정자, 정진옥, 우효숙</td></tr>
<tr><td>개운동(2명)</td><td>안정옥, 강부선</td></tr>
<tr><td>명륜동(1명)</td><td>홍성진</td></tr>
<tr><td>문막읍(2명)</td><td>김선동, 김양수</td></tr>
</table>
</td></tr>
</table>

	집담회 및 교육	

일 자	진행	참여인원	실인원
신규건강반장교육	2회	2명	2명
건강반장 집담회	9회	230명	28명
역량강화교육	3회	77명	26명

- 신규건강반장교육

· 활동 매뉴얼 안내(지역사회 내 건강반장 역할 및 활동 내용 등)
· 실습(혈압기 사용방법 등)
· 활동 물품 지급(혈압기, 색연필, 활동지, 보드게임 등)

- 건강반장 집담회

· 건강반장 활동 관련 안내 및 질의응답
· 신규건강반장 소개, 서식 배부, 서류 작성 등
· 건강교육
: 치매, 치매안심센터의 모든 것, 기립성 저혈압, 화상(고온, 저온), 근력강화 운동, 노인의 영양관리, 어지럼증, 여름철 안전교육,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법 등
· 건강활동 교육 : 두뇌운동, 건강박수, 건강체조 등
·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및· 건강반장활동 질의응답

- 역량강화교육

·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기후위기대응스쿨, 보드게임 이론과 실제
· 건강반장활동 공유 및 건의사항 나눔

□ **총평**

- 총 14회 진행하였으며 2025년 한 해에 총 27명이 활동함.
- 신규 건강반장의 최초 활동 시작 전, 건강반장의 사업 취지, 활동 매뉴얼 등을 안내하여 지역사회 내 건강반장 역할과 활동 내용을 숙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정기적인 집담회와 역량강화교육으로 건강 교육,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기후위기대응스쿨, 건강체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건강반장에게 교육을 하고, 건강반장은 교육 받은 것을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하였음.
- 건강반장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체력 저하, 질병, 낙상 등의 이유로 그만 두시고 대상자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아졌음.
- 대상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대상자의 사망, 요양병원 입원, 요양원 입소 등의 이유로 건강반장 대상자의 수가 이전보다 줄어들었음.
- 현재까지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사업으로 해온 건강반장 활동을 2026년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으로,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사업(G케어매니저)으로 확장하여 진행함.(참여자 120명)

2 조합원 소모임 '똑똑 건강반'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내 용</th></tr>
<tr><td>목 적</td><td colspan="2">- 조합원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 증진
- 조합원 간 지지체계 형성과 지속적인 건강증진 활동의 습관화를 통한 건강자치력 향상
- 조합원 간 관계증진을 통한 조합과의 관계 및 공동체 의식 향상 도모</td></tr>
<tr><td>정 의</td><td colspan="2">똑똑건강반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심을 가진 최소 5명의 조합원들이 스스로 모여 행복한 건강 활동을 하며 건강자치력을 기르는 강원의료사협의 건강소모임.</td></tr>
<tr><td rowspan="3">활 동</td><td>운영시기</td><td>25년 3월 ~ 11월</td></tr>
<tr><td>대상</td><td>최소 5명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건강소모임</td></tr>
<tr><td>현황</td><td>
<table>
<tr><th>똑똑건강반</th><th>인원</th><th>활동</th></tr>
<tr><td>바르게 걷기</td><td>6명</td><td>- 바르게 걷기, 맨발걷기
- 근력운동</td></tr>
<tr><td>맨발의 책수다</td><td>7명</td><td>- 책수다 및 정보나누기(주 1회)
- 맨발걷기(월 2회)</td></tr>
<tr><td>에스라인</td><td>5명</td><td>- 출근하며 하루 5,000보 이상 걷기
- 한 달 中 1주일 계획하여 밀가루 안먹기
- 저녁식사 후, 스트레칭 10분, 맨손체조 10분, 스쿼트 30회
- 2주에 한 번 건강식 식사 및 산책</td></tr>
<tr><td>협동건강챌린지</td><td>7명</td><td>- 다양한 방법으로 700Km 완주
(걷기, 자전거타기, 뛰기 등): 스마트폰활용
- 월 1회 건강한 밥상 월간식탁</td></tr>
</table>
<table>
<tr><th></th><th>맨발의 책수다</th><th>바르게 걷기
25!</th><th>에스라인</th><th>협동건강
챌린지</th></tr>
<tr><td>오리엔테이션</td><td>4명/7명</td><td>1명/6명</td><td>5명/5명</td><td>3명/7명</td></tr>
<tr><td>사전검진</td><td colspan="4">25명</td></tr>
<tr><td>네이버 밴드</td><td>21회</td><td>19회</td><td>12회</td><td>14회</td></tr>
<tr><td>활동</td><td>31회</td><td>23회</td><td>13회</td><td>32회</td></tr>
<tr><td>조합행사</td><td>5회</td><td>2회</td><td>4회</td><td>1회</td></tr>
<tr><td>1차 간담회</td><td>3명/6명</td><td>2명/6명</td><td>3명/5명</td><td>2명/7명</td></tr>
<tr><td>사후검진</td><td colspan="4">25명</td></tr>
</table>
</td></tr>
</table>

□ **총평**

- 2024년 처음 시작한 똑똑건강반은 강원의료복지사협의 건강소모임으로 현재 2기 활동을 마친 상태임.
- 2주에 1회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해 열심히 활동을 하였음
- 똑똑건강반 참여자들은 사전·사후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고 함. 특히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참여자 중 한 명은 건강생활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 당뇨 전 단계를 벗어나는 성과를 보였으며, 간담회에서 본인의 건강 변화 과정과 현재 실천 중인 관리 방법을 공유하여 다른 참여자들의 건강 실천 의지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 해당 사례는 똑똑건강반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됨.
- 네이버 밴드에 건강소모임 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유한 결과, 소모임이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임. 똑똑건강반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의 건강실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며 똑똑건강반으로 활동하는 것이 만족스럽다는 의견과 함께 건강소모임 활동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일부의 경우에는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활동 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를 반영하여 2026년 똑똑건강반 3기를 모집할 예정임.

4 1인가구 요리교실 ‘착하다쿡(COOK)’

구 분		내 용
목 적		- 1인 가구 요리교실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필요성 인식 - 월 1회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사회적 고립감 완화 및 지역 내 관계망 형성 - 간단하고 쉬운 조리방법 습득을 통한 자립적인 식생활 형성에 도움
활 동	운영시기	25년 5월 ~ 12월
	대상	1인 가구(남성인 경우, 2인 가구 해당)
	회기	8회기

□ **총평**

- 원주생협과 함께한 1인가구 요리교실 착하다쿡(COOK)은 단순 조리기술을 넘어, 식재료가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나누며 건강한 식재료, 건강한 식생활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일회성 만남이 아닌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친목을 다지며 지역 내 관계망이 형성됨. 친밀감이 쌓이면서 서로의 지식과 정보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짐.
- 참여자들은 간편한 조리방법을 익힌 뒤, 가정에서 실천하며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을 공유하는 등 배달, 대충먹는 식사를 줄이고 건강한 식사를 유지하고자 노력함.
- 다만 참여 비용이 저렴하고 프로그램이 장기화 되면서 참석률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향후에는 프로그램 비용 적정화, 프로그램 진행 기간을 줄여보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치매예방교실 ‘두뇌놀이터’

구 분	내 용
목 적	- 치매 예방교육을 통한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 예방의 중요성 인식 증진 도모 - 다양하고 특화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기능 저하 방지 및 뇌 자극 활동 증진 도모 -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적 고립감 완화 및 정서적 안정 도모 - 건강공동체 형성을 통한 원주밝음신협 조합원 활동 활성화 도모 및 조합에 대한 친근감 향상 도모

활 동	운영시기	25년 7월 ~ 9월
	대상	원주밝음신협 조합원 52명
	회기	10회기

□ **총평**

- 원주밝음신협과 함께한 치매예방교실 교육생 모집에 56명 신청하여 52명이 교육에 참여함.
- 치매이야기, 휴머니튜드 관련한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치매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됨.
- 주의력, 기억력, 수리력, 언어력 활동 등 다양하고 특화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뇌 자극 활동을 증진시키고 인기기능 저하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줌.
- 파리채, 손장갑, 폼스틱, 리듬막대, 블록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지루함 없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였으며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 분단 별 놀이 등 공동체 활동과 긴 회기로 서로의 사는 곳부터 안부를 묻고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조합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음.
- 많은 참여자들이 강의를 통해 건강활동을 하며 원주밝음신협에 대한 친근감이 향상되었음.
- 초기 신청자 중 비교적 젊은 연령에 속하는 65세 이하의 연령대에서 많은 이탈이 일어났음.
- 무료로 진행되다 보니 참석 의무감이 저하되어 참석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임. 추후에는 본인부담금, 연령대 제한 등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노인건강돌봄지도사 양성과정

구 분	내 용
목 적	노인건강돌봄지도사 양성(취약계층 우선선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중심의 “함께 건강 돌봄”, “돌봄 분담” 인식향상 및 고령화에 따른 지역건강 안전망 구축 도모
정 의	노인건강돌봄지도사 : 노인과 돌봄에 대한 보건·의료·복지 분야 상식 수준의 지식을 숙지하고 건강돌봄의 실천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여 돌봄현장에서 숙련되게 수행가능한 직무능력을 갖춘 자

활 동	운영시기	25년 12월(6회)
	대상	60세 이상의 돌봄에 관심있는 원주밝음신협 및 강원의료복지사협 조합원 20명
	추후 활동	노인일자리 G-care 매니저 연계(4명 이상), 자원봉사

□ **총평**

- 신협중앙회와 원주밝음신협과 함께 진행한 '노인건강돌봄지도사' 과정의 교육생 20명 전원이 교육(16시간)을 100% 수료함.
- 교육생 20명 전원이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의 민간자격증 '노인건강돌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여 전원 합격함.
- 이 중, 최소 4명 이상이 강원의료복지사협 G-care 매니저로 활동하고 계시며 이 외에 여러분이 대기 중인 상태임.
- 교육생은 각 분야의 전문가의 강의에 대한 만족감이 아주 높았으며 강의를 더욱 받고 싶은 의지와 열정을 비침.
-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추후 진행 시, OMR 카드 사용법 안내 및 실습,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3호 의안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관련 근거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 안건 제안 배경

- 우리 조합은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최근 기후위기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냉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건강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이 지역 에너지 복지 활동과 재생에너지 기반의 공익사업에 참여할 근거를 정관에 명확히 두고자 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지키고, 조합의 재정적 자립을 높이고, 조합 공익사업(의료비 지원, 돌봄 사업 등)을 확장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 조합이 추진하려는 일
· 공공주차장 등 공공부지 태양광 사업 참여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냉난방비, 태양광 전기 제공 등)
· 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의 의료·복지 공익사업에 재투자
· 조합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기후·에너지 전환 캠페인

■ 의결 주문 사항

아래의 정관 개정(안)을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57조(사업의 종류)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 조합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	**제57조(사업의 종류)**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 조합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	재생에너지를 통한 공익사업의 확장 및 안정적 기반 마련

3.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 4.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3.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 4.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신설) 5. 지역사회 에너지 복지 증진과 재생에너지의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사업	

제4호 의안: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건

■ 관련 근거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의결 주문 사항

아래의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내가 살던 곳에서 의료+복지+요양+돌봄을 통한 인간적 돌봄 실현』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26년 사업계획(안)

사회적기업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목적 및 활동

1 설립목적

1) 조합원 협동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권을 위한 보건·의료·복지·돌봄 활동
2) 국가복지의 한계를 넘어서는 복지사회 구현
3) 생명사상에 기반한 자립적인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

2 조합의 사명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믿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통하여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조합원과 함께하는 보건·복지·건강마을 만들기 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조합원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한다.

3 주요 활동

1)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2) 조합원 및 지역주민 건강유지, 증진에 기여.
3)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
4) '건강한 마을 만들기'에 기여
5) 조합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
6)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협동조합인을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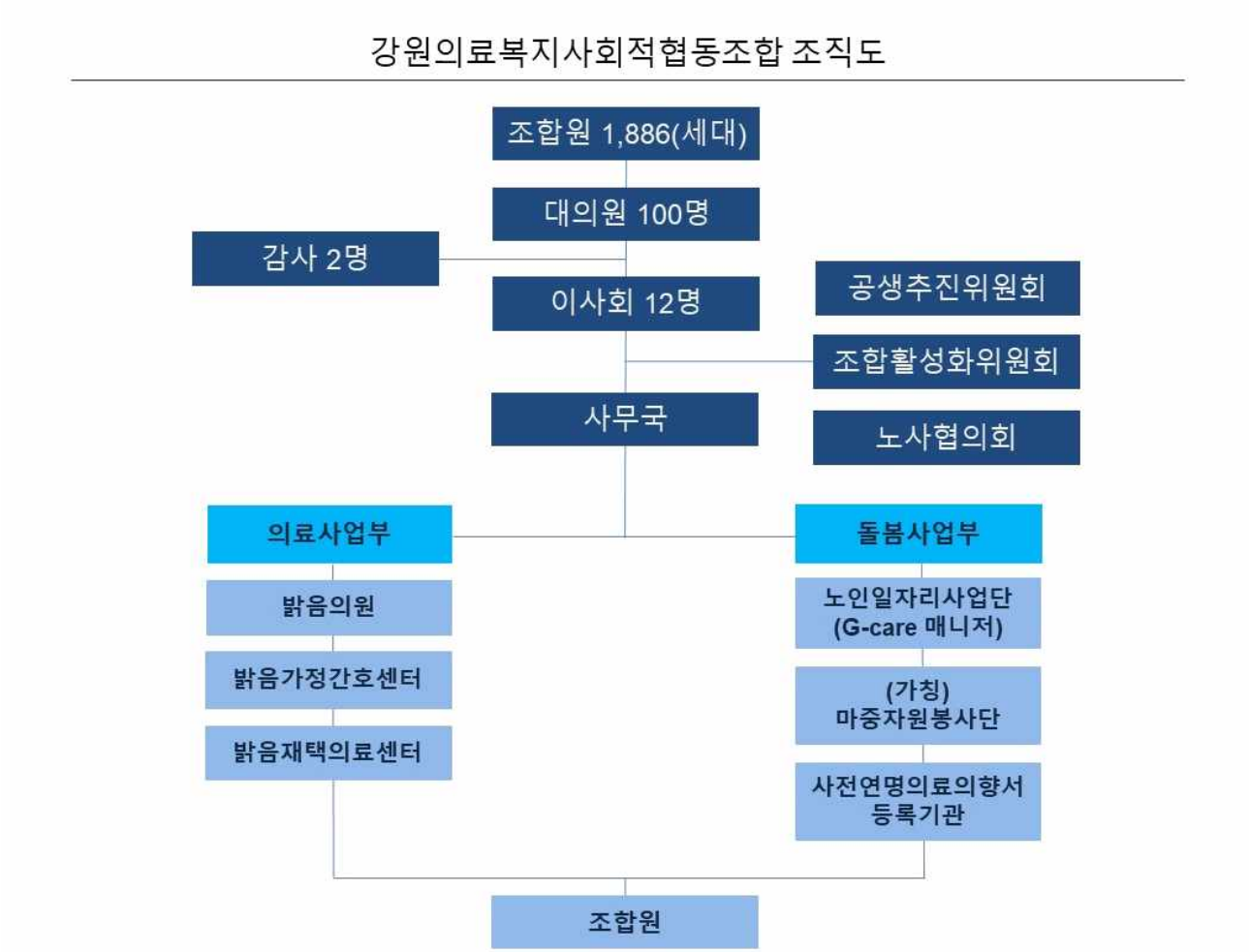
4 20주년 슬로건

1) 인간과 노동 그리고 존엄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의료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
2) 조합원의 웰빙에서 웰다잉까지 책임지는 조합 실현
3) 의원급 주치의제와 함께 병원급 주치의제 구현
4) 의료기반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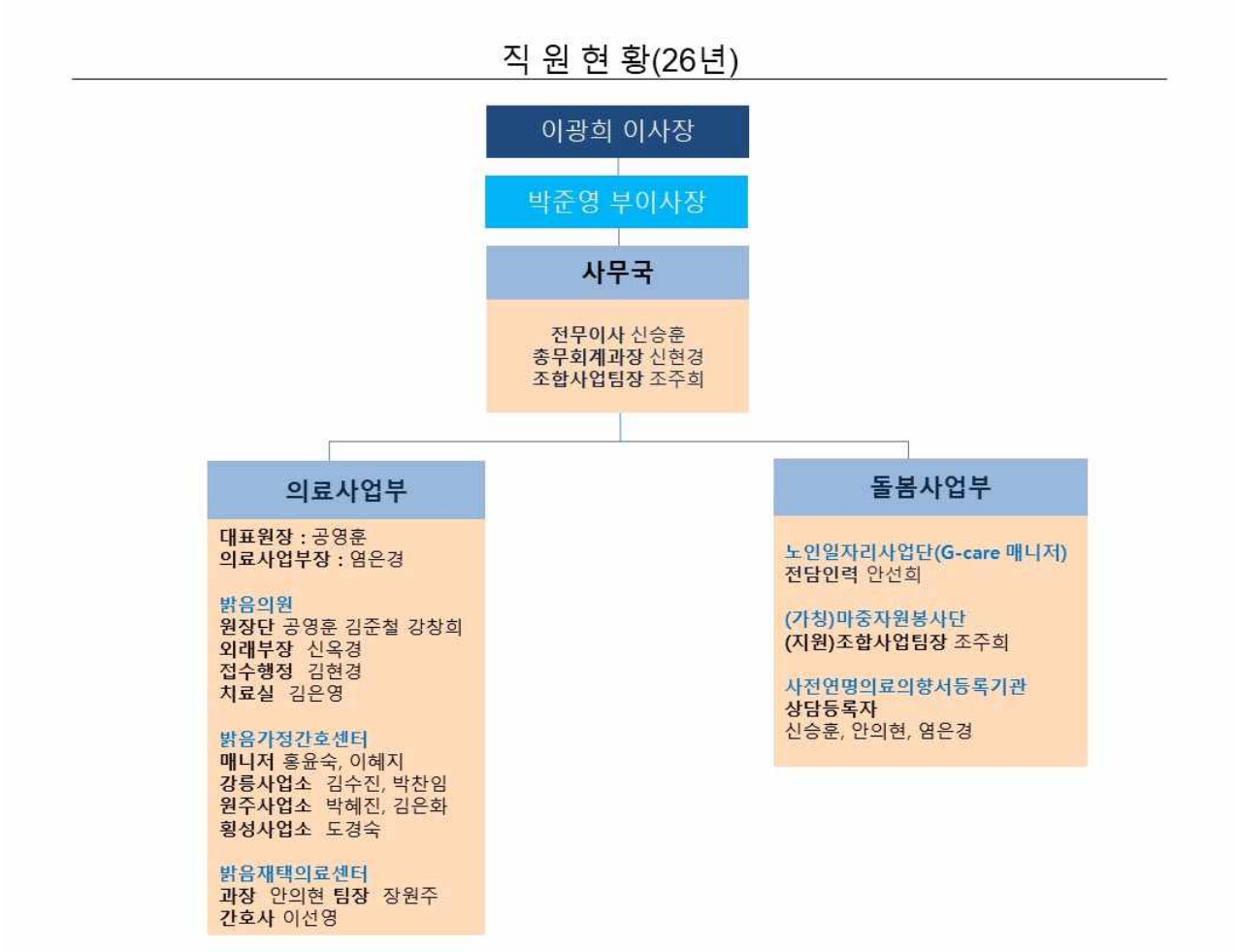
기본 현황

1 조직도 및 직원현황

1) 조직도



2) 직원현황


직 원 현 황(26년)
이광희 이사장
박준영 부이사장
사무국
전무이사 신승훈
총무회계과장 신현경
조합사업팀장 조주희
의료사업부
대표원장 : 공영훈
의료사업부장 : 염은경
밝음의원
원장단 공영훈 김준철 강창희
외래부장 신옥경
접수행정 김현경
치료실 김은영
밝음가정간호센터
매니저 홍윤숙, 이혜지
강릉사업소 김수진, 박찬임
원주사업소 박혜진, 김은화
횡성사업소 도경숙
밝음재택의료센터
과장 안의현 팀장 장원주
간호사 이선영
돌봄사업부
노인일자리사업단(G-care 매니저)
전담인력 안선희
(가칭)마중자원봉사단
(지원)조합사업팀장 조주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
상담등록자
신승훈, 안의현, 염은경

2 분장사무

구분	부서	직함	성명	담당업무	비고
	이사장		이광희	이사장	
	부이사장		박준영	조합 운영 지원 및 대외협력 업무	
사무국	전무이사		신승훈	조합 실무 총괄 이사회 운영 위원회 운영 대외협력업무 기획사업 및 프로젝트 사회적성과관리	
	총무회계과장		신현경	법인세무관리(법인세, 소득세) 직원 입퇴사 관리, 연차관리 직원급여,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출자금관리 결산(이사회 자료작성, 사업소별 매출) 사회적성과관리	
	조합사업팀장		조주희	조합원 관리 및 조합 홍보 조합 활동 및 소모임 등 운영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운영 법정의무교육 사회적성과관리	
의료 사업부	밝음의원 원장단	(대표)원장	공영훈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전문의	외래, 재택의료, 촉탁의
		원장	김준철	가정의학과 전문의	외래, 재택의료
		원장	강창희	재활의학과 전문의	촉탁의
	의료사업부장		염은경	의료사업부 실무 총괄 NH기탁사업(농촌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	
	밝음의원	외래부장	신옥경	외래파트 총괄	
		간호조무사	김현경	외래(접수, 수납, 청구 등)	
		간호조무사	김은영	외래(치료실)	
	밝음가정간호센터	가정전문간호사	김수진	강릉사업소	
			박찬임		
			박혜진	원주사업소	
			김은화		
			도경숙	횡성사업소	

		매니저	홍윤숙	가정간호센터 행정 실무 총괄 촉탁 요양시설 관리	
			이혜지	가정간호센터 행정 실무 촉탁 요양시설 관리	
	밝음재택의료센터	과장	안의현	재택의료센터 실무 총괄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NH기탁사업(농촌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 생애말기돌봄시범사업	
		팀장	장원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 생애말기돌봄시범사업	
		간호사	이선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	
돌봄사업부	원주시노인일자리사업단	사회복지사	안선희	G-care 매니저(마을건강활동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사업 실무	
	(가칭) 마중자원봉사단			준비 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상담등록자	신승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	
			안의현		
			염은경		

사 업 계 획 서

1 2026년 중점방향

1) 지역 통합돌봄 기반 예방·관리형 주치의 모델 및 재택의료 연계 표준모델 구축

2)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에 따른 지자체·의료기관·돌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3) 건강 취약계층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접근성 보장 및 건강격차 완화

4) 조합원 참여형 건강자치 모델 강화

5) G-care 매니저(마을건강활동가)를 통한 지역(동네) 건강안전망 마련

6) 협동조합 운영 및 참여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강화

7) 조합원, 임직원 참여(재능기부, 자원봉사 등)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시도

8) 협동조합형 노인요양시설 설립을 위한 조합원 참여 및 자본 조성 추진

2 주요사업계획(안)

구 분	주 요 사 업 내 용
일차의료기관 “밝음의원”	① 건강주치의(질환 예방, 건강 증진, 만성질환 관리)
	② 예방접종사업(대상포진, 폐렴, 독감, 파상풍, 코로나19 백신 등)
	③ 재택의료센터 (재택의료+방문진료+장애인건강주치의)
	④ 가정간호센터(원주사업소, 강릉사업소, 횡성사업소)
	⑤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촉탁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돌봄	① 농촌, 시내 경계 지역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사업(NH투자증권)
	② 빈곤층 건강 지원 협력(노숙인 센터, 원주시의사회 빈의자 등)
	③ (균형영양먹거리 응원)모두웰 후원회(행정지원)
	④ “건강한 삶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보탬비(후원금) 운영
조합 운영 및 관리	①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② 대의원 “소통의 날”
	③ 임직원 역량강화 워크샵
	④ 공생추진위원회
	⑤ 대의원-임원 학교
조합 활성화	① 조합 홍보(온라인, 오프라인)
	② 원주건강스토리(건강, 돌봄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
	③ 조합원 스킨십 강화(신규 조합원 교육, 조합원 만남의 날)
	④ 조합원 건강소모임
	⑤ 강원의료복지사협 자원봉사단
	⑥ 찾아가는 밝음건강강좌
노인일자리 사업단 “G-care 매니저” (마을건강활동가)	① 교육 및 사례공유회
	② 역량강화 교육
	③ 활동물품지원
지역사회 연계 협력	①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원주시 복지관 등)
	②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원주시청 생활보장과)
	③ 유관기관 간담회
	④ 재생에너지 공익사업 활동

세 부 사 업 계 획

1 일차의료기관 “밝음의원”

1) 건강주치의(질환 예방, 건강 증진, 만성질환 관리)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목 적</td><td>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돌보는 의사로서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예방, 건강 증진, 만성 질환 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 관리를 제공</td></tr>
<tr><td>운영시기</td><td>상 시</td></tr>
<tr><td>대 상 자</td><td>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 밝음의원 환자 등</td></tr>
<tr><td>사업내용</td><td>○ 맞춤형 건강 관리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가족력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건강 관리 계획 수립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상담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
○ 만성 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
환자의 생활 습관 개선과 자가 관리 능력 향상 지원
○ 건강 상담 및 교육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건강 습관 교육
정신 건강 문제나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
○ 지역사회 건강 관리: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수행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효율적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 rowspan="3">건강검진</td><td>신체 검사</td></tr>
<tr><td>체성분 검사</td></tr>
<tr><td>암, 심혈관계 질환, 간 질환, 당뇨병, 결핵 등 검사</td></tr>
<tr><td>만성질환관리</td><td>고혈압·당뇨병 환자의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 상담, 검사 등</td></tr>
</table>
</td></tr>
</table>

2) 예방접종사업(대상포진, 폐렴, 독감, 파상풍, 코로나19 백신 등)

구 분	내 용
목 적	개인에서의 감염병 발생 자체를 방지 또는 중증 감염병으로의 진행을 줄여 입원 및 사망률을 낮춤으로써 개인, 가족의 부담 최소화
운영시기	상시
대 상 자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 밝음의원 환자 등
사업내용	-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사업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65세 이상 수급자만 해당됨) - 독감, 대상포진, 폐렴, 파상풍 예방접종

성인용 예방접종 일정



3) 재택의료센터(재택의료+방문진료+장애인건강주치의)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구 분	내 용
목 적	만성복합질환과 거동불편 등의 이유로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재가장기요양 노인을 대상으로 재택의료센터가 수행할 업무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해당 노인의 건강관리와 돌봄연계가 적정하게 제공되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함
운영시기	상시
대 상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고 만성질환 및 건강문제로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 및 의료팀이 판단한 사람
사업내용	- 대상자의 전반적 상태와 욕구에 대하여 포괄적 평가 결과에 따른 케어 플랜 수립, 방문진료 및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통합 사례관리 제공 -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제공 - 사회복지사는 비정기적 수시 상담을 통한 요양·돌봄 수요발굴 및 서비스 연계 

<table>
<tr><td rowspan="2">산정지침</td><td>방문
진료료</td><td>방문진료료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따름
<table>
<tr><th colspan="2">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th><th>전액</th><th>청구액</th><th>본인부담금
(원)</th></tr>
<tr><td rowspan="3">의사와
간호사 동반
방문시</td><td>일반보험(100/15부담)
※ 장기요양 1,2등급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상자 15%로 경감</td><td rowspan="2">165,240</td><td>140,540</td><td>24,700</td></tr>
<tr><td>일반보험(100/30부담)</td><td>115,740</td><td>49,500</td></tr>
<tr><td>보호1,2종,차상위
(100/5부담)</td><td></td><td>156,980</td><td>8,260</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2">※ 기초생활 수급자는
건생비에서 우선 차감</td></tr>
</table></td></tr>
<tr><td>재택의료
급여
비용기준
및 금액</td><td>
<table>
<tr><th>분류</th><th>기준(25년과 동일)</th><th>금액(원)</th></tr>
<tr><td>재택의료기본료</td><td>수급자 1인당 월 1회</td><td>140,000</td></tr>
<tr><td>지속 관리료</td><td>수급자 1인당 6개월 단위</td><td>60,000</td></tr>
<tr><td>추가 간호료</td><td>방문당 (월 3회 한정)</td><td>52,310</td></tr>
</table></td></tr>
<tr><td>추진계획</td><td colspan="2">1. 대상자 발굴 및 의뢰체계 강화
방문요양센터, 공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력하여 의뢰 경로를 확대하고, 장기요양 대상자 중 재택의료 필요군을 조기 발굴

2. 다직종 협력 기반 서비스 운영 내실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팀을 중심으로 방문진료-방문간호-복지연계를 통합 운영하고,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

3. 만성 질환 및 기능저하 예방 중심 관리 강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와 낙상 예방, 복약지도, 영양·운동 교육을 병행하여 건강악화를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

4. 지역별 수요 분석 및 집중관리 체계 구축
의뢰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체계를 안정화하고, 읍·면 지역 등 의료접근 취약지역에는 연계기관 협력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

5. 홍보 및 참여기관 네트워크 확대
사업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참여기관과 주민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td></tr>
</table>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목 적</td><td>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커뮤니티케어 기반 확보</td></tr>
<tr><td>운영시기</td><td>상시</td></tr>
<tr><td>대 상 자</td><td>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예시) 마비(하지. 사지마비, 편마비 등), 수술직후, 말기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인지장애, 기타 거동 불편 등</td></tr>
<tr><td>사업내용</td><td>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의원의 의사가 직접 왕진 의료서비스를 제공
대상자 ⇨ 왕진요청 방문진료 (의사, 간호사) ⇨ 서비스 제공 재택 (가정)
서비스 내용: 진찰, 처방, 질환관리, 검사, 교육상담 등</td></tr>
<tr><td>이용금액</td><td>
<table>
<tr><th colspan="2">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th><th>전액</th><th>청구액</th><th>본인부담금 (원)</th></tr>
<tr><td rowspan="3">의사와 간호사 동반 방문시</td><td>일반보험(100/15부담)
※ 장기요양 1,2등급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상자 15%로 경감</td><td rowspan="3">165,240</td><td>140,540</td><td>24,700</td></tr>
<tr><td>일반보험(100/30부담)</td><td>115,740</td><td>49,500</td></tr>
<tr><td>보호1,2종,차상위 (100/5부담)</td><td>156,980</td><td>8,260</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2">※ 기초생활 수급자는 건생비에서 우선 차감</td></tr>
</table>
</td></tr>
<tr><td>추진계획</td><td>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 동일</td></tr>
</table>

-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목 적</td><td>장애인들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 교육·상담, 방문 등 지속적 관리를 통한 건강한 삶 증진</td></tr>
<tr><td>운영시기</td><td>상시</td></tr>
<tr><td>대 상 자</td><td>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참여 대상자는 중복 참여 불가.</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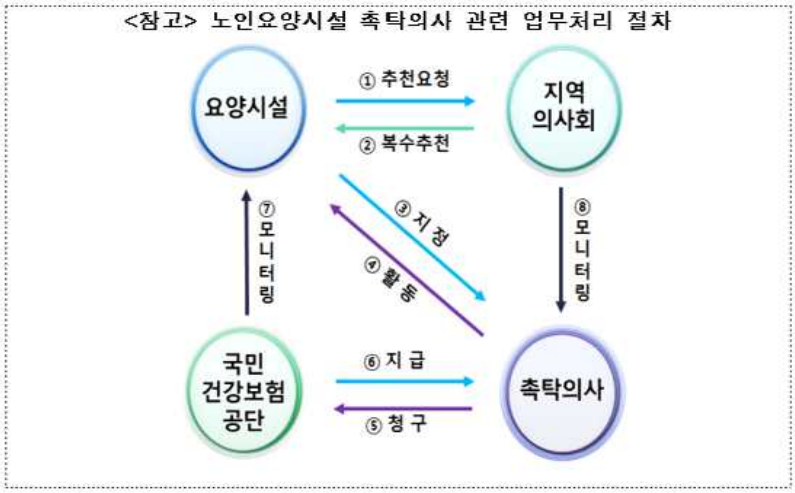
<table>
<tr><td>사업내용</td><td>- 장애인-주치의 상호 등록을 통한 지속적 건강관리
- 장애, 일상적 건강문제, 질병 예방, 만성질환 등에 대한 포괄적 건강 관리
- 방문의료, 전화상담 등을 통한 거동 불편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td></tr>
<tr><td>항목별
수가
(26년 기준)</td><td>- 모든 장애인 방문 , 중증: 24회, 경증 4회
<table><tr><th>구 분</th><th>수 가</th></tr><tr><td>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td><td>64,290</td></tr><tr><td>나. 중간점검료</td><td>36,000</td></tr><tr><td>다. 교육 상담료 I</td><td></td></tr><tr><td>(1) 10분 이상 20분 미만</td><td>15,020</td></tr><tr><td>라. 환자관리료</td><td>10,470</td></tr><tr><td>마. 방문료</td><td></td></tr><tr><td>(1) 방문진료 I</td><td>196,000</td></tr><tr><td>(2) 방문진료 II</td><td>156,000</td></tr><tr><td>(3) 방문간호</td><td>81,000</td></tr></table></td></tr>
<tr><td>추진계획</td><td>1. 장애 특성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만성질환 관리, 장애 관련 건강문제 평가, 건강교육·상담 등을 통해 지속적·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필요 시 전문진료 및 검사로 연계

2.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지속관리 체계 운영
방문간호·재활·복지서비스 등 지역 자원과 특히 복지관,장애인 자립지원센터과 연계하여 건강관리 공백을 줄이고,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상태 변화에 대응함</td></tr>
</table>

4) 가정간호센터(원주사업소, 강릉사업소, 횡성사업소)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목 적</td><td>- 의료취약계층(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사람, 중증대상자, 만성노인성 질환)에 대해 재가 가정간호서비스 제공
- 급증하는 노인층의 건강실태와 장기요양 의료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td></tr>
<tr><td>운영시기</td><td>상시</td></tr>
<tr><td>대 상</td><td>만성질환자, 뇌혈관 질환자, 호스피스 환자, 기타 거동불편자 등</td></tr>
<tr><td>사업내용</td><td>간호서비스 제공: 비위관 교환, 정체도뇨관 교환, 기관지관 교환 및 관리, 욕창치료, 단순상처치료, 염증성처치, 봉합선 제거, 방관 및 요도 세척, 수액 등</td></tr>
<tr><td>비 용</td><td>-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 진료행위별 수가(치료/재료비)로 구성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20%), 희귀/중증·난치질환자(10%), 암환자(5%)</td></tr>
<tr><td>지역센터별 간호서비스 제공현황</td><td>
<table>
<tr><th>구 분</th><th>가정간호서비스 이용 요양원(25년 말 기준)</th></tr>
<tr><td>원주센터 (24개소+ 재가)</td><td>은혜요양센터, 소망요양원, 흥업요양원, 행복요양원, 평심원노인요양원, 믿음요양원, 소담 요양원, 가온요양원, 노블레스 요양원, 산고대노인요양센터, 천사요양원, 로얄요양원, 영월군노인요양원, 실버요양센터, 상애노인전문요양원, 행복의집, 행복둥지요양원, 보노마더스요양원, 상지요양센터, 가족요양원, 바른요양원, 보금자리요양원, 여름요양원, 개운통합요양원</td></tr>
<tr><td>강릉센터 (31개소)</td><td>참좋은마을요양원, 다금요양원, 강릉부모사랑, 회산부모사랑, 다솜요양원, 우리요양원, 마루요양원, 가정강릉요양원, 가애노인요양시설, 은영노인요양시설, 임영요양원, 효담요양원, 강릉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갈바리 노인 요양원, 강동요양원, 행복마을요양원, 우리시니어스요양시설, 강릉천사요양원, 강릉노인요양시설, 드림요양원, 솔향의 집, 실버하우스, 율곡요양원, 장수마을요양원, 정한요양원, 치유재활요양원, 한빛마을요양원, 강릉성심요양원, 착한사랑요양원, 옥계농협요양원, 연담요양원</td></tr>
<tr><td>횡성센터 (15개소+ 재가)</td><td>횡성매화실버요양원, 횡성군소규모요양원, 한결공동생활, 스마일카운티요양원, 아름다운 요양원, 횡성재가노인, 골든포레스트, 횡성행복마을, 목천요양원, 시애노전문요양센터, 원주축복의집, 별자리요양원, 더안심요양원 ,초원의 집, 횡성효요양원</td></tr>
</table>
</td></tr>
<tr><td>기대효과</td><td>- 건강으로 고립된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예방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제공</td></tr>
</table>

5)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촉탁의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목 적</td><td>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질 향상 및 안정화 도모</td></tr>
<tr><td>운영시기</td><td>상시</td></tr>
<tr><td>대 상</td><td>요양원</td></tr>
<tr><td>사업내용</td><td>진찰, 처방 및 건강관리</td></tr>
<tr><td>추진체계</td><td>
</td></tr>
<tr><td>촉탁의 현황</td><td>
<table>
<tr><th>원 장</th><th>담 당</th></tr>
<tr><td>공영훈</td><td>보훈요양원</td></tr>
<tr><td>강창희</td><td>산고대요양원, 천사요양원</td></tr>
</table>
</td></tr>
<tr><td>대상자수
(24년 기준)</td><td>130명(천사 50, 산고대 30, 보훈 50)</td></tr>
<tr><td>추진계획</td><td>입소자별 환자의 건강상태 및 치료에 따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td></tr>
</table>

2 의료복지 사각지대 돌봄

1) 농촌 및 시내 경계지역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 사업(NH투자증권 기탁)

구 분		내 용
목 적		- 농촌 및 시내경계지역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속적 자기 건강 관리 강화 - 지역 내 건강반장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 강화 -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건강 효율성 증대 및 건강증진서비스 전개 - 지역사회 건강증진교육을 통한 질병예방과 관리
사업내용	사회적 돌봄 서비스 구축	- 지역 내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 자치조직의 집담회 지원 - 기초 건강 지식과 응급 대처 능력 교육을 받은 마을 건강 반장 양성을 통해 의료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1차적 건강 돌봄 역할 수행 - 지역 자원 발굴 및 의료, 돌봄 협력 네트워크 구축지원 - 참여자 사례회의를 통해 필요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제공하여 질병 관리 및 합병증 예방
	맞춤형 서비스	- 방문간호, 방문재활서비스를 통한 건강 효율성 증대 - 생필품,운동보조기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 계절별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 증진 - 단순 개보수를 넘어, 전기, 가스 안전점검 및 방역 서비스 연계 - 의약품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지속적 건강기능 유지 지원
사업예산		36,400천원

2) 빈곤층 건강지원 협력(최양업토마스의집(노숙인센터), 원주시의사회 빈의자)

① 노숙인센터와 건강 예방 관리 연계 강화

구 분	내 용
목 적	노숙인센터 이용자들의 건강 예방 및 관리·증진을 통한 건강한 삶 실현
사업내용	- 입소검진(엑스레이, 소변, 혈액검사, 문진 등)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건강관리 - 질병에 따른 치료 - 예방접종을 통한 사전 감염 예방
추진계획	- 이용자에 따른 입소 검진 실시 - 고혈압, 당뇨 등 증상정도에 따른 질환 관리 지속 - 추적관리를 통한 주치의 관계 형성

② 원주시의사회 소속 “빈의자의사회” 일차 상담 창구 지속

구 분	내 용
목 적	의료비가 없어서 병을 키우고 있는 의료사각지대 이웃을 지원하여 사회적, 신체적 자립 도모
회원 의료기관	**총 26개 의료기관**(밝음의원은 일차 상담 창구 역할)

종합병원	금액(원)
종합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주의료원
병 원	원주우리병원
의 원	원주영상의학과의원, 이규남신경과의원, 홍성국신경과의원, 김남두피부비뇨기과의원, 미래산부인과의원, 연세플러스비뇨기과의원, 홍앤권이비인후과, 박규래정형외과의원, 백피부과의원, 미래산부인과의원, 우리들소아과의원, 도홍림이비인후과, 민내과, 최경훈내과, 창문외과, 좋은마음 신경정신과, 횡성중앙의원,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밝음의원
치 과	부부치과, 최영권치과
안 과	연세안과
한 의 원	경희한의원, 모아한의원

대상자	의료사각지대 건강 빈곤층
추진계획	- 일차 상담 창구 지속 - 상담 후 질병에 따른 회원기관 연계
소요예산	3,200천원

③ (균형영양먹거리 응원)모두웰 후원회(행정지원)

구 분	내 용
목 적	음식 섭취가 어려운 이웃에게 균형영양식품(유동식)을 통한 먹거리 돌봄 실현으로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
사업내용	균형영양식품(미니웰, 유동식)을 구입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
대상자	먹거리 돌봄이 필요한 조합원 및 밝음의원 환자
추진계획	대상자 발굴 대상자 영양 관리 지속 주기별 추적관리를 통한 관계 형성 지속
(현)후원액	15,700천원(25년 말 기준)

④ “건강한 삶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보탬비(후원금) 운영

구 분	내 용
목 적	조합원의 건강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주민들의 건강한 삶 추구
사업내용	고립된 이웃 진료 지원 사업 조합원 건강증진활동 지역주민 보건예방활동
대상자	조합원 및 지역주민 등
추진계획	대상자 발굴 및 선정 통합사례회의 건강 돌봄 프로그램 기획 운영
(현)후원액	5,627천원(25년 말 기준)

3 조합운영 및 관리

1)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구 분	내 용	
목 적	조합 사업 운영 및 경영에 관한 정기적 회의를 통한 경영 안정화 제고	
세부계획	운영시기	이사회 6회(격월, 긴급 안건의 경우 예외 적용) 조합활성화위원회 4회(분기별)
	회의내용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 조합 운영사항 등
소요예산	2,000천원(200천원×10회)	

2) 대의원 “소통의 날”

구 분	내 용	
목 적	조합의 주요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 임직원 및 대의원 간 친밀도를 높이고 활동 참여 및 조합 운영에 대한 관심도 제고	
세부계획	운영시기	연 1회
	주요내용	조합 주요활동내용, 중점 추진사항 등 보고 및 의견 청취
소요예산	1,500천원(1,500천원×1회)	

3) 임·직원 역량강화 워크샵

구 분	내 용	
목 적	- 임·직원을 대상으로 의료복지, 돌봄, 사회적 경제 등의 교육을 통해 의료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지식과 자긍심 제고 및 역량 강화 - 직무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는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여 업무 능력 제고 및 열린 경영 실천	
세부계획	운영시기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주요내용	역량강화 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소요예산	4,000천원(2,000천원×2회)	

4) 공생추진위원회

구 분	내 용	
목 적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시설 중심 돌봄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생활 기반 돌봄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며, 노인요양시설 추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세부계획	운영시기	상시
	주요내용	(1) 돌봄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공모사업 -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확산을 위한 참여형 캠페인 추진 (예 : 부모님 돌봄 경험 및 지역 돌봄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공모전 개최) - 조합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돌봄 이야기 발굴 (2) 조합원 참여 확대 프로그램 운영 - 조합원과 함께 돌봄의 의미를 공유하고 공동체 참여 확대 - 노인요양시설 추진에 대한 이해와 공감 형성 (3) 돌봄 모델 학습 및 사례 공유 - 노인요양시설 및 지역사회 돌봄 모델에 대한 이해 확대 - 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사례 학습
	추진방법	(1) (예시)돌봄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공모사업 -「내가 꿈꾸는 돌봄」에세이 공모전 개최 - 우수작 선정 및 시상, 소식지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한 공유 -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연계 운영 (2) (예시)조합원 참여 확대 프로그램 운영 - 조합원 대상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건강과 돌봄을 주제로 한 커뮤니티 강좌 진행 - 돌봄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소모임 활동 연계 (3) (예시)돌봄 모델 학습 및 사례 공유 - 임직원 및 조합원 대상으로 타 의료사협 사례 강의 및 간담회 개최 - 선진 돌봄 모델 사례 공유 -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공동생활 돌봄 모델 논의
소요예산	4,000천원 수기공모전(2,000천원×1식), 간담회 및 설명회 200천원(100천원×2회) 강좌 1,200천원(400천원×3회), 회의비(600천원)	

5) 대의원-임원 학교

구 분	내 용	
목 적	조합 운영에 대해 관심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조합의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대의원 및 임원의 의미와 필요성·역할·권한·책임, 조합 운영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건강한 참여 확산	
세부계획	운영시기	연 2회
	주요내용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조합 운영, 대의원의 역할 등
소요예산	3,000천원(1,500천원×2회)	

◆ 조합운영 및 관리 추진일정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O		O		O		O		O		O
대의원 “소통의 날”							O					
임직원 역량강화교육 워크샵				O							O	
공생추진위원회	O	O	O	O	O	O	O	O	O	O	O	O
대의원-임원 학교						O				O		

4 조합 활성화

1) 조합 홍보

① 조합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밴드 운영

구 분	내 용	
목 적	온라인에서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게 조합 소식·조합원 활동 안내함으로써 조합에 대한 관심 향상 도모	
세부계획	운영시기	상시
	주요내용	조합 소식 및 조합 활동 상시 공지 및 안내

② 조합 홍보 활동

구 분	내 용	
목 적	직접적인 대면 홍보 활동을 통한 조합 및 조합 사업소 홍보	
세부계획	운영시기	연 2회
	주요내용	- 장소: 5일장(원주 풍물시장 등)인구 밀집 지역 - 대상: 조합원 및 지역주민 - 활동내용: 홍보물 배포를 통한 조합 홍보 - 추진방법: 대의원 및 임직원이 조합 조끼를 착용 후, 인구 밀집 지역에 방문하여 조합 홍보물 배포 등 조합 홍보
소요예산	1,000천원(500천원×2회)	

2) 원주건강스토리

구 분	내 용	
목 적	- 신체, 정서, 인지, 마음, 생활 등의 주제의 강좌를 통하여 조합원 중심의 건강 공동체를 형성하고 조합원 간 신뢰 형성을 통한 조합원 활동 활성화 도모 - 다양한 강좌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 및 건강에 대한 관심 향상	
세부계획	운영시기	3~12월

<table>
<tr><td></td><td>주요내용(안)</td><td>※ 회차별 심화 과정 진행 가능.
<table>
<tr><th>분류</th><th>분류</th><th>교육내용(예시)</th></tr>
<tr><td rowspan="2">신체 돌봄 클래스</td><td>응급처치교육</td><td>·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생활 속 응급처치
: 약물중독, 열사병, 저혈당, 질식(하임리히법) 등</td></tr>
<tr><td>구강교육</td><td>- 구강 관련 교육(노년기 및 성인)</td></tr>
<tr><td rowspan="2">정서·인지 돌봄 클래스</td><td>치매예방교육
(두뇌놀이터)</td><td>뇌강화훈련
(사전치매선별검사, 음악, 미술 등의 활동을 통한 인지 프로그램)
*원주밝음신협과 협력사업으로 진행</td></tr>
<tr><td>노인건강돌봄 지도사 양성교육</td><td>- 건강 및 돌봄 관련 교육
-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민간자격증 취득
*원주밝음신협과 협력사업으로 진행</td></tr>
<tr><td>마음 돌봄 클래스</td><td>PTC자기돌봄 교육</td><td>- 자기돌봄의 필요성, 자기돌봄의 방법, 의사소통 등</td></tr>
<tr><td>생활 돌봄 클래스</td><td>1인가구 식생활 교육</td><td>건강한 식생활 교육(1인 가구 등)</td></tr>
</table></td></tr>
<tr><td>소요예산</td><td colspan="2">12,000천원(12,000천원×1식)</td></tr>
</table>

3) 조합원 스킨십 강화

① 신규조합원 환영회(새싹환영회)

구 분	내 용	
목 적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조합 활동 참여 증진 및 조합과의 관계 향상 도모	
세부계획	운영시기	연 2회
	주요내용	신규조합원과 조합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기존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협동조합 소개(미션과 비전, 조합원 권리와 의무, 진행 사업, 조합원 가입 혜택 등), 체험 행사, 소정의 선물제공 등 진행
소요예산	600천원(300천원X2회)	

② 조합원 만남의 날

구 분	내 용	
목 적	조합의 주요 활동 내용 공유와 소통을 통한 조합원 간 친밀감 향상 도모 및 조합 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도 제고	
세부계획	운영시기	연 1회
	주요내용	- 조합 주요 활동 내용 공유 및 소통 -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 조합원 건강활동 및 친목 활동
소요예산	2,000천원(2,000천원×1회)	

4) 조합원 건강소모임

① 똑똑건강반 3기

구 분	내 용	
목 적	- 조합원의 만성질환예방 및 신체·정신 건강증진 - 조합원 간 지지체계 형성과 지속적인 건강증진 활동의 습관화를 통한 건강자치력 향상 - 자발적인 건강증진 활동 참여로 조합원 간 관계 증진을 통한 조합과의 관계향상 및 공동체 의식 향상 도모	
세부계획	운영시기	3월~11월
	대 상	조합원(모임별 최소 5명~10명)/ 총 10개 팀 선발
	주요내용	-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증진 관련한 활동을 하는 건강소모임 예) 맨손체조, 등산, 자전거, 탁구, 독서, 토론, 반찬만들기, 텃밭활동 등 - 필수 활동: 연 활동 사전, 사후검사(인바디 측정, 혈압, 혈액), 건강상담(건강정보 안내 및 상담) 총 2회 실시, 건강반 간담회 등 관련 행사 참석, 정기적인 활동
소요예산	10,000천원(200천원×1년×50명) *모집 인원 수에 따라 예산 상이	

② 느림보 산악회

구 분	내 용	
목 적	- 조합원의 신체·정신 건강증진 - 조합원 간 교류로 친밀감과 유대감 형성 - 정기적인 건강활동을 통한 소속감 강화	
세부계획	운영시기	3월~12월 (매월 3째주 토요일)
	대 상	조합원
	주요내용	둘레길 걷기, 등산(격월)
소요예산	1,000천원(100천원×10회)	

5) 강원의료복지사협 자원봉사단

구 분	내 용	
목 적	- 지역주민의 건강·복지 증진과 마을돌봄을 통한 지역안전망 강화 - 자원봉사참여로 소속감 향상 및 지역사회 역할수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 -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마을 내 서로 돌봄 문화 확산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의 효율성 증진 및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	
세부계획	운영시기	상시
	주요내용	- 재능기부 자원봉사(교육, 활동 등) - 자원봉사단 - 지역 유관기관과 자원봉사 협력 및 연계
	추진방법	- 자원봉사자 모집 및 등록(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모집 재능/일반 자원봉사자 모집→ 사전 신청자 확인→ 맞춤 자원봉사활동 배정 및 사전 교육→ 자원봉사활동→ 인증 및 관리 - 자원봉사자 간담회 - 자원봉사자 필요물품지원
소요예산	3,000천원(3,000천원×1식)	

6) 찾아가는 밝음건강강좌

구 분	내 용	
목 적	- 찾아가는 강좌를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필요성 인식 및 건강증진·질병 예방 - 접근성이 향상된 강좌를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필요성 인식, 건강증진, 질병 예방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 확산	
세부계획	운영시기	유관기관 요청 시
	주요내용	건강강좌
소요예산	1,500천원(1,500천원×1식)	

5 노인일자리 사업단 “G-care 매니저”(마을건강활동가)

1) 교육 및 사례공유회

구 분	내 용	
목 적	- 이웃의 건강을 살피는 작은 발걸음‘G-care 매니저’ 교육 및 사례공유를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확산 도모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 강화 및 G-care 매니저 간 상호학습 증진	
세부계획	운영시기	월 2회(3~11월)
	대 상	G-care 매니저 120명
	주요내용	시기별 보건교육 및 정보교환, 마을활동 공유 및 활동점검, 활동일지 점검 등
	비고	원주시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소요예산	1,000천원 (100천원×10회) ★보조금 예산	

2) 역량강화교육

구 분	내 용	
목 적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 진행으로 돌봄의 질 향상 도모	
세부계획	운영시기	연 2회(교육당, 2회기 진행)
	대 상	26년 G-care 매니저 중, 교육참여 희망자
	주요내용	- 현장에서 활용하면 좋은 활동 관련 교육 예) 마음돌봄카드 활동, 다양한 건강체조, 인지활동, 스마트폰 활용법 등
소요예산	1,000천원(250천원×4회) ★보조금 예산	

3) 활동물품지원

구 분	내 용	
목 적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 대여를 통한 대상자의 건강돌봄자치력 향상	
세부계획	운영시기	4~11월
	대 상	26년 G-care 매니저
	주요내용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건강 물품, 인지활동교구, 도서 등을 일정기간 대여
소요예산	-	

6 지역사회 연계 협력

1)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원주시 복지관 등)

구 분	내 용	
목 적	- 이웃과 함께하는 원주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구현 - 지역자원을 활용한 민·관·학 협력 케어 시스템 정착	
세부계획	운영시기	연중
	주요내용	- 병원에서 가정으로 통합 사회서비스 제공 (방문형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 이웃과 함께하는 케어 전달체계 구축 - 원주형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민·관·학 협력 환경 조성 - 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대상 의료돌봄 교육
	추진방법	복지관 및 유관기관 (가톨릭, 밥상공동체, 명륜, 원주,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

2)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원주시청 생활보장과)

구 분	내 용	
목 적	퇴원 가능한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세부계획	운영시기	연중
	주요내용	- 환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계획(케어플랜)을 수립 - 대상자의 상태 변화, 투약 여부, 신규 질환 등 모니터링 및 의료서비스 지원
	추진방법	- 원주시 생활보장과 · 대상자 발굴 및 연계 · 주거 개선이나 냉난방 지원 등 자원 연계

3) 유관기관 간담회

구 분	내 용	
목 적	- 복지관,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과 개별 간담회를 마련하여 조합의 활동 소개 및 지역사회욕구 반영 - 지역사회 내 긴밀한 네트워크 구성하여 조합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협력 증진	
세부계획	운영시기	연 2회
	주요내용	지역사회 욕구 조사, 연계 및 협력, 활동 소개
소요예산	400천원(200천원×2회)	

4) 재생에너지 공익사업 활동

구 분	내 용	
목 적	- 지역사회 에너지 복지 증진과 재생에너지의 생산·이용 확대	
세부계획	운영시기	연중
	주요내용	- 공공주차장 등 공공부지 태양광 사업 참여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냉난방비, 태양광 전기 제공 등) - 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의 의료·복지 공익사업에 재투자 - 조합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기후·에너지 전환 캠페인
소요예산	필요시	

◆ 2026 조합 활성화 추진계획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조합홍보	조합 홈페이지 및 블로그 운영	상시											
	조합 홍보 활동			O			O			O			O
원주건강스토리	응급처치교육				O						O		
	구강교육											O	
	치매예방교육(두뇌놀이터)						O	O					
	노인건강돌봄지도사				O	O					O	O	
	PTC 자기돌봄									O	O		
	1인가구 식생활 교육					O	O						
신규조합원 환영회(새싹환영회)						O							O
조합원 만남의날												O	
대의원-임원 학교							O						
찾아가는 밝음건강 강좌		유관기관 요청 시											
건강소모임	똑똑건강반 3기			O	O	O	O	O	O	O	O	O	
	느림보 산악회			O	O	O	O	O	O	O	O	O	
G-care 매니저 교육 및 사례공유회				O	O	O	O	O	O	O	O	O	
G-care 매니저 역량강화교육							O		O				
G-care 매니저 활동물품지원					O	O	O	O	O	O	O	O	
강원의료복지사협 자원봉사단		상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상시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상시											
유관기관 간담회							O				O		
재생에너지 공익사업 활동					O	O	O	O	O	O	O	O	O

2026년 수지예산(안)

1.예산총칙

제 1 조 : 본예산의 회계연도는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 2026년 총 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

▶ **수 입 총 액** : 2,197,565,000원
▶ **지 출 총 액** : 2,213,661,000원
▶ **수 지 차 액** : -16,096,000원
▶ **영업외수입** : 1,118,113,000원
▶ **영업외비용** : 1,102,017,000원
▶ **당기순이익** : 0원

제 3 조 : 이 예산의 수입 및 지출 명세는 별첨 수지 예산서와 같다.

제 4 조 : 이 예산의 목간 전용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 예산의 항간 전용과 예비비의 사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 : 사업량의 증감, 세율변동, 급격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예산 조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 할 수 있다.

제 7 조 : 추가경정 예산은 확정된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집행하고 차기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2026년 예산(안)

장	관	항	목	2026년 예산액	2025년 집행액	예산 세부 내역
1. 매출액				2,197,565,000	2,055,678,090	
	의료사업부			2,190,035,000	1,938,544,300	
		밝음의원		425,779,000	411,347,410	전년 대비 8% 상향
			진료수입	226,486,000	209,709,100	
			진료수입(비급여)	127,576,000	118,125,370	
			건강검진수입	6,448,000	5,970,090	
			촉탁의(계약의)	42,001,000	56,000,470	전년 대비 25% 감소
			기타수입	23,268,000	21,542,380	
			장애인의료비	2,219,000	2,053,950	
			금연지원금	886,000	819,710	
			예방접종	20,163,000	18,668,720	
		재택의료센터		630,884,000	447,796,270	
			재택의료시범사업	437,871,000	268,493,430	110명×331,720원×12개월
			왕진	70,005,000	64,818,980	전년 대비 8% 상향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115,054,000	106,531,210	전년 대비 8% 상향
			기타수입	7,954,000	7,952,650	전년 동일
			의사소견서	7,768,000	7,767,230	
			간호지시서	186,000	185,420	
		가정간호		1,133,372,000	1,079,400,620	전년 대비 5% 상향
			원주센터	475,523,000	452,878,310	
			강릉센터	419,182,000	399,220,510	
			횡성센터	238,667,000	227,301,800	
	통합돌봄사업본부			0	109,603,790	
		재가장기요양수입		0	104,737,490	2025/06까지 운영
			방문요양	0	102,702,490	
			방문목욕	0	0	
			기타수입	0	2,035,000	
		기타돌봄사업수입		0	4,866,300	
	조합 교육비 수입			7,530,000	7,530,000	자기돌봄(PTC)교육 등
2. 매출원가						
3. 수입(매출총이익)				2,197,565,000	2,055,678,090	
4. 지출				2,213,661,000	2,147,738,054	
	관리비			2,145,066,000	2,093,450,914	
		인건비		1,516,036,000	1,533,869,090	급여, 상여, 연차수당, 퇴직금
			임원보수	9,800,000	4,850,000	(이사장)상여금 (부이사장)비상임이사활동보수
			직원급여(의원및조합)	1,356,105,000	1,261,340,550	
			의원(6명)	257,357,000	252,710,370	
			재택의료(5명)	320,547,000	280,187,590	신규 사회복지사 1명(9개월)
			(인건비지원)	-20,200,000	-16,624,800	(농촌사업지원)1,300천원×10회 (사회적기업일자리지원)900천원×8회

장	관	항	목	2026년 예산액	2025년 집행액	예산 세부 내역
			가정간호(6명)	638,861,000	609,048,200	
			조합(3명)	166,740,000	136,019,190	신규 사무직 1명(9개월)
			(인건비지원)	-7,200,000		(사회적기업일자리지원)900천원×8회
			노인일자리지원사업단(121명)	983,369,000	0	보조금예산반영 (담당자1명(상여및퇴직금포함),참여자120명)
			(인건비지원)	-983,369,000	0	
			직원급여(재가방문)	0	120,193,930	2025/06까지 운영
			시설장(1명)	0	17,500,000	
			사회복지사(1명)	0	15,280,000	
			요양보호사(12명)	0	87,413,930	
			직원상여	13,200,000	13,600,000	22명×200천원×3회(설날, 여름, 추석)
			퇴직급여(연금)	136,931,000	133,884,610	인건비총액(임원제외)×(1÷12)+20%(연중 가입)
		일반경비		322,425,000	305,979,921	
			복리후생비	158,295,000	139,251,675	
			4대보험료	191,190,000	108,041,080	인건비×8%(2025년 실제업체부담 요율적용)
			(4대보험료지원)	-57,105,000	0	(노인일자리지원사업)보조금예산반영
			임직원 식음료대 및 회식	10,080,000	13,502,980	24명×35천원×12회
			임직원 선물 (명절, 직원포상 등)	7,870,000	10,075,320	(명절)62명×30천원×2회 (직원생일선물)24명×100천원 (직원포상)250천원×7명
			임직원 진료비	3,960,000	4,087,000	22명×15천원×12회
			임직원 경조사비	1,000,000	1,393,700	전년 수준
			임직원 피복비	1,000,000	922,910	전년 수준
			기타 복리후생비	300,000	1,228,685	전년 수준(강창희원장님 정기주차비 제외)
			여비교통비	3,700,000	3,620,881	전년 수준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6,000,000	6,196,100	전년 수준 (이사장활동비)300천원×12회 (거래처식사)100천원×12회 (거래처경조사)100천원×12회
			통신비	6,548,000	4,517,510	★사무국 이전 및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추가
			전화 및 인터넷	3,600,000	2,437,100	(전화 20회선,인터넷 3회선)300천원×12회
			업무용 휴대폰	1,152,000	969,360	8대×12천원×12회
			기타 통신비	1,796,000	1,111,050	(각종우편)800천원 (무선결제단말기)3대×11천원×12회 (휴대용와이파이)2개×25천원×12회
			수도광열비	14,700,000	7,275,853	★사무국 이전 관련 경비 추가
			전기요금	14,400,000	6,997,930	1,200천원×12회
			상하수도요금	300,000	277,923	25천원×12회
			세금과공과	300,000	278,750	(법인차량관련)200천원 (기타각종세금)100천원
			감가상각비	27,699,000	29,186,436	고정자산관리대장 참고
			지급임차료	18,768,000	6,126,500	★사무국 이전 관련 경비 추가
			사무실 임차료	10,560,000	3,520,000	(마중)880천원×12회
			복합기 임차료	6,720,000	2,112,000	2대×280천원×12회

장	관	항	목	2026년 예산액	2025년 집행액	예산 세부 내역
			기타 임차료	1,488,000	494,500	(정수기)2대×33천원×12회 (공기청정기)2대×29천원×12회
			수선비	0	0	전년 수준
			보험료	3,640,000	4,004,320	법인차량 보험료, 배상책임보험료 등
			법인차량보험	2,300,000	2,299,390	전년 수준(3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1,240,000	1,607,830	(의사)2명×280천원 (간호사)4명×170천원
			기타 보험료	100,000	97,100	(이행보증보험료 등)
			차량유지비	37,380,000	35,647,983	법인차량 정기주차료, 유류비 등
			법인차량정기주차	4,500,000	4,380,000	3대×125천원×12회
			법인차량 유류비	29,100,000	28,903,342	(재택의료센터운행차량:법인)3대×75천원×12회 (가정간호센터운행차량:자가)5대×440천원×12회
			기타 차량유지비(타이어 교체 등)	3,780,000	2,364,641	(재택의료센터운행차량:법인)3대×30천원×12회 (가정간호센터운행차량:자가)5대×45천원×12회
			운반비	2,400,000	2,506,600	(배송료)200천원×12회
			교육훈련비	2,000,000	12,922,230	(각종보수교육 등)2,000천원
			도서인쇄비	828,000	977,500	전년 수준
			신문구독료	528,000	528,000	(3사)44천원×12회
			기타 도서인쇄비(명함 제작 등)	300,000	449,500	(명함)30천원×5건 (도서)100천원 (도장및명판)50천원
			소모품비	11,000,000	13,510,242	(각종소모품)4,500천원 (복합기소모품)3,500천원 (각종문구용품)1,200천원 (컴퓨터&주변기기)1,000천원 (자판기커피관련)800천원
			지급수수료	19,167,000	24,948,306	
			프로그램사용료	2,357,000	3,257,159	(더존)1,001천원×1회 (MRM)80천원×12회 (뷰텍)33천원×12회
			법인결산수수료	2,640,000	2,513,500	전년 수준
			카드가맹점수수료	3,000,000	3,051,273	전년 수준
			재가방문센터관련	0	2,200,480	
			고객용 주차 관련 수수료	1,440,000	1,596,500	120천원×12회
			문자전송 포인트 충전 수수료	2,860,000	2,860,000	715천원×4회
			퇴직연금운용수수료	1,350,000	1,338,194	전년 수준
			홈페이지관리수수료	370,000	363,000	전년 수준
			기타 지급수수료(송금수수료 등)	5,150,000	7,768,200	(공증사무소)1,000천원×1회 (에스원)77천원×12회 (법무사사무소)700천원×1회 (의료폐기물처리)50천원×12회 (공익법인결산공시관련)440천원×1회 (CMS자금이체서비스)28천원×12회 (밝음의원소독)30천원×5회 (기타각종수수료)1,000천원

장	관	항	목	2026년 예산액	2025년 집행액	예산 세부 내역
			광고선전비	5,000,000	9,872,500	전년 대비 50% 차감
			대손상각비	0	-57,444	
			건물관리비	5,000,000	4,970,966	전년 수준
			잡비	0	223,013	
		의료경비		306,605,000	253,601,903	
			양방의약품비	197,103,000	162,627,320	의료사업매출액×9%
			양방의료소모품비	65,701,000	57,937,307	의료사업매출액×3%
			외주용역비	43,801,000	33,037,276	(혈액검사)의료사업매출액×2%
	조합사업비			62,220,000	54,287,140	
		조직활동비		52,560,000	45,238,340	전년 수준
			이사회 및 조합활성화위원회	2,000,000	2,786,900	(이사회)200천원×6회★참석수당 포함 (조합활성화위원회)200천원×4회
			대의원 소통의날	1,500,000	3,024,000	1,500천원×1회
			대의원 임원학교	3,000,000	0	1,500천원×2회
			임직원 역량강화워크샵	4,000,000	2,620,230	2,000천원×2회
			임직원 역량강화교육	0	287,000	
			임직원 회의	3,840,000	3,431,550	(사업소별월례회의등)80천원×4개소×12회
			공생추진위원회	4,000,000	4,669,100	(간담회및설명회)100천원×2회 (강좌)400천원×3회 (수기공모전)2,000천원×1식 (회의비)600천원
			원주건강스토리	12,000,000	12,841,820	(각종의료및돌봄강좌)12,000천원×1식
			조합원 스킨십 강화	2,600,000	3,007,080	(신규조합원환영회)300천원×2회 (조합원만남의날)2,000천원×1회
			건강소모임	11,000,000	4,958,370	(똑똑건강반)200천원×50명 (느림보산악회)100천원×10회
			자원봉사단 활동	3,000,000	66,600	3,000천원×1식
			찾아가는밝음건강강좌	1,500,000	3,107,470	(유관기관요청시)1,500천원×1회
			유관기관 간담회	400,000	0	200천원×2회
			대의원 총회	3,720,000	3,478,750	(식대및다과)15천원×80개 (자료집)15천원×80부 (기념품)11천원×120개
			건강반장활동	0	959,470	
		연대활동비		9,660,000	9,048,800	
			한국의료복지사협연합회	6,000,000	5,098,800	600천원×10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840,000	1,140,000	70천원×12회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240,000	330,000	20천원×12회
			강원사회적경제연대회의	1,200,000	1,200,000	100천원×12회
			한국재택의료협회	840,000	840,000	70천원×12회
			기타 협회비	540,000	440,000	(문화의거리상인회)20천원×12회 (빈의자의사회)200천원×1회 (기타)100천원

장	관	항	목	2026년 예산액	2025년 집행액	예산 세부 내역
	예비비			6,375,000	0	
5.영업이익				-16,096,000	-92,059,964	
6.영업외수익				1,118,113,000	101,263,531	
	외부사업수입(조직활동비)			1,083,082,000	29,639,201	
		노인일자리지원사업		1,046,682,000	0	보조금예산반영
		농촌건강지원사업		36,400,000	29,639,201	전년 수준
	기타수입			35,031,000	71,624,330	
		이자 및 배당금수익		3,441,000	5,070,190	(정기예탁금)15,000천원×연2.23%★모두웰원 (사회적예탁금)20,000천원×연2.50% (정기적금)24,000천원×연4.1% (보통예금)250천원 (배당금)40천원
		후원금		3,840,000	21,326,324	(모두웰후원)195천원×12회 (기타후원)125천원×12회
		각종 지원금		7,750,000	21,624,180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	0	4,050,000	신청자격에서 제외
			고용안정장려금 등	6,750,000	14,574,180	(육아휴직사업주지원)3,150천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3,600천원
			기타 지원금	1,000,000	3,000,000	
		잡이익		20,000,000	23,603,636	전년 수준
7.영업외비용				1,102,017,000	42,029,442	
	외부사업지출(조직활동비)			1,088,082,000	29,639,201	
		노인일자리지원사업		1,046,682,000	0	보조금예산반영
		노인일자리지원사업(자부담)		5,000,000	0	발대식, 역량강화교육 관련 경비
		농촌건강지원사업비		36,400,000	29,639,201	전년 수준
	기타지출			13,935,000	12,390,241	
		이자비용		2,635,000	1,125,222	강원상승(SE)융자사업 이자
		기부금		2,600,000	2,599,950	전년 수준
		지역복지사업비		8,700,000	8,615,090	(빈의자의사회)3,200천원 (모두웰후원회)2,500천원 (기타)3,000천원
		유형자산처분손실		0	49,979	
		잡손실		0	0	
8.법인세차감전이익				0	-32,825,875	
9.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0	131,033,991	수익 계정
10.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0	0	비용 계정
11.법인세등				0	0	
12.당기순이익				0	98,208,116	

제5호 의안 : 차입금 최고한도액 승인의 건

■ 관련 근거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0.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 의결 주문 사항

- 2026년 조합의 신규 차입금 최고한도액(안)을 20억 원으로 한다.

제6호 의안 :
2025년 (탈퇴, 제명, 감좌) 조합원 출자금 환급 및 지분양도, 출자금 변동 승인의 건

■ **관련 근거**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20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의결 주문 사항**

- 2025년 1월~12월까지 탈퇴(제명)조합원 명단 및 출자금 환급 승인
- 2025년 조합원 지분(사망자)을 가족에게 양도 승인
- 2025년 말 기준 출자금 변동 승인

■ 2025년 탈퇴 조합원 명단

- 탈퇴 조합원 14명, 제명 조합원 1명, 지분양도 1명
- 출자금 환급금 1,100,000(탈퇴(2명(100,000원)은 조합 후원), 제명)

■ 탈퇴 : 14명

NO.	접수일	조합원명	조합원번호	금액	비고
1	2025/04/09	김*경	200017	50,000	이용안함
2	04/30	나*연	230015	50,000	이용안함
3	2025/05/19	정*호	30171	100,000	이용안함
4	05/27	이*영	110367	130,000	거주지 이전
5	2025/06/04	함*진	170019	50,000	거주지 이전
6	06/11	길*하	230100	50,000	이용안함
7	2025/08/25	한*용	250019	50,000	사망
8	2025/10/02	전*미	160028	50,000	거주지 이전(전액 기부)
9	2025/10/15	양*수	230047	50,000	사망
10	2025/11/06	이*순	250045	50,000	사망
11	11/28	최*순	30159	320,000	거주지 이전
12	2025/12/16	김*심	220029	50,000	거주지 이전
13	12/17	윤*임	140132	50,000	거주지 이전
14	12/30	김*규	250050	50,000	사망(전액 기부)
합계				1,100,000	

■ 제명조합원(환급), 감좌 신청 : 1명 (제명(환급) 1명+ 감좌 신청 0명)

NO.	접수일	조합원명	조합원번호	금액	비고
1	2025/02/12	이*심	70062	30,000	제명조합원(환급), 거주지 이전
합계				30,000	

■ 조합원 지분 양도 : 1명 (사망 및 기타 사유)

조합원 지분양도 현황							
NO.	양도일	양도 조합원명	조합원번호	양도금액	양수 조합원명	관계	비고
1	2025/03/20	이*훈	250004	50,000	심재분	모	조합 미이용

■ **2025년말 출자금 현황** (2024년말 출자금 총액 : 271,956,874원)

(단위:원)

구분	출자액		반환액	잔액	출자금총액
	신규	증좌			
2024년	4,470,000	2,520,000	30,040,000	-23,050,000	271,956,874
1월	460,000	920,000	0	1,380,000	273,336,874
2월	1,210,000	70,000	0	1,280,000	274,616,874
3월	200,000	170,000	0	370,000	274,986,874
4월	250,000	110,000	100,000	260,000	275,246,874
5월	300,000	120,000	230,000	190,000	275,436,874
6월	1,050,000	110,000	100,000	1,060,000	276,496,874
7월	300,000	120,000	0	420,000	276,916,874
8월	220,000	120,000	50,000	290,000	277,206,874
9월	1,170,000	200,000	0	1,370,000	278,576,874
10월	660,000	130,000	100,000	690,000	279,266,874
11월	2,800,000	70,000	370,000	2,500,000	281,766,874
12월	2,280,000	150,000	150,000	2,280,000	284,046,874
누계	10,900,000	2,290,000	1,100,000	12,090,000	

※ 24년 대비 25년 출자금 총액 : 4.1% 증가

제7호 의안 : 기타 의안

■ 관련 근거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건 제안 배경

-

-

■ 의결 주문 사항

-

-

<부 록>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혁

2001. 10. 30	**원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결성**
2001. 12. 15	**발기인대회**
2002. 5. 4	**법인창립총회**
2002. 6. 5	**법인설립인가(강원도 제7호)**
2002. 11. 16	**밝음의원, 밝음한의원 개원(원주시 중앙동 122번지)**
2003. 2. 15	**제1차 정기총회 개최**
2003. 3	일본오사카 의료생협 견학, 제1회 보건학교 운영
2003. 6	원주협동조합운영협의회(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가입, 상지대학교와 교류협력 체결,
2003. 6	한국의료생협연대(현,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가입
2004. 6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재가케어복지사업 실시**
2005. 1	호저지역 농민 보건의료환경 조사
2005. 3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교육문화워커즈'멋살림'출범**
2005. 7	사회적적일자리 교육문화워커즈 멋살림 '어린이방과후학교'운영
2006. 3.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경로당사업 '농촌어르신 행복찾기' 시작**
2006. 4.	실업극복지원사업 '지역주민 조사사업' 실시
2007. 10. 29	**노동부 제 2007-13호로 사회적기업 인증**
2008. 2. 13	**밝음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원도 제10호로 인가 받음**
2008. 3	**2008년 위-스타트 강원도 마을 신규선정 지역으로 확정**
2008. 5	**재가장기요양기관 설립**
2008. 7	재가장기요양기관 "길동무" 서비스 개시
2008. 9	밝음의원이 영유아건강검진기관으로 인가 받음
2009.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원주주거복지센터 운영**
2010. 2. 26	**제8차 정기총회(제2차대의원 총회)**
2010. 4	국민건강보험 지정 건강검진기관 개설
2011. 2. 25.	**제9차 정기총회(제3차대의원 총회)**
2011. 3. 27.	우리동네의원 개원(제2진료소, 단구동)
2012. 3. 26.	**제10차 정기총회(제4차대의원 총회)**
2013. 3. 4.	밝음의원 재개원(곽병은, 임동란 원장 부임)
2013. 3. 28.	**제11차 정기총회(재5차대의원 총회)**
2014. 3. 21.	**제12차 정기총회(재6차대의원 총회)**
2014. 5. 4.	조합 창립 12주년
2014. 6. 11.	**강원도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선정**
2014. 7. 16.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환/창립 총회**
2014. 10. 30.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2015. 2. 27.	**제1차(통합13차) 대의원총회 개최**
2015. 4.	우리동네의원 지점 폐원
2015. 6. 1.	장애인주치의사업, 농촌지역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사업 전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2016. 3. 10.	**제2차(통합14차) 대의원총회 개최(제2기 임원 선출)**
2016. 5. 15.	농촌지역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사업 전개-2차년도 (NH투자증권 임직원지정기탁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2016. 10. 1.	조합원 작품 전시 밝음갤러리 오픈
2016. 10. 21	**2016 Making More Health 체인지메이커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및 아쇼카재단 주관)**
2016. 12. 20.	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국세청 등록

2017. 3. 15.	**제3차(통합15차) 대의원총회 개최**
2017. 6. 28.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사회적기업 10주년 우수 사회적기업 공로 인정)**
2018. 3. 15.	**조합 제4차(통합 16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 사협 제3기 임원(이사7명, 감사2명)선출 임원 및 대의원 임기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2018. 5. 14.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등록**
2018. 7. 20.	아산사회복지대단 농어촌 건강복지 증진사업 선정(2,000만원)
2018. 12. 31.	조합 3기 대의원 110명 선출 공고
2019. 3. 20.	**조합 제5차(통합17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2019. 11. 21.	커뮤니티케어 관련 조합 특강 및 방문진료사업 간담회 개최
2019. 12. 27.	보건복지부 왕진시범사업 참여기관 등록 및 사업 개시
2020. 5. 7.	**조합 6차(통합18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코로나19바이러스 유행 시기)**
2020. 5. 18.	춘천 소양강댐 수몰지역 방문의료 기반 통합돌봄 시범사업 개시(1억1천만원)
2020. 6. 1.	원주시, 강원도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참여(방문진료 및 건강반장활동가 사업 담당)
2020. 9. 1.	2020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협의체 MOU체결(강원도원주의료원)
2020. 11. 1.	원주시 보건소, 만7세 아동 알레르기 검사 위탁 수행(3,600만원)
2021. 2. 1.	**밝음가정간호센터 개소(장설자, 백지은)**
2021. 3. 25.	**조합 7차(통합19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코로나19바이러스 지속)**
2021. 7. 23.	사회백신 프로젝트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선정(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3,000만원)
2021. 8. 11.	제2진료소 “우리동네주치의 의원” 개원
2021. 9. 8.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업무협약(조합, 원주시, 강원도사회서비스원)
2021. 12. 28.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원주시치매안심센터)
2021. 12. 31.	조합 4기 대의원 100명 선출 공고
2022. 1. 26	춘천 소양강댐 수몰지역 방문의료 기반 통합돌봄 시범사업 개시(1억1천만원)
2022. 2. 4.	“코로나 19”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지정(집중관리군)
2022. 3. 24.	**조합 8차(통합20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코로나19바이러스 지속)**
2022. 3. 29.	비전위원회(2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2022. 5. 31.	제2진료소 “우리동네주치의 의원” 휴원
2022. 6. 13.	**코로나 19 유공 포상 표창패 수상**(강원도지사.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
2022. 6. 23.	**조합 20주년 기념 행사 및 포럼**(상지대학교 본관 5층)
2022. 9. 1.	사회백신프로젝트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2차년도 사업 시작(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2. 11. 30.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보건복지부, 강원도 최초)**
2022. 12. 1.	농촌지역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사업 전개-8차년도 (NH투자증권 임직원지정기탁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2023. 3. 28.	**조합 9차(통합21차) 정기대의원총회개최**
2023. 4. 11.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2023. 7. 01.	**제11회 협동조합의 날 “대통령상” 표창**
2023. 12. 31.	**강원도지사 표창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활성화” 공로**
2024. 3. 21.	제10차(통합 22차)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2024. 5. 03.	**조합 이전 개소식 개최(원주밝음신협 5층 대강당)**
2024. 7. 23	재가장기요양기관 “길동무”→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명칭 변경(기관기호 2번)
2024. 8. 5.	일상돌봄서비스(재가돌봄) 사업 시작(바우처 사업, 6개 기관 협업)
2024. 8. 30.	2024 사회적경제컴퍼니 사회적책임부문 최우수상 수상
2024. 11. 22.	2024 원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 관 학 협력 우수사례” 대상 수상
2024. 12. 27.	조합 제5기 대의원 100명 선출 공고
2025. 03. 13.	제11차(통합23차)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2025. 07. 31.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폐원 (구)재가장기요양기관 길동무)
2025. 11. 27.	202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규 수행기관 선정(120명, G-care매니저)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5기 대의원명단(100명)

(임기 3년, 25. 1. 1 ~ 27. 12. 31)

△**가선거구(문막읍, 귀래·부론면, 횡성군) : 3명** 노혜정, 원순아, 도경숙
△**나선거구(우산동, 호저·지정면) : 11명** 이기영, 천혜란, 신승훈, 박혜진, 정종숙, 양승완, 이현주, 김태성, 이인예, 용정순, 노윤배
△**다선거구(태장1·2동, 중앙·일산·원인동, 원주 외 지역) : 26명** 이도식, 백송희, 구경모, 전미선, 원진숙, 변현정, 조일구, 김은영, 김현경, 신옥경, 권누리, 안의현, 정연우, 박노광, 김덕연, 이창호, 지숙현, 최정환, 안순모, 변상훈, 고보경, 이용준, 이용희, 김종희, 원상호, 이상훈
△**라선거구(학성·단계·무실동) : 11명** 방서혁, 임지헌, 장성면, 고준영, 김현희, 심연옥, 우순자, 박덕길, 송명자, 김은주, 권효정
△**마선거구(단구동) : 9명** 조세훈, 염은경, 조성희, 김유미, 최혁진, 이영옥, 이창희, 하태화, 양정열
△**바선거구(반곡관설·행구동, 신림·소초·흥업·판부면) : 26명** 김한태, 윤병하, 공영훈, 안진구, 이윤승, 김선기, 장동성, 조주희, 이광희, 김재중, 목광균, 김동필, 허유정, 김민희, 김은화, 서연남, 이강록, 문병선, 제현수, 차윤정, 이경희, 임종호, 조미화, 김경옥, 김연화, 이현귀
△**사선거구(명륜1·2동, 개운·봉산동) : 14명** 김달현, 강창희, 박준영, 손종하, 정용호, 김서현, 이병춘, 정미란, 구혁, 장동영, 김은화, 최효심, 하종우, 신명자

2025년 SVI(사회적가치지표) 측정결과보고서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보고서

1. 기업 개요

기업명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명**	이광희
사회적기업유형	인증 사회적기업	**설립일**	2002-06-20
주업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자등록번호**	224-82-07605
'24년 매출액	1,865,351,980원	**기업규모**	☑ 중기업 ☐ 소기업
인증(지정)번호	제2007-013호	**사회적목적**	혼합형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85 (중앙동) 4층		

2. 측정 결과

측정 지표	배점	점수
1. 사회적가치추구여부	2	2
2. 사회적성과관리체계구축여부	5	5
3. 사업활동의사회적가치지향성	15	14
4. 사회경제적기업과의협력수준	5	5
5. 지역사회와의협력수준	5	5
6. 사회적환원노력도	10	10
7. 참여적의사결정비율	5	5
8. 근로자임금수준	8	8
9. 근로자역량강화노력	5	3
10. 고용성과	10	6.4
11. 매출성과	10	7.6
12. 영업성과	5	4.5
13. 노동생산성	5	5
14. 혁신노력도	10	10
총점	**100**	**90.5**
평가등급	**탁월**	

※ 등급기준: (탁월) 90점 이상, (우수) 75점 이상~90점 미만, (양호) 60점 이상~75점 미만, (미흡) 45점 이상~60점 미만, (취약) 45점 미만

측정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 종합평가

귀사의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결과는 탁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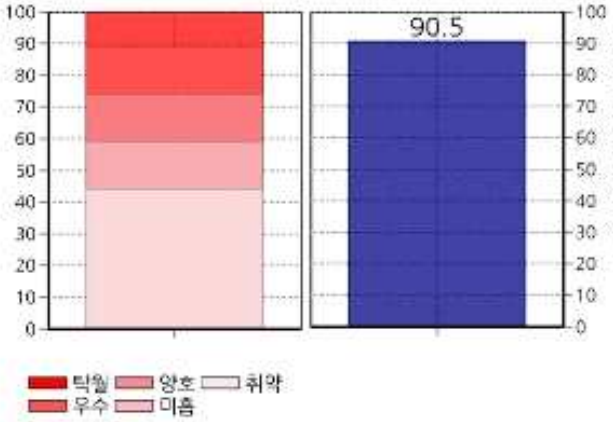
모든 사업영역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4. 기업의 사회적가치 추구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믿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통하여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조합원과 함께하는 보건·복지·건강마을 만들기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과 조합원의 건강 증진 및 건강한 지역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 한다.

조합원 협동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권을 위한 보건·의료·복지·돌봄 활동
국가복지의 한계를 넘어서는 복지사회 구현
생명사상에 기반한 자립적인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

SVI등급



성과별 점수



가치지향성



※ 가치지향성은 SVI지표를 9개 영역으로 재분류한 지표로 영역별 달성률을 통해 기업의 가치지향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중점관리하고자 하는 영역의 구성지표를 확인하고 세부지표 관리를 통해 사회적가치 측정결과 개선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지표별 평균비교



5. 지속가능발전(SDGs) 기여



본 사회적경제기업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중

Goal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란, UN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를 의미하며, 해당 지표는 아래 17개 목표 중 기업의 소셜미션 및 사업활동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강화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4. 교육의 증진	5. 성평등 보장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9. 사회기반시설구축, R&D확대 등
10. 불평등 해소	11. 포용적 안전한 회복력있는 도시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증진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생태계 조성	15. 육상생태계 보전
16. 평화, 정의 포용	17. 지구촌 협력강화	

지표 1	사회적가치 추구 여부	점수	2 점

등급판정		
등급(점수)	체크	기 준
A (2점)	☑	사회적가치 및 목적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문서(정관이나 규약 등)가 있으며,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음
B (1점)	☐	사회적가치 및 목적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문서(정관이나 규약 등)가 있음
C (0점)	☐	사회적가치 및 목적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문서(정관이나 규약 등)가 없음

검토 내용

사회적 목적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믿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통하여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합원과 함께하는 보건·복지·건강마을 만들기 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조합원의 건강 증진 및 건강한 지역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 한다. 조합원 협동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권을 위한 보건·의료·복지·돌봄 활동 국가복지의 한계를 넘어서는 복지사회 구현 생명사상에 기반한 자립적인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
외부공표	리플렛, 홈페이지
사회적 목적 명시자료	정 관 ☑ 규 약 ☐ 기 타 자 료 ☑ (리플렛, 홈페이지)

근거 자료

정관, 리플렛, 홈페이지

조사자 총괄의견

사회적가치 및 목적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문서(정관)이 있으며,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리플렛, 홈페이지 등)하고 있음.

지표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여부	점수	5 점

등급판정		
등급(점수)	체크	기 준
S (5점)	☑	5가지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구축 요소 중 5개 모두 구축
A (4점)	☐	5가지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구축 요소 중 4개 구축
B (3점)	☐	5가지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구축 요소 중 3개 구축
C (2점)	☐	5가지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구축 요소 중 2개 구축
D (1점)	☐	5가지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요소 중 1개 구축
- (0점)	☐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구축(판단)요소의 구축이 확인되지 않음

검토 내용

판단요소	구축여부	내용 (요약)	점수
측정 기준	☑ 유 ☐ 무	*지표별 목표 및 등급(S, A, B, C, D) - 지역사업(의료사업, 노인요양사업) - 일자리창출(취약계층 고용 및 유지) - 기타사업(교육훈련비, 협동조합간협동, 홍보 및 기여) * 내부운영의 사회가치(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 수준 등) * 외부운영의 사회가치(이용자)	1
담당 인력	☑ 유 ☐ 무	부서: 사회적성과관리부서 / 성명: 신승훈, 신현경, 조주희	1
성과 보고서	☑ 유 ☐ 무	*측정결과 - 지역사업 : (의료사업 S, 노인요양사업 B) - 일자리창출 : (취약계층 고용 및 유지 S) - 기타사업 : (교육훈련비 D, 협동조합간협동 S, 홍보 및 기여 S) *사회적성과 관리 보고서 활용 - 감사보고자료, 이사회 자료 철부 및 평가 관리 - 총회 자료집 철부 및 평가 관리 - 홈페이지 공개	1
평가 위원회	☑ 유 ☐ 무	- 사회적성과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명단(14명) 이광희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장 박준영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신승훈 강원의료복지사협 전무이사 서연당 도서출판 이음 기획실장 이창호 (주)하늘원 대표 최효심 패밀리재가장기요양기관 대표 천혜란 위드커뮨협동조합 이사장 김선기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염은경 강원의료복지사협 재택의료팀 과장 정연우 건강보험공단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이윤승 ㈜프로젝트집 대표 김태성 ㈜농업회사법인 태성 대표 장동성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이사 김달현 원주신활력사업단 단장 - 개최 횟수 : 연 1회	1
평가결과 사내공유	☑ 유 ☐ 무	- 조합 홈페이지 공지 - 대의원 총회 자료집 - 임직원 단톡방 공지	1
측정 점수 결과			5

근거 자료

위촉장, 업무분장표, 조직도, 홈페이지 자료실 공유 캡처 화면, 사회적성과관리 보고서

조사자 총괄의견

- 5가지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요소 중 5가지 모두 구축.

지표 3	사업 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점수	14 점

등급판정																					
구 분	배점	평가점수																			
		S				A				B				C				D		-	
내부운영 사회가치	5 점	5	☐			4	☑			3	☐			2	☐			1	☐	0	☐
외부운영 사회가치	10 점	10	9			8	7			6	5			4	3			2	1	0	
		☑	☐			☐	☐			☐	☐			☐	☐			☐	☐	☐	

검토 내용

판단기준	내용					점수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	고용비율	55	임금금액	27,814	1
	근로자 보건 및 안전	임직원 진료비 지원 : 3,174천원, 540건 예방접종(독감) 지원 : 25명(직원가 2만원/정상가 4만원) 전문인 배상공제(배상책임보험) 가입				1
	고용의 질	취업규칙 內 취약계층 차별금지 조항 있음. *(1차 개정) 2019년 7월 12일 *(2차 개정) 2020년 6월 19일 *(3차 개정) 2021년 4월 1일 *(4차 개정) 2023년 3월 16일 *임신, 육아에 따른 출산휴가(1명) 및 육아휴직(2명) 시행				2
내부운영 측정 점수						4

	측면	분야	대상	활동	점수
외부운영의 사회가치	제품/서비스 판매의 사회적 가치	지역 내 의료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거동불편자,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진료가 어려운 고립된 환자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에게 지속적·포괄적으로 일반건강관리나 주장애관리를 받는 제도 **총 47명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퇴원 가능한 장기 입원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총 21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만성복합질환과 거동불편 등의 이유로 의료접근성이 제한된 상태의 재가장기요양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학제 통합서비스 **총 69명(남성 24명, 여성 45명), 방문진료 602건, 방문간호 1,384건 일차의료방문진료시범사업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내원이 어렵다고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 **총 319건, 272명(남성 95명, 여성 177명)	10
	제품/서비스 생산의 사회적 가치	후원물품 확보 및 이용자의 불균형 해소와 관련하여	연하곤란장애, 섭식 불가 등 어르신 및 환자에게	- 메디푸드(균형영양식) 후원 및 지원	
	이용자의 사회적가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조합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총 2회, 26명 *우리 마을의 돌봄을 생각하다, 총 4회, 71명 *웰에이징 & 웰다잉, 총 2회, 27명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 건강한 삶 도모 농촌 및 시내경계지역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사업 *사회적돌봄서비스 및 방문간호·방문재활	

				등 맞춤형 서비스 건강반장 인원 28명 건강반장 집담회 및 교육 월 1회 (총12회) 농촌 및 시내경계지역 대상자 사례회의 14회 방문간호서비스 70회 방문재활서비스 10명, 총 100회 환경수정 및 운동보조기 지원 7회 기초생계지원 16회 의약품지원 대상자(건수) 21명(24회)	
	기타 사회적가치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위한 홍보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예비의료인 및 원주지역주민들에게	예비의료인 실습 진행(재택의료(진로, 간호실무) - 4.1 ~ 26 원주연세대 의예과 학생(16명) - 7.19 ~ 8.23 강릉원주대 간호학과 학생(18명)	
외부운영 측정 점수					10
측정 점수 결과					14

근거 자료

고용보험기입자명부, 홍보지, 블로그 캡처, 실습(견학) 일지, 기사,캡처, 급여대장, 유급근로자명부, 의료배상공제가입증서, 임직원진료비 지원내역, 육아휴직확인서 및 출산전후휴가확인서, 사업 추진 결과보고서, 취업규칙 등

조사자 총괄의견

- (내부)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혼합형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1) 동종업종 중위값 취약계층 고용비율(하회) 및 임금수준(상회)하며, 2) 근로자 보건 및 안전(임직원 진료비, 예방접종, 배상보험) 등 근로자 보건 및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취업규칙 내 차별금지 조항, 임신 출산휴가를 실제로 운영하는 등 근로자 친화적 고용정책 및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외부) 제품 서비스의 판매(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 대상 의료지원), 제품 서비스 생산(연하곤란장애, 섭식장애 어르신 등 영양식 후원), 이용자(조합원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 지원 제공), 기타(예비의료인, 지역주민 대상 실습지원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내용을 등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확인하였으며,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을 대 사회적가치 실현 수준이 매우 우수 함.

지표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점수	5 점

등급판정		
등급(점수)	체크	기 준
S (5점)	☑	5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A (4점)	☐	4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B (3점)	☐	3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C (2점)	☐	2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D (1점)	☐	1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 (0점)	☐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이 확인되지 않음

검토 내용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강원사회적경제연대	강원사회적경제연대	10
사회적기업 인스	(연중)화장지 티슈 등 생산용품 지속 구입	7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연중)원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활동	2
원주밝음신협	(연중)재택의료서비스 제공 맞춤형 건강상담 제공 건강증진, 예방 활동 프로그램 제공	12
원주생협	우리 가족 건강이 자라는 정겨운 텃밭 공동 운영	7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연중)원주지역 사회적기업협의회 회원사 활동	10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연중)전국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회원사 활동	4
측정 점수 결과		5

근거 자료

회의록, 세금계산서, 회원증명서, 확인증서, 회비납부 영수증, 기사, 책자 캡처 등

조사자 종괄의견

7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지표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점수	5 점

등급판정		
등급(점수)	체크	기 준
S (5점)	☑	7개 이상의 공공 민간기관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A (4점)	☐	5~6개의 공공 민간기관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B (3점)	☐	3~4개의 공공 민간기관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C (2점)	☐	2개의 공공 민간기관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D (1점)	☐	1개의 공공 민간기관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 (0점)	☐	공공·민간기관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이 확인되지 않음

검토 내용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원주보훈공단	(연중) 원주보훈요양원 어르신의 건강관리 주치의 활동	2
원주시(경로장애인과)	(연중)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활성화	12
원주시의사회(빈의자)	(연중)원주시의사회 빈의자 의사회는 "빈곤층 의료지원 자원봉사 의사회"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위한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밝음의원은 상담창구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24년 건강지원 대상 인원수 : 49명, 지출금액 : 17,019,450원 지원	12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중)재택의료서비스 제공 맞춤형 건강상담 제공 건강증진, 예방 활동 프로그램 제공	2
천사노인요양원	(연중) 천사노인요양원 어르신의 건강관리 주치의 활동	2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연중)전국 사회적의료기관 회원사 활동	12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	(연중) 춘천 방문진료 프로젝트, 방문 의료지원사업 상호협력	8
측정 점수 결과		5

근거 자료

사업결과보고서, 협약서, 보도자료, 공문, 회원명단 등

조사자 총괄의견

- 7개의 지역사회 공공, 민간기관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 한국예디칼푸드는 서울 기업으로 지역(강원도내 혹은 인접)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서 제외

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점수	10 점

등급판정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S		A		B		C		D		-
조직내부운영	3 점	-		3	☑	2	☐	1	☐	-		0 ☐
조직외부활동	5 점	5	☑	4	☐	3	☐	2	☐	1	☐	0 ☐
기타(비금전적)	2 점	-		2	☑	1	☐	-		-		0 ☐

검토 내용

판단기준	내용(요약)			점수
	구분	주요 실적 (원)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복리후생비	지출 금액	18,374,000	1
		지출 내용	임직원 상여금 및 진료비 지원	
	구성원성과급	금액	5,400,000	1
		지급 내용	임직원 상반기 성과급	
	시설비 투자	투자 금액	2,421,000	1
		투자 내용	냉장고, 접이식 테이블, tv 등 구입 내용	
내부운영 측정점수				3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지역사회재투자	제공기관	제공내용	금액(원)
		(재)대한성공회 유지재단	기부	500,000
		관악정다운의료사협	기부	100,000
		수원의료사협	기부	200,000
		우리평화교회	기부	100,000
		사회적협동조합모두	기부	500,000
		시온복지재단	기부	200,000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지정기부	1,300,000
		무위당사람들	기부	300,000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기부	100,000
		위드의료사회적협동조합	기부	100,000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기부	100,000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기부	100,000
		함께걸음의료사협	기부	100,000
		마포다정한재단	기부	500,000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지역사회재투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기부	150,000
	사회서비스 제공금액	제공기관	제공내용	금액(원)
		조목회 등 취약계층	진료비, 돌봄, 의약품 지원	774,930
		밥상공동체	맞춤형 영양식 후원	818,400
		원주밝음신협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각종 진료비 후원	11,888,670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1:1 맞춤형 의료상담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36,300,000
	합계	54,132,000 원	동일업종 평균값	51,139,573 원
동일업종 평균값 대비 비율				105.9 %
외부활동 측정 점수				5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활용	두레생협 생명나눔한마당 의료부스 지원, 원주투데이 강원의료사협 칼럼 게재(무료)		
기타 측정 점수				2
측정 점수 결과				10

근거 자료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기안문, 기부금 영수증,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기사 캡처 등

조사자 총괄의견

- 복리후생비(직원 명절 상여, 진료비 지원), 근로자 성과급, 시설투자비(냉장고, 접이식 테이블, tv 등 구매) 조직 내부 운영을 위한 수익 활용을 노력하고 있음.
- 지역사회 재투자(후원 등) 및 사회서비스 합산 금액이 54,132,000원으로 동종업종 내 평균값의 105.9%에 해당하며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 활용을 노력하고 있음.
- 기타(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을 위해 정기적으로 원주투데이에 칼럼을 게재하고, 비정기적으로 의료부스 지원을 하는 등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사회적 환원 노력도 수준이 양호한 수준임.

지표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점수	5 점

등급판정			
구분	등급(점수)	체크	기 준
의사결정기구 참가비율	A (3점)	☑	이해관계자(근로자 측 인사, 사외이사, 조합원 등) 의 주요 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60% 이상
	B (2점)	☐	이해관계자(근로자 측 인사, 사외이사, 조합원 등) 의 주요 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40% 이상 60% 미만
	C (1점)	☐	이해관계자(근로자 측 인사, 사외이사, 조합원 등) 의 주요 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 비율이 0% 이상 40% 미만
회의결과 공유	A (2점)	☑	주요 의사결정기구 운영 횟수 대비 임직원 대상 결과 공유 활동 횟수 비율이 50% 이상
	B (1점)	☐	주요 의사결정기구 운영 횟수 대비 임직원 대상 결과 공유 활동 횟수 비율이 50% 미만
- (0점)		☐	주요 의사결정기구 운영 실적이 확인되지 않음

검토 내용

의사결정기구	회의일자	회의결과 임직원공유				회의 참여인원	사외이사	근로자인사	조합원
이사회	2024.01.11	☑	유	☐	무	11	2	1	7
이사회	2024.02.14	☑	유	☐	무	16	6	1	7
이사회	2024.02.29	☑	유	☐	무	15	6	2	6
이사회	2024.04.18	☑	유	☐	무	12	6	2	3
이사회	2024.06.17	☑	유	☐	무	8	4	2	1
이사회	2024.09.04	☑	유	☐	무	8	4	2	1
이사회	2024.11.12	☑	유	☐	무	11	6	2	1
총회	2024.03.21	☑	유	☐	무	60	2	0	58
합계		8				141	36	12	84
의사결정기구 참가 비율		93.6 %				측정 점수			3
회의결과 공유 비율		100 %				측정 점수			2
측정 점수 결과									5

근거 자료

홈페이지 캡처,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임원명부, 대의원명단, 조합원 명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등

조사자 총괄의견

'24년도 이사회,7회, 총회 1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 실제 참여비율은 93.6%, 임직원 대상 결과 공유 활동 (홈페이지 게시) 횟수 비율은 100%로 확인됨.

지표 8	근로자 임금수준	점수	8 점

등급판정		
등급(점수)	체크	기 준
S (8.0점)	☑	근로자 평균 시급이 동종업종 근로자 시급 분포의 80% 이상
A (6.4점)	☐	근로자 평균 시급이 동종업종 근로자 시급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B (4.8점)	☐	근로자 평균 시급이 동종업종 근로자 시급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C (3.2점)	☐	근로자 평균 시급이 동종업종 근로자 시급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D (1.6점)	☐	근로자 평균 시급이 동종업종 근로자 시급 분포의 20% 미만

검토 내용

전체 유급근로자 총 급여	전체 유급근로자 총 근무시간
121,051,770 원	4,713 시간
근로자 시간당 임금평균	
25,685 원/시간	

근로자 시급수준 동종업종 분포

업종 분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1,587 미만	11,587 이상 12,579 미만	12,579 이상 13,549 미만	13,549 이상 15,702 미만	15,702 이상
	☐	☐	☐	☐	☑
측정 점수 결과					8

근거 자료

급여대장, 유급근로자명부

조사자 총괄의견

근로자 평균 시급이 25,685원으로 동종업종 근로자 평균시급 분포의 80%이상에 해당함.

지표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점수	3 점

등급판정			
구분	등급(점수)	체크	기 준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A (4점)	☐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이 15시간 이상
	B (3점)	☐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이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C (2점)	☑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이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D (1점)	☐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이 5시간 미만
	- (0점)	☐	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시간이 확인되지 않음
금전적 교육비 지원내역	A (1점)	☑	금전적 교육비 지원내역 있음
	- (0점)	☐	금전적 교육비 지원내역 없음

검토 내용

전체근로자 수(A) 42

교육과정 명	수혜자 수	교육시간	1인당 교육시간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기본과정	1	3	0.1
건강주치의 방문간호사 교육	2	2	0.1
제22차 근막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TPI) 연수교육	1	8	0.2
2024년 재택의료 FOCUS ON 교육	1	24	0.6
2024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춘계연수강좌	2	6.5	0.3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1	8	0.2
2024년 간호사 보수 교육	2	8	0.4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	3	8	0.6
2024년 가정간호사업소 책임자 및 실무자를 위한 워크샵	2	3	0.1
2024년 간호사 보수 교육	2	8	0.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6	2	0.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0	1	0.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6	1	0.4
2024 긴급복지 신고의무교육	20	1	0.5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4	1	0.3
일반건강검진교육	2	4	0.2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위탁의료 기관 교육	3	0.5	0

어르신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	1	2	0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	1	9	0.2
2024년 제17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연수강좌(30강)	1	15	0.4
합계(연평균 1인당 교육시간)			5.5
교육 훈련비(원)			1,201,000
측정 점수 결과			3

근거 자료

수료증, 강좌 캡처 화면 등

조사자 총괄의견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이 5.5시간이며, 금전적 교육비 지원내역이 있음.

지표 10	고용성과	점수	6.4 점

등급판정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S		A		B		C		D	
유급근로자수	6 점	6	☐	4.8	☐	3.6	☐	2.4	☑	1.2	☐
고용성장률	4 점	-		4	☑	2.5	☐	1	☐	-	

검토 내용

2024년도 총 유급근로자 수	2023년도 총 유급근로자 수
42 명	38 명
고용성장률	
10.53 %	
고용성장률 측정 점수	
4	

유급근로자 고용 동종업종 분포

업종 분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7 미만	37 이상 60 미만	60 이상 94 미만	94 이상 237 미만	237 이상
	☐	☑	☐	☐	☐
유급근로자 수 측정 점수					2.4

측정 점수 결과	6.4

근거 자료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조사자 총괄의견

'24년도 총 유급근로자 수가 42명으로 이는 동종업종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에 해당하고, 전년대비 10.5% 증가함. 종합적으로 고용성과는 양호한 수준임.

지표 11	매출성과	점수	7.6 점

등급판정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S		A		B		C		D	
매출액	6 점	6	☐	4.8	☐	3.6	☑	2.4	☐	1.2	☐
매출액 성장률	4 점	-		4	☑	3	☐	2	☐	1	☐

검토 내용

2024년도 매출액	2023 년도 매출액
1,865,351,980 원	1,543,887,360 원
매출액 성장률	
20.82 %	

매출액 등종업종 분포 (단위 : 원)

업종 분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285,586,609 미만	1,285,586,609 이상 1,787,845,135 미만	1,787,845,135 이상 2,947,194,790 미만	2,947,194,790 이상 6,114,624,475 미만	6,114,624,475 이상
	☐	☐	☑	☐	☐
매출액 측정 점수					3.6

매출액 성장률 등종업종 분포 (단위 : %)

업종 분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2 미만	-2 이상 7 미만	7 이상 13 미만	13 이상
	☐	☐	☐	☑
매출액 성장률 측정 점수				4

측정 점수 결과	7.6

근거 자료

재무제표

조사자 총괄의견

'24년도 매출액은 1,865,351,980원으로 등종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미만에 해당하고 이는 전년대비 20.8% 증가한 수치임. 종합적으로 매출성과는 우수한 수준임.

지표 12	영업성과	점수	4.5 점

등급판정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S	A		B		C		D
영업이익	3 점	-	3	☑	2	☐	1	☐	-
영업이익 성장률	2 점	-	2	☐	1.5	☑	1	☐	-

검토 내용

2024년도 영업이익	2023년도 영업이익
61,040,494원	108,206,065 원
영업이익 성장률	
-43.59 %	

영업이익 동종업종 분포 (단위 : 원)

업종 분류	20% 미만	20% 이상 60% 미만	60% 이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83,427,223 미만	-83,427,223 이상 37,887,846 미만	37,887,846 이상
	☐	☐	☑
영업이익 측정 점수			3

영업이익 성장률 동종업종 분포 (단위 : %)

업종 분류	20% 미만	20% 이상 60% 미만	60% 이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12 미만	-112 이상 33 미만	33 이상
	☐	☑	☐
영업이익 성장률 측정 점수			1.5

측정 점수 결과	4.5

근거 자료

재무제표

조사자 총괄의견

'24년도 영업이익은 61,040,494원으로 동종업종 영업이익 분포의 60% 이상에 해당하고 이는 전년대비 43.6% 감소한 수치임. 종합적으로 영업성과는 우수한 수준임.

지표 13	노동생산성	점수	5 점

등급판정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S	A		B		C		D	
노동생산성	3 점	-	3	☑	2	☐	1	☐	-	
노동생산성 성장률	2 점	-	2	☑	1.5	☐	1	☐	-	

검토 내용

(단위 : 원, 시간)

2024년도 매출액	2024년도 유급근로자 근무시간
1,865,351,980	4,713
2024년도 노동생산성	
395,789	
2023년도 매출액	2023년도 유급근로자 근무시간
1,543,887,360	4,401
2023년도 노동생산성	
350,804	
노동생산성 성장률	12.8 %

등종업종 노동생산성 분포

(단위 : 원)

업종 분류	20% 미만	20% 이상 60% 미만	60% 이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86,575 미만	186,575 이상 322,835 미만	322,835 이상
	☐	☐	☑
노동생산성 측정 점수			3

등종업종 노동생산성 성장률 분포

(단위 : %)

업종 분류	20% 미만	20% 이상 60% 미만	60% 이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 미만	-6 이상 10 미만	10 이상
	☐	☐	☑
노동생산성 성장률 측정 점수			2

측정 점수 결과	5

근거 자료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근로계약서, 유급근로자명부, 재무제표

조사자 총괄의견

'24년도 노동생산성(시간당 매출액)은 395,789원으로 동종업종 노동생산성 분포의 60% 이상에 해당하고 이는 전년대비 12.8% 증가한 수치임. 종합적으로 노동생산성은 우수한 수준임.

지표 14	혁신노력도	점수	10 점

등급판정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S		A		B		C		D		-
과정의 혁신	5 점	5	☑	4	☐	3	☐	2	☐	1	☐	0 ☐
혁신의 결과	5 점	5	☑	4	☐	3	☐	2	☐	1	☐	0 ☐

검토 내용

과정의 혁신 (구분)		내용
인력투입	전문인력도입	- 가정간호센터(원주, 횡성지역) 가정전문간호사 채용(23. 12. 1) 김은화 가정간호사, 도경숙 가정간호사 - 밝음의원 의사(가정의학과) 전문의 공영훈 원장 채용(24. 1. 1)
예산투입	R&D 투자	- 진단 검사용 의료기기 등 구매 (엑스레이 장비, 치료실 의료 장비 구입) - 신규 건물 이전을 통한 진료 환경개선
혁신활동	경영시스템 개선	- EMR(씨차트) 변경(업그레이드) 진행 -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한 시인성 및 편의성 개선, 온라인 가입 기능 보강
	기업 내외부 소통 노력	- 직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반영 - 강원의료사협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노인공동생활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이사회, 대의원 총회 운영
	기술개발	- 조합원 대상 이용만족도 조사 실시 -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모델 도입 및 실시 (지활근로참여주민 대상)
기타		
과정의 혁신 측정 점수		5

혁신의 결과 (구분)		내용
혁신결과	재무성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기관 지정 및 운영 - 원주시청(경로복지과) ○시내 및 경계지역 취약계층 건강 지원사업 - NH투자증권 임직원 기탁금 지원을 통한 운영 지속 ○춘천 댐수몰지역(소양강댐) 방문진료 프로젝트 실시 -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 지원
	고객만족	○ 초진 및 재진 환자 지속 증가 및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자 증가
	기술적 성과	○활동을 통한 우수사례 인정 - 제 11회 협동조합의 날 대통령상 수상 (사회서비스활성화 유공, 23년 7월 1일) - 강원도지사 표창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활성화 공로, 23년 12월 31일) - 24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감사장(24.12.10) - 사회적경제컴퍼니 상 수상(24년 8월 30일) - 원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4 민관학 협력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수상(24.11.22)
	기타	
혁신의 결과 측정 점수		5

측정 점수 결과	10

근거 자료

이력서, 결과보고서, 표상, 감사장, 이체확인증, 사용신고서, 홈페이지 캡처화면, 상담보고서, 만족도 조사, 총회 자료, 사진, 보도자료, 업무협약서 등

조사자 총괄의견

- 과정의 혁신에 있어 전문인력 도입(전문의, 간호사 신규채용), R&D투자(의료기기 구매, 신규건물 이전), 경영시스템 개선(씨차트 업그레이드, 홈페이지 리뉴얼), 기업내외부소통노력(직원 만족도, 노사협의회 구성, 노인공동생활가정위원회 구성 등) 혁신 노력이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혁신의 결과에 있어 재무성과(각 시범사업, 지원사업 유치하여 전년도보다 매출 20% 상승), 고객만족(초진, 재진 환자 지속 증가, 사회서비스 대상자 증가), 기술적 성과(다양한 유공, 표창, 감사장 등 수상) 등 혁신의 결과가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됨. 종합적으로 혁신노력도는 우수한 수준이라 사료됨.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 관(신)

제정 : 창립 총회 2014년 7월 16일(승인2014.10.30.)
1차 개정 : 제1차 대의원총회 2015년 2월 27일(승인2015.03.25.)
2차 개정 : 제2차 대의원총회 2016년 3월 10일(승인2016.04.18.)
3차 개정 : 제4차 대의원총회 2018년 3월 15일(승인2018.06.21.)
4차 개정 : 제6차 대의원총회 2020년 5월 7일(승인2020.06.18.)
5차 개정 : 임시 대의원총회 2021년 1월 8일(승인2021.04.02.)
6차 개정 : 제8차 대의원총회 2022년 3월 24일(승인2022.04.15.)
7차 개정 : 제9차 대의원총회 2023년 3월 28일(승인2023.04.11.)
8차 개정 : 제10차 대의원총회 2024년 3월 21일(승인2024.04.05.)
9차 개정 : 제11차 대의원총회 2025년 3월 13일(승인2025.04.17.)

전문		
제1장	총	칙(제1조~제9조)
제2장	조 합	원(제10조~제17조)
제3장	출	자(제18조~제23조)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4조~제43조)
제5장	임	원(제44조~제56조)
제6장	사	업(제57조~제59조)
제7장	회	계(제60조~제69조)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0조~제73조)
부칙		

전 문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원주지역 협동조합운동의 역사를 계승하고 생명사상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활동해 온 원주한살림생협, 밝음신협, 원주생협과 지역주민들이 협동으로 설립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이 건강과 의료의 주인이 되는 사회를 목표로 하여 세워졌다.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개인이 사유하는 의료도,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도 아닌 협동을 통해 서로 살리는 상생의 의료건강사회를 꿈꾸며 생명의 존엄성이 존중받으면서도 차별과 소외가 없는 평등의료·건강사회의 구현을 통해 협동의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건강의 문제가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건강의 실현과 맞물려 있음을 직시한다. 또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 맺음과 인간과 인간이 서로 협력하는 사회만이 건강한 사회임을 확신한다.

이에 따라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협동적 자치를 통해 민주적인 의료활동을 전개하고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협동조합과의 협동과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운동을 촉진하며 협동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7차 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7차 개정)(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85(중앙동)번지 4층(9차 개정)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2(의료기관의 소재지) ①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밝음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85(중앙동)번지 4층에 둔다.(9차 개정)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강원도, 경기도 여주시, 충청북도 제천시, 충주시 일원으로 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또는 강원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 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3.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4.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8차 개정)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7차 개정)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6차 개정)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6차 개정)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2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4차 개정)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6.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② 한 조합원의 최고출자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총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9차 개정)

⑥ 단체출자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2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이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4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5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대의원의 자격은 조합원중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인 조합원으로 한다.(8차 개정)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8차 개정)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6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9차 개정)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해당 기수 임원의 임기종료일까지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⑥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가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0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9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1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9차 개정)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②제1항제1호(정관변경), 제7호(협동조합합병,분할,해산, 휴업) 제8호(조합원제명), 제9호의 사항(출자금 환급)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가, 2차 개정)

제33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1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4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9차 개정)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9차 개정)

제35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7차 개정)

제37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8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9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우편이나 전자메일을 통해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5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44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3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 임원을 둘 수 있다.

제45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9차 개정)

④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5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 의무가 있다.(9차 개정)
⑤ 제1항~제4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9차 개정)

제4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8차 개정)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차 개정)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차 개정)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8차 개정)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8차 개정)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3차 개정)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7차 개정)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9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51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9차 개정)
④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9차 개정)

제50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7차 개정)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임직원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55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6조(고문) ① 총회의 결의로 학식과 경륜있는 사람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은 조합의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의 임기는 추대당시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④ 고문의 활동에 대해 이사회에서 정하는 대로 여비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사 업

제57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지역사업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9차 개정)

1. 지역주민의 건강과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가. 의료기관,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나. 생활습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다. 취약계층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
 라. 질병예방 및 보건예방 교육사업
 마. 지역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사업
 바. 지역통화 운동 등 협동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사.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시설
 아. 자원봉사활동(문구 추가, 4차 개정)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가. (신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9차 개정)
 나. (신설) 1.(가~아)의 사업 활성화 및 통합을 위한 지원사업(9차 개정)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 조합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
3.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
4.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③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지역사업형으로 수입지출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정한다.(9차 개정)

④ 이 경우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상호 구분 계리되어야 한다.

제58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3.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6.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②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6차 개정)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7차 개정)

5.「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7차 개정)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7차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총 공급량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 공급량을 산정한다.(9차 개정)

제59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 계

제60조(회계연도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1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2조(기부금 및 회비공개) ① 조합은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부금을 납입한 개인이나 단체는 이를 이유로 조합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조합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④ 기부금은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수혜자는 불특정다수로 한다.

⑤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제63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단, 서류의 열람과 사본의 청구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3년간으로 하며, 공개할 회계장부의 종류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계정별원장으로 한다. 서류의 열람■청구 신청은 별도의 서식에 따른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6. 수지예산서
7. 사업결과보고서

제64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6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6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67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8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67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9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4. 국고

부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인가일) 2014년 10월 30일(창립총회 2014년7월16일)
제2조(1차개정) 2015년 2월 27일(제1차 정기대의원총회)
(인가일) 2015년 3월 25일(보건복지부)
제3조(2차개정) 2016년 3월 10일(제2차 정기대의원총회)
(인가일) 2016년 4월 18일(보건복지부 제35-3호)

제4조(3차개정) 2018년 3월 15일(제4차 정기대의원총회)
(인가일) 2018년 6월 21일(보건복지부 제35-4호)
제5조(4차개정) 2020년 5월 7일(제6차 정기대의원총회)
(인가일) 2020년 6월 18일(보건복지부 제35-5호)
제6조(5차개정) 2021년 1월 8일(임시대의원 총회)
(인가일) 2021년 4월 2일(보건복지부 제35-6호)
제7조(6차개정) 2022년 3월 24일(제8차 정기대의원총회)
(인가일) 2022년 4월 15일(보건복지부 제35-8호)
제8조(7차개정) 2023년 3월 28일(제9차 정기대의원총회)
(인가일) 2023년 4월 11일(보건복지부 제35-9호)
제9조(8차개정) 2024년 3월 21일(제10차 정기대의원총회)
(인가일) 2024년 4월 5일(보건복지부 제35-11호)
제10조(9차개정) 2025년 3월 13일(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
(인가일) 2025년 4월 17일(보건복지부 제35-13호)